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장 현 식(책임연구원)

1999. 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90104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비교분석 및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장 현 식(책임연구원)

1999. 2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I. OECD/DAC 회원국의 원조체제

1. 호주	3
2. 오스트리아.....	10
3. 벨기에.....	13
4. 캐나다.....	17
5. 덴마크.....	25
6. 핀란드.....	28
7. 프랑스.....	31
8. 독일.....	35
9. 아일랜드.....	41
10. 이태리.....	44
11. 일본.....	51
12. 네델란드.....	59
13. 뉴질랜드.....	63
14. 노르웨이.....	67
15. 포르투갈.....	73
16. 스페인.....	77
17. 스웨덴.....	80
18. 스위스.....	85
19. 영국.....	90
20. 미국.....	95

II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1. 원조정책.....	107
2. DAC 지침 준수여부.....	110
3. 원조조정, 개발전략 및 국별 원조계획.....	112
4. 원조평가.....	115
5. 원조 조직, 관리, 예산, 제도 및 직원 재훈련.....	117
6. 국민의 지지, 홍보, 대국민교육.....	124
7. 원조증대의 필요성.....	125

부록: DAC의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제원칙

1. 개도국과의 원조조정.....	129
2. 프로젝트 심사에 관한 원칙.....	133
3. 기술협력에의 새로운 정향에 관한 원칙.....	148
4. 프로그램 원조의 원칙.....	162
5. 여성개발에의 지침.....	179
6. 개발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참고사항.....	189
7. 공적원조를 위한 효율적인 조달 실시 방안.....	198
8. 조건부 원조시의 새로운 조치.....	205
9. 개발원조의 평가를 위한 원칙.....	209

부록: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원조심사 절차	219
2. 심사기준.....	221
3. 기본자료.....	223

I.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체제

I.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체제

1. 호주(Australia)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본육구충족(BHN)과 안정되고 균형적인 세계질서 유지에 두고 있음.(이는 '96 년에 Liberal party 와 National Party 와의 연합정부가 발표한 외교정책백서(Foreign Policy Statement)에 발표된 것임.)
- 2) 양자 및 다자 집행기구(인원, 해외지사)
 - 무상 및 유상협력 담당기구: AusAID (외무.통상부내에 위치함)
 - 인원: 본부: 510, 해외 60
 - 해외지사: 23 개
-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1.09 bil. \$ (GNP 대비 0.29%)(양자: 다자비율= 78:22) ('96)
 - 중점수원국: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ODA 의 49%): Papua New Guinea, Indonesia, China, Phillippine, Thailand, Vietnam, Malaysia, Bangladesh, Fiji, Cambodia 순임.
 - 중점지원분야:
 - 사회발전분야(보건, 인구, 교육)
 - 인도적분야(피난민구호분야)
 - 범이슈(환경, 여성개발, AIDS)
 - 원조특징:
 - 원조정책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음. 특히 현재의 연합정부의 외교정책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조정책도 이와 같은 틀에 움직이고 있음.
 - 중점국가에는 “국별원조계획”에 의해 원조를 실시
 - logical framework 의 도입을 통해 원조효과의 제고를 실시함.
 - '95 년에 도입된 새로운 정보시스템인 “Activity Management System (AMS)”를 통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또한 원조정책을 제안하고 실행계획을 수립시에도 이를 활용하여 원조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고 있음.

나. 원조정책: 전략적 측면

- 호주의 원조정책 기조는 호주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유지에 중점을 부여하고 있음.
- DAC에서 강조하는 원조의 중요 이슈를 고려하고, DAC의 효율적인 원조지침을 준수하고 있음.
- 예전에는 원조정책 수립시 자국의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많이 고려했지만, 지금은 개도국의 사회인프라의 개발이 그들의 지속적인 경제, 사회발전의 기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분야에(보건, 기초교육, 지방발전)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자유당 및 국민당 연합에 의해 연립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총선전에 발표한 외교정강에 명시된 원조정책에 따라 원조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 호주 국민들과 의회는 원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의회는 현재 원조기관으로부터 원조백서를 받고 있으며,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승인권을 행사함. 의회는 특히 원조의 실시로 인한 자국에의 경제적 및 전략적인 이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또한 원조체계의 효율성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음. 호주 국민들은 자국의 원조정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원조의 지리적배분 및 분야별 정책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NGO들은 빈곤추방에 호주의 원조정책이 중점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중점국가에는 중장기 국별원조계획을 수립하여 원조를 실시함. 호주 정부는 자국내의 NGO 및 관련부처와의 상의후 관련 수원국이 함께 참여 이를 작성하는 절차를 지님. 각 국별 원조계획은 매년 관련 수원국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국별원조계획과 년별 수원국 발전계획은 호주나 수원국의 고위급 정책대화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반면에 양자간 원조의 상당액이 AusAID의 지역프로그램, 교육 및, NGO, 그리고 수입 정책계획에 따라 제공됨.
- AusAID는 현재 호주의 외교통상부내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다자간 원조 및 지역협력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호주의 원조기관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당 직원의 수는 타 기관에 비해 적은 규모임. 또한 해외에 파견된 원조 담당직원도 소규모임. 원조 전문가들은 호주 원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규모로 인해 과연 효율적인 원조를 실시할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원조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은 원조사이클을 반드시 참고해야함. 원조 사이클 지침은 필요한 행동강령, 결정 및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대안을 추적하게끔 작성되었음. 현재 AusAID 는 “Activity Preparation Toolbox”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원조 프로그램 지침에 기초하여 새로운 컴퓨터 적용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수립되었음. 이 방식의 활용을 통해 사업준비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듦.
- 호주는 정부내에 원조정책의 조정을 위한 공식기구 없음.

다. 기본 원조자료

- 현재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의 중요성 때문에 호주는 양자간 원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하고 있음.
- 호주는 다자간 원조를 국제적인 도의적인 책임과 또한 양자간 원조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함. 다자간 원조의 중점 국가는 아프리카임.
- '94 년 호주의 양자간 원조의 56%가 타이드 원조임. 호주는 공공연히 자국산 제품의 사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의 경제발전, 안정 및 시장확대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지님.
- 호주는 “Helsinki Package”의 엄격한 적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AusAID 는 수출 신용기금의 일종인 “DIFF”(Development Import Finance Facility)의 규정을 바꾸었음. 즉 자금시장에서 제공된 재원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DIFF 의 금지 및 프로젝트의 확인 과정에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뿐만 아니라, DIFF 에 높은 이자율을 부과함. 현재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민간기업이 신청한 전체 사업중에 단지 10%만 이 자금이 활용되고 있음. 신정부는 DIFF 를 '96 년 중순에 종료시킬 예정임.
- AusAID 의 분야별 정책 검토부는 검토 및 평가 그리고 이를 통한 경험을 통해 양자간 원조의 질적인 제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제공 되는 검토서는 원조담당 장관, 의회 그리고 호주 국민들에게 원조의 성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함. '93 년에 “Cluster”평가절차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사후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함.
- 호주의 많은 NGO 는 개발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사업 에도 참여하고 있음. '95-'96 년에 78 million(A\$)(양자간 원조의 5%)이 NGO 를 통해 사용되었으며, 현재 30 개 이상의 NGO 보조프로그램이 있음. AusAID 의 NGO 담당과는 호주 NGO 의 연결고리를 담당하고

있음.

- '95 년에 AusAID 는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NGO Programme”을 발간하였으며, AusAID 가 보조하는 NGO 프로그램중 4/5 이상이 비용/효과 분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개도국의 지속적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NGO 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의 변화를 권고함.
- 이 권고안에 따르면 비용효과측면에서 NGO 단체가 총사업비용의 25%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NGO 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NGO 측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

라. 향후 방향

- 호주 국민들의 지지를 위한 노력 경주. 특히 NGO 및 민간기업과의 정책대화를 강화
- 국별개발 계획수립시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인 형태의 대수원국 발전계획이 적시 되어야함..
- 직원 증강 필요
- DIFF 를 대치하는 차관이나 혼합융자가 원조의 높은 질과 지속성을 유지하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NGO 에 좀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
- 기초, 기술 및 직업교육 및 훈련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특히 직업훈련은 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유용함.

참고: “New Australian Government: Foreign Policy Statement”

1. 배경

- '96 년에 실시된 호주의 연방선거는 Mr. John Howard 의 지도아래 자유당 및 국민당의 연합이 승리하였음.
- 연정은 호주가 21 세기에 동아시아 지역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호주를 협동적이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이와같은 비전의 실현을 위해 현실을 고려함. 이는 자유에 대한 가치, 법치주의, 실질적인 국제협력의 틀속에서 호주의 국익을 추구하기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실시함.

2. 정책과제

- 아시아를 외교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교류함.
-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 그리고 호주의 경제적이익을 확장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춤
-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ASEAN 회원과의 종합적인 외교적 접근 실시
- 동북아시아국가와는 관계를 심화시키기위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강구하며 양자간 관계를 강화
- 호주의 지역적 및 역사적인 양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유럽/아메리카와 동아시아간의 연결역할을 더욱 강화
-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호주의 자위력 및 지역 안전협력을 유지함.
- 대중국 권력블록을 포기. 대신 중국과의 연대강화
- 무차별무역기구로 APEC 을 보장
- 원조정책에 정부간 인프라 프로젝트보다는 빈곤완화, 보건,교육과 같은 분야에의 공동체향상에 증대된 강조부여

3. 구체적 실천방안

- 수라바야지역에 영사를 설치함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강화
-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 강화
- 호주내의 중국사업공동체를 통하여 중국과의 투자를 증대하는등 호주와 중국과의 교육교환을 더욱 강화
- 농업 및 농산물 가공분야를 포함하여 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기위한 수단으로 일본기업과 합작투자를 강화
- 무역과 빈곤완화를 위한 원조를 통하여 인도와의 관계 발전
- PNG 의 호주프로젝트 원조의 배분에 관련하여 PNG 정부의 정책참여를 확대
- 호주의 태평양제도관련 권한.책임성을 외무성에게 다시 환원
- 호주 원조 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실시
- 비정부자금으로 “민주제도를 위한 연구센터”의 설치를 지지
- 외교백서를 준비

4. 원조 정책분야

- 호주의 대의원조의 목적은 개도국이 자국민의 기본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좀더 안정되고 동등한 국제질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데 있음. 기본육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는 빈곤완화와 빈곤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써 경제발전의 도모에 있음. 연정이 원조정책에서 강조하는 필수적인 특징은 다음의 원칙에 나타나 있음.

- 대외원조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도적인 고려에 있음.
 - 원조의 배분시 인도적이고 빈곤완화목적에 더 많은 배분
 - 호주의 원조실시시 호주 및 수원국 NGO의 증대된 역할에 대한 지원
 - 지역발전의 지원에 우선순위를 둠
 - 원조사업이 특히 여성과 소녀의 필요와 능력배양에 우선순위를 둠
 - 수원국의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호주원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타 선진국이 아닌 호주의 제품 및 용역 그리고 인적자원을 활용을 선호함
 - 예산환경이 허락시 UN의 목표인 원조액의 GNP 대비 0.7%를 지지.
5. 원칙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연립정부의 구체적 대안
- Jackson 보고서를 진행하는 범위와 형태에 맞게끔, 호주의 전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
 - 원조의 장관급 자문회의에 공동체 발전 및 여성개발 경험자를 더욱 확대 참가 시킴
 - 수원국 지방의 보건분야 발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이를 위해 수원국의 높은 산모사망율을 감축하는 프로그램, 전쟁후유증 극복프로그램에 중점을 둠. 또한 보건프로그램이 지방까지 전달되게하며, 담당지역의 보건담당 직원의 능력개발에 우선 순위 부여.
 - 여성과 소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중시. 특히 여성과 소녀를 위한 기초교육에 우선순위를 둠.
 - 농촌발전 및 농업분야에 우선순위를 둠. 이 지역에 향상된 농업관련 기술 및 원료를 공급하는데 더 많이 지원. 이를 통해 시골로부터 도시로의 주민들의 엄청난 이전을 막을수 있음.
 - 특히 태평양 지역과는 자원관리 및 환경관련 사업을 강화함. 이를 통해 자원이 지속화되고, 개도국 자신도 그들의 자원으로부터 획득하는 생산성을 높일수 있음.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체 발전 프로그램이 포함됨.
 - 베트남의 My Thuan Bridge에의 자금제공에 대한 검토 및 관련재원의 동 지역에의 지역체 보건발전, 교육 및 위생관련 프로젝트로 전환 검토
 - IDA 11 자금제공 약속회의에 기존의 호주 약속자금에 대한 유지를 보장함.

- 호주 연정은 최빈곤국가의 외국에 대한 부채상환에 따른 어려움을 인지함. 연정은 제3세계의 부채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다자간 접근을 검토할 예정.

6. 양자간 우선순위

- 태평양 지역내에 규모면에서 제 일의 양자간 원조국으로써 연정은 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의 최빈곤국가에 원조프로그램을 집중화.
- 연정은 예산지원보다는 구체적으로 목표화된 원조 프로그램에 집중화 실시. 국별 우선순위는 호주의 종합적인 원조프로그램의 검토에서 결정됨. 이것은 연정에서 실시할 예정임. 이의 목적은 결정이 체계적이고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단순히 특정그룹의 지지에 의해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님. 그러나 연정이 특별히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함.
- 연정은 빈곤문제를 인지하며, 특히 아프리카가 처하고 있는 역경을 헤쳐가기위해 현 아프리카에의 원조수준을 유지.

참고: 연립정부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야

- 전쟁후 복구 프로그램, 그리고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설치
-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HIV/AIDS 예방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
- 다른 특별 국별정책은 원조전체 검토과정에서 인지된 정책과 접근법에 담겨진 원칙에 의해 진행됨.
- 궁극적으로 연정은 빈곤완화, 공동체 수준의 보건, 교육 및 위생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특히 개도국의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특수 교육분야에 호주의 원조가 충족될수 있도록 원조조직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 하고자함.

2. 오스트리아(Austria)

가. 기본개요

1) 원조목표

-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 여성의 개발참여로 인한 공평한 사회건설
- 개발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구증가와의 양립달성

2) 양자 및 다자간 집행기구

- 무상협력: Departme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외무부내) (인원: 35 명)
- 유상협력: Minister of Finance:
- 해외지사는 개도국의 위치한 자국의 대사관에서 역할수행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0.64bil. \$ (GNP 대비: 0.28%)(’96) (양자: 다자비율: 73:16)
- 중점수원국:
 - 중미: Costa Rica, Nicaragua, Guatemala, El Salvador
 - Sahel: Cape Verde, Senegal, Burkina Faso
 - 동아프리카: Uganda, Rwanda, Burundi, Tanzania, Kenya, Ethiopia
 - 남아프리카: Namibia, Zimbabwe, Mozambique
 - 아시아: Pakistan, Nepal, Bhutan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및 훈련분야: 직업훈련, 과학기술훈련
 - 사회간접 자본분야: 보건 및 인구, 상수도, 공공분야능력배양, 인권 및 민주주의
 - 경제간접 자본분야: 교통 및 통신, 에너지
 - 생산분야: 농업 및 농촌발전, 환경, 조림, 광공업, 무역, 관광분야
- 원조특징:
 - ’95 년에 EU 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써 분담금 및 의무증가.
 - 외무부의 DDC 는 전체 ODA 의 13%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부가 41%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구소련국에 대한 원조는 내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음.
 - 양자간 무상원조의 실시기관은 대부분이 NGO 에서 담당하고 있음.

나. 원조 정책의 변화

- 최우선순위 국가를 축소
- 분야별 및 국별 원조계획 도입
- 수원국 담당 원조 조정업무 담당자 지명
- NGO 관련 새로운 법규도입
- EU 회원국이 되어 원조액, 원조성격, 조정등에 많은 변화가 수행됨

다. 정책적 특징

- 외무부에서 수행하는 원조의 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전체 ODA 의 15%). 타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부부처간의 원조조정 중요성이 부각됨.
- 현재 오스트리아 원조의 문제점은 원조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임.
- 또한 의회는 원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음. 반면에 NGO 나 국민 여론은 오스트리아의 원조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나아가기를 요구함.
- '94 년 원조액은 GNP 대비 0.33%이며, 이것은 DAC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임.
- 국별배분에서는 회원국중에서 중.동부유럽(CEECs) 및 NIS 국가에 가장 많이 ODA 를 배분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피난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자국내에 불러들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으며, 또한 수출과 관련된 Official Concessional Export Credits 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줌. 이것은 향후 오스트리아의 원조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낮게하는 요소이기도 함.
- 오스트리아는 DAC 요청에 의해 최우선 국가를 19 개 국가에서 8 개 국가로 줄임. 그러나 DDC 에서 실시하는 원조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체 ODA 의 국별배분과 DDC 의 최우선 원조국가와는 일치하지 않음.
- 현재 오스트리아는 타 회원국에 비해 원조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국의 비교우위분야 및 중점협력국가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음.
- 원조의 중점 분야로는 교육, 교통, 에너지 및 제조업임.
- 오스트리아의 NGO 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NGO 들이 오스트리아의 양자간 원조를 대부분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에 공식적인 원조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임. 현재 NGO 단체는 단순히 ODA 의 실시기관 보다는 정부 부처와 동등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음. NGO 단체는 DDC 가

NGO 사업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보조금 규모의 축소, 늦은 지급방법 및 오스트리아의 경직된 예산규정의 적용이 주 불만 요인임.

- 오스트리아의 주요 원조 분야로 환경보호를 들수 있음. 대부분의 농업 관련 원조 프로젝트는 환경 친화 생농경분야임. 남녀동등 이슈는 중요한 우선순위 분야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빈곤완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분야로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동등한 분배를 장려하기위한 토지 및 농업개혁 분야임.
- 오스트리아 원조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적인 원조프로그램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또한 많은 정부부처에 원조 권한이 분산되어있고, 많은 실시기관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원조액이 여러 국가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임. DDC의 통제기관이 수상실과 외무성에 여러 차례 이동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원조 담당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음.
- 오스트리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별 원조중심에서 분야별 및 국별 원조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우선 국가를 줄이고 또한 한 국가에 대한 원조 분야도 2-3 개 분야로 줄였음.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국별/분야별 비교 우위분야를 실시할 수가 있음. 또한 수원국과의 원조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이 증가되어 관련 국가와의 원조조정업무도 잘 진행되고 있음.

라. 국별원조계획

- 관계 수원국과 합의된 Three-year Indicative Country Program(TICP)에는 원조의 목표, 프로젝트의 선정기준과 기본 원칙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TICP에는 오스트리아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2-3 개 분야를 기록함. 이 프로그램은 매년마다 updated 됨.
- Annual Program에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프로젝트와 그 기간동안 배분된 금액이 적시됨.
- Annual Progress Report에는 비엔나에 있는 본부의 국별/분야별 담당자에 의해 계획된 진행 프로젝트에의 진행 보고서가 포함됨.

마. 국별배분 기준

- 빈곤수준
- 최우선지역에의 위치여부
- 오스트리아의 원조역사
- 안전여부 및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병참 인프라존재 여부
- 업무를 실시할수 있는 지역 및 국별 제도의 존재 여부

바. 향후 추진방향

- 모든 원조 프로그램에 적용될수 있는 원조지침의 수립이 요구됨
- 대부분의 원조업무를 단일 정부부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양허성 수출신용이 원조의 기본정신과 일치될수 있게 계획 되도록 이를 담당하는 원조기관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해야함.
- 원조 담당 직원의 증원이 필요
- 원조 실시기관을 선정시 이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 원조 자문기구과 정부부처간의 조정에 대한 개혁이 요구
- 오스트리아 의회에 원조 백서 제출 기간을 현재의 3년별에서 매년별로 변경

3. 벨기에(Belgium)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빈곤의 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인간발전 신장 및 부의 공평한 분배실시
- 2) 원조기관:
 - 무상원조기관: General Administr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GCD):
인원: 본부 315 명, 해외: 45 명(37 개 사무소가 자국의 대사관에 설치됨)
 - 유상협력기관: **Finance Minister**(전체 ODA 의 35% 실시)
-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0.94 bil. \$ (GNP 대비 0.35%)(양자:다자비율 50:50)
 - 중점수원국:
-Africa: Burkina Faso, Cameroon, Cote D'ivoire, Gabon, Kenya, Mali,Niger, SADC

- Latin America: Bolivia, Ecuador, Suriname
- Maghreb: Algeria, Morocco, Tunisia
- Asia: Bangladesh, Cambodia, China, Indonesia, Laos, Thailand, Vietnam

○ 중점지원분야:

- 농업, 보건 및 교육분야
- 산업 및 금융분야
- 구조조정분야
- 긴급구호분야 및 식량원조

4) 원조특징:

- '96 년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Bukoba 호 전복사건이후 벨기에의 원조는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기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원조의 효율성을 고양하기위한 기로에 있음.
- 벨기에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조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나. 원조 현황 및 신 원조 정책강령

- 최근에 벨기에의 원조정책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이것은 지금까지 벨기에의 원조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의 산물임.
- 벨기에정부는 원조대강으로 “Annonce la Couleur—Plan d’avenir pour la cooperation belge au developpement”를 발표함. 여기에는 DAC 의 21 세기 전략에 맞추어 벨기에정부의 원조 기본방향과 전략이 포함됨. 또한 원조의 우선순위로 빈곤추방, 민주화에 대한 지지 및 발전 그리고 화해를 통한 평화추구를 위한 네트워크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인간 발전에 둠. 그리고 관련 수원국의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의 발전 및 민간인 회사와의 파트너쉽의 조장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함.
- 사회적 발전은 지속적 발전과 빈곤추방을 위한 기초라고 여김. 또한 분쟁방지 및 사회통합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원조전략은 원조 담당기관인 AGCD 에서 기안한 전략페이프 및 분야별 행동강령에 의해 보완됨. 이는 벨기에원조의 발전된 측면을 나타내고 있음. 현재, 분야별 우선순위는 보건, 농업 및 식량안보, 소규모 기초 인프라, 성의 동등, 분쟁방지 및 평화유지, 교육, 그리고 경제발전분야임.
- 벨기에원조의 3 대 기본원칙은 간결(Simplicity),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ectiveness)임. 그리고 분야별 및 지역별 집중화를 추구하고,

다자간 원조를 통합하는 것임.

- 향후 벨기에원조의 중심 추구 분야로는 보건, 교육, 농업, 기초 인프라 및 사회통합임. 그리고 AGCD 가 공여하는 원조는 19 개 국가와 1 개 지역으로 국한할 예정임. 최우선 원조 지원국가는 Sahel 지역과 벨기에와 역사적 관계가 깊은 국가들이 포함됨. 반면 현재 적은 원조액으로 지원되는 여러 다자간 원조담당 기구의 수를 줄어나갈 예정임.

다. 원조 관리적 측면

- 벨기에정부는 원조의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해 원조담당기구의 구조조정을 단행함. AGCD 의 역할은 첫째, 원조정책 보완관련 연구, 둘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셋째, 대내.외적 통제임.
- 새로운 원조기구의 조정방향은 첫째, AGCD 내의 분권화 달성, 둘째 모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 속도의 가속화임. 그리고 정책평가 및 보완국이 신설되었음. 그리고 공사형태로 원조실시기관의 설립이 '97 년에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 담당 직원의 질적인 면의 강화도 구조조정의 한 중요한 측면임. 몇 년간 직원충원은 동결되어 있지만 AGCD 는 주요 부서에 인원을 집중배치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AGCD 는 분권화를 두가지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함. 첫째는 원조담당 장관실과 실제 원조를 담당하는 AGCD 간의 업무 분권화이며, 둘째는 AGCD 본부와 해외지사간의 경우임.
- 21 세기 DAC 전략에 발 맞추어 벨기에정부는 국별 원조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실험적으로 4 개국을 대상으로 국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준비중임.

라. 원조정책의 일관성(coherence)

- 최근에 정부내의 원조정책관련 일관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향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벨기에정부내의 원조정책 관련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원조차관을 결정하는데 개발목표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며 또한 AGCD 의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정책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case 도 있었음.

마. 원조액

- '96 년 벨기에의 원조액은 \$937 million(GNP/0.35%)임. 이것은 전년도 비교시 6.4% 낮아진 수치임. 동년에 AGCD 는 불용액(\$66million)을 기록한바, 그 이유로는 최우선 원조국가중 3 개 국가(Burundi, Rwanda,

Zaire)의 정치적 불안정에 기인함. 또한 불용액을 익년에 사용가능한 개발협력기금(FCD)이 '93년에 폐지된 것에도 기인함.

바. 여론

- 원조담당 장관과 AGCD는 개발 관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함. 그 결과 국민들의 개발에 대한 인식도 세배 정도 증가함. 현재 국민여론은 개발협력에 대해 많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음. 이것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벨기에원조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에 기인함.

사. 향후 방향

- 최근에 벨기에정부는 자국원조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개혁을 단행함. 다음은 DAC 회의에서 벨기에정부에 권고한 사항임.
- AGCD의 원조집행 권한을 분산하고 대내적 그리고 해외사무소에게 많은 권한을 이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
- 원조정책수립시 목표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
-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를 잘 활용하게 함으로써 능률성을 고양함
- 직원들의 재훈련을 통해 그들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본부와 해외사무소간의 인적교류 실시
- 관리능력과 원조액 집행능력의 향상
-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쉽 접근법을 발전시킴
- 개별 국별 원조계획을 수립
- 수원국 민간기업 발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키 위해 적절한 방안 강구
- 빈곤완화, 사회발전, 민주화 및 인권 그리고 분쟁방지 분야에 분야별 정책을 입안
-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등 기술 협력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

참고: 벨기에의 민간기업 발전분야의 내용

- 수원국의 중.소기업이 벨기에의 중.소기업을 통해 적절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줌.
- 개도국의 기업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나올수 있도록 도움을 줌
- joint ventur 사업을 장려
- 분쟁으로부터 해방된 국가에게 소규모 경제개혁을 위한 지원 제공
- 소규모 사업 실시 기업, 경제.사회분야에 속한 기업에 대한 지원

4. 캐나다(Canada)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빈곤완화를 달성하고 또한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가 공평하고 안전한 그리고 번영하여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이것은 '95 년에 새롭게 발표한 캐나다 외교정책 백서인 "Canada in the World"에서 원조 관련 부분임.)

2) 원조담당기관: Canadian Int'l Development Agency (외무통상성의 산하기관)

- 본부인원: 1185, 해외주재: 101 명, (중점협력대상국의 캐나다대사관에 근무)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1.8 billion \$ (GNP 대비 0.32% ('96) (양자: 다자 76:34)
- 중점수원국:
 - West Africa: Ghana, Mali, Senegal and Regional Programming
 - North Africa: Maghreb region, Egypt, Jordan
 - Eastern/Central Africa: Cameroon, Regional programming
 - Southern Africa: SADC
 - Latin America: Jamaica, Guyana, Leeward/Windward, Haiti, Bolivia, Peru
 - Asia: Bangladesh, India, Indonesia, China, Pakistan, Philippine,
- 중점지원분야: 캐나다의 신 외교정책백서에 의거 캐나다 정부는 다음의 6 가지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함.
 - 기본육구분야: 교육,
 - 여성개발분야
 - 사회간접자본분야
 - 인권 및 민주주의 그리고 선한통치분야
 - 민간분야개발분야
 - 환경분야
- 원조특징:
 - 다른 원조기관과는 달리 캐나다의 원조특징은 새로운 집권화전략을

추진. 즉 해외사무소에 많은 재량권을 허락한 '80 년와는 달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사무소 및 담당직원을 축소하고 있음.
-국내의 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하여 카나다는 “Input base”에서 “Result base”로 원조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나. 원조 정책 변화

-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위해 카나다 정부는 '95 년에 신 외교정책인 “Canada in the World”를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카나다의 외교 정책과 개발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함. 카나다는 범세계적인 이슈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 그예로 '97 년 오타와에서 대인지뢰 금지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동년에 CIDA 가 주최한 “Global Knowledge Conference”는 개도국이 정보 및 통신 혁명의 시대에 맞이하는 지식과 당면과제를 찾기위해 국제회의였음.
- 이와같은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나다의 ODA 규모는 '90 년 GNP 대비 0.45%였지만 '96 년에는 0.32%로 감축하였음. 그리고 '98/99 년 규모는 0.30%로 예상됨.
- 카나다의 원조담당기관은 현재 “Canada in the World”에 공표된 원조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여러형태의 개혁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된 목표에 비해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음.
- 카나다는 다자간 원조기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 그러나 지금은 그와같은 노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 특히 카나다의 영향력 행사 노력은 국가의 세출 결정시 원조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에 봉착함.

다. Canada in the World: a new vision of Canada's international role

- 이 강령은 '88 년에 발표한 “Sharing our Future”를 대치하며, 다음의 3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번영과 고용촉진
 - 안정된 범세계적인 환경하에서 카나다의 안전을 보호
 - 카나다의 가치와 문화 창달
- 이 강령에서는 개발협력이 위에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주요한 수단이며 번영과 고용에의 투자라고 지적함.
- 이 강령은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구체적으로 이와같은 노력을 조정하기위해 정부의 각 부처의 역할을 정함. 특히 외교통상부는 “범세계적/인류적 문제담당부”를

창설하여 환경문제, 아동노동, 및 국제적인 범죄 및 예방외교등을 포함한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을 책임짐.

- 현재 외무성, 국제무역성, 재무성 및 국제협력성 모두 개발협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개발협력에 대한 통제권이 최근에 여러 부처로 이양됨에 따라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강령은 캐나다의 고용에 도움을 주기위해 개도국과의 무역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음. 이와같은 상업적인 목표와 원조액의 지속적인 감소는 현재 최우선 원조제공국을 변경시키고 있음.
- 이 강령에는 3 개의 다른 약속을 선언함.
 - 개발파트너십 강화
 - 향상된 효율성
 - 결과에 대한 대외 보고체제 강화

개발파트너십 강화

-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국이 참여하고 그들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조함. 특히 카나다는 타이드 원조가 캐나다의 NGO 및 민간기업이 원조과정에 참여케하여, 궁극적으로 캐나다와 수원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것이고 주장함.

향상된 효율성

- 캐나다의 ODA 활동에 대한 효율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아니라 투입보다는 결과중심적이고 질적인 측면의 강조를 의미.

결과에 대한 대외 보고체제 강화

-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를 수립 및 의회 및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 이를 통해, 평가결과를 캐나다 정부가 더욱 잘 활용하게 하며, 그리고 의회, 국민, 그리고 수원국에게 알려야함. 이것은 DAC 의 21 세기 전략에 나타난 양적인 목표의 성취와 일맥상통함. 현재 CIDA 의 활동 결과는 매년마다 준비되어 의회에 보고됨. 그리고 '96 년 부터는 6 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보고서와 이것이 캐나다에게 제공하는 이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보고하게 되어 있음.

라. 개혁중의 CIDA

- 강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캐나다의 개발협력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좀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그리고 ODA 를 통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에 대한 좀더 엄격한 분석을 지적함. 최근 몇 년간 CIDA 는 이 강령에서 명한 목표를 달성과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전달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개혁과정을 거치고 있음.

- 프로그램의 강조나 내용을 향상하기위한 노력은 강령에서 주어진 방향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위한 정책지침의 범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95 년에 채택된 CIDA 의 “Policy on Poverty Reduction”은 현재 CIDA 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우선순위(기본욕구, 성의 평등, 인프라제공, 인권, 민주화 및 선정, 민간분야 발전,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고리를 제공함. 이 주제와 우선순위는 DAC 의 21 세기 전략과 잘 조화됨.
- CIDA 는 양자간 원조를 지금까지의 분야별 집중에서 주제별 접근법으로 재정립하고, 또한 Input 보다는 Result-basis 로 방향 전환을 실시중. 그러나 강령에서 제기한 주제들을 구체적인 실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데는 직원들의 이해부족을 포함해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음.
- CIDA 는 인권과 선정에 대한 고려를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성공적으로 접하시켰음. 이것은 개도국의 인권 보장 및 촉구, 법치국가와 민주과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캐나다의 원조를 실시함에 의해 가능함.
- 캐나다 원조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93 년 캐나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방향에 근거하여 잘 진행됨. 그 방향으로는 CIDA 직원들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한 고려의 중시, 새로운 모랄 및 노력 배가임. 또한 직원들의 연령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 결과중심 관리법과 프로젝트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 및 평가를 위한 “Portfolio Management” 접근법이 도입으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세워지고, 특히 본부와 해외지사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달성됨. 이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빠른 발견 및 해결방안을 제시케함.
- 이는 CIDA 의 Professional Branch 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역부서로 옮겨감. 이를 통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프로그램 제작과정의 능력을 배양시킴. 이것은 World Bank 나 영국의 DFIC 와 맥을 같이하는 구조조정 방향이며, 이를 통해 분야별 및 지역별 연계를 가능케함. 이는 CIDA 가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해온 수원국 능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 반면 결과중심 관리기법의 도입은 현재 이를 도입한 많은 회원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같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킴. 즉 관련 수원국의 수요, 목표 및 리더쉽과 캐나다 정부, 국민 그리고 의회에서 CIDA 에게

- 요구하는 책임성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임.
- 캐나다가 수출촉진용으로 타이드원조에 많이 의존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는 것은 국별원조의 집중화 및 분산화 관리에 대한 조화임. 예전에 캐나다는 분산화를 많이 실시하였지만, 현재 이로 인한 고비용 때문에 권한의 재집중화를 하고 있는 실정임. 가장 큰 해외지사는 5-6 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1-2 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새로운 원조필요 사업을 찾고, 수원국의 프로젝트 소요가와 계약자, 수원국정부 및 타 공여국간의 연계역할 수행하는 정도임.
 - CIDA 는 이 모델이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대부분의 CIDA 의 국별원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점을 고려시, 과연 CIDA 의 해외지사 직원을 줄이는 것이 현장중심의 원조 및 빈곤경감 및 선정과 같은 아주 복잡한 이슈에 대한 공여국간의 원조조정을 잘 수행할수 있는 지는 확실치 않음. 또한 향후 수원국에 대한 원조규모가 증대 되었을 때 과연 현재 처럼 수가 적은 인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마. ODA 규모

- 캐나다의 원조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의 원조관련 예산 항목인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음. 이는 다른 연방 예산항목보다 연간 예산 축소 비율이 특별히 높음. 이는 향후 캐나다의 ODA 의 대 GNP 비율이 점점 더 낮아 짐을 의미함.
- Canada in the World 에서 ODA 목표를 GNP 대비 0.7%로 설정함.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국의 경제적 상황이 허락하는 것으로 함.

바. 원조 6 대 집중분야

- 기본육구분야
- 여성개발
- 인프라분야
- 인권 , 민주주의 및 선정분야
- 민간기업발전
- 환경

사. 캐나다의 기본육구분야 개념

- 기초보건
- 기초교육
- 가족계획
- 영양섭취분야
- 상수도 및 위생분야
- 자연재해 및 인재의 희생자에 대한 피난처 및 긴급 인도적 원조제공

아. 캐나다의 조직개편 방향

1) 배경: '93 년에 감사원의 CIDA 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위해 CIDA 가 실시한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임.

2) 내용

○ 제 1 단계:

-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의 계획, 기대효과 및 성과도 지수로 전환
과정 도입
- 외교통상부와의 의견조정과 협조 고양
- 조직구조, 지역별 프로젝트의 고안과 승인과정, 계약, 직원채용,
그리고 행정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비용/효과를 높임
-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와 보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Policy for
Performance Review"를 실시함.
- CIDA 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기술 인프라의 도입을 통해
관리 및 보고 능력을 향상

○ 제 2 단계:

- CIDA 는 "Policy on Result-based Management"를 도입 실시중. 또한
CIDA 는 결과 중심관리에 대한 훈련과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도입.
- CIDA 는 프로젝트 고안, 감시, 결과보고서, 평가 및 감독등 전 프로
젝트 사이클을 포함하는 성과 측정체제를 구축함.
- CIDA 는 자신의 양자간프로젝트의 성과를 측정하기위한 양자간 프로
젝트 성과 측정체제의 핵심인 "Framework of Results and Key Success
Factors"를 개발, 시험 및 실시를 하였음.

○ 제 3 단계

- 감사원장의 CIDA 의 지금까지의 개혁작업에 대한 평가를 가함.
'93 년에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 시작된 CIDA 의 개혁과정은 '98 년 말

감사원장의 지금까지의 개혁에 대한 소견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종료될 예정임.

참고: "Policy for Performance Review"

- '94 년에 CIDA 는 프로젝트 실시 결과에 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위해 이 정책을 도입함.
- 이를통해 CIDA 는 감독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틀을 수립하였으며, 성과 측정부서와 집행부서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
- 이 정책의 목표는 CIDA 의 관리자, 직원들이 그들이 실시하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결과에 대한 신뢰적이고, 적시 및 유용한 정보를 활용케 하는 것임.
- 사업의 집행은 의도된 개발 및 운영결과에 대한 확인 및 효율성을 측정하기위한 적절한 수치의 수립을 통해 가능함.
- 이 정책은 3 개의 레벨에서 운영함. 첫째, 계속되는 성과측정, 둘째, 평가 및 내부감독, 셋째, 위의 2 레벨과 다른 정보 및 분석자료의 결합으로 실시됨.

참고: "Result-based Management"

- CIDA 는 '96 년에 "Policy on Result-based Management"를 도입함.
- 6 대 원칙: 1) 단순성(Simplicity), 2) 시행착오(Learning by doing), 3) 광범위한 적용(Broad Application), 4)파트너쉽, 5) 책임성(Accountability), 6) 투명성(Transparency)

참고: "Framework of Results and Key Success Factors"

- 이는 양자간 프로젝트의 성과검토체제의 핵심임. 이를 통해 실시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를 생산토록 고안됨. 또한 이 제도는 직원들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관리, 경험으로부터 교훈체득, 성과에 대한 보고를 잘 할수 있도록 함. 이는 사업실시후 및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프로젝트 사이클 과정에서 문제점의 사전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끔 유도.
- 원조의 효율성 측정 3 개 요인
 - 결과달성: 산출(output), 결과(outcome), 영향(Impacts) 레벨
 - 유발요소: 적절(relevance), 적합(appropriateness),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지속성(sustainability)
 - 관리요소: 파트너쉽, 개혁(innovation), 창의성(creativity), 적절한 인적자원활용(appropriate human resource utilization),

신중함 및 조사(prudence and probity), 정보제공에 의한

적시행위(informed and timely actions)

- 이는 처음에는 양자간 원조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다자간 및 캐나다 파트너쉽부서에도 적용되고 있음.

참고: CIDA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사정책

- CIDA의 상위층의 절반 인원이 10년 이내 퇴직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CIDA는 인사정책에서 새로운 개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 내용으로는?
 - 명예퇴직 프로그램
 - 초임, 중견레벨 및 상위레벨에의 직원채용
 - 경쟁에 의해 승진의 정해진 사이클 실시
 - 모든 레벨에서 직원들의 재 훈련 실시

참고: CIDA INC 프로그램

- 이것은 캐나다의 중.소기업들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참여케 하기위한 CIDA의 프로그램임.
-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먼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개도국의 경제사회 및 산업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자신들과 파트너인 개도국의 기업이 기술적, 관리적, 인적 및 자금능력에서 지속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함. 또한 신청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환경평가법에 따라야하며,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실시과정에서 성의 동등에 관한 측면을 고려해야함.
- CIDA의 추계로는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ODA 1달러당(캐나다) 개도국에 10.88 달러(캐나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5.50 달러(캐나다)의 순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함.

참고: 원조효과에 대한 CIDA의 보고서 내용('97-'98)

"About 70 percent out of every Canadian development assistance dollar was used to pay for Canadian goods and services. A recent study using Statistics Canada methodology showed that in 1995-96 Canadian ODA expenditures provided 36000 new or ongoing jobs and led to contracts for 2000 businesses, 50 universities and 60 colleges in Canada. These direct job benefits are proportionally greater than employment estimates attributed to Canadian exports because of the high labor intensity and Canadian content of goods and services utilized by CIDA

5. 덴마크(Denmark)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달성케함. 그리고 문화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와 연대를 도모하고자함.(이것은 '94 년에 발표한 “ A Developing World: Strategy for Danish Development Policy Towards the Year 2000”에 기술됨)

2) 무상원조기관: South Group(외무성내 조직임)

본부인원: 275 명, 해외주재: 119 명 해외사무소: 19 개(대사관직원임)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1.8 bil. \$ (GNP 대비 1.04%)(’96) (양자: 다자비율 55:45)
- 중점국가: 20 개 국가를 중점협력국가로 분류함.
 - Bangladesh, Benin, Bhutan, Bolivia, Burkina Faso, Egypt, Eritrea, Ethiopia, Ghana, India, Kenya, Mozambique, Nepal, Nicaragua, Niger, Tanzania, Uganda, Vietnam, Zambia and Zimbabwe.
- 중점지원분야:
 - 농업, 농촌개발 및 식량획득분야
 - 에너지분야
 - 보건 및 인구억제분야
- 원조특징:
 - 원조의 새로운 전략에는 원조와 외교정책 그리고 무역 및 환경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음.
 - NGO.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며, 또한 이와같은 기관들이 개도국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덴마크 정부도 같이 공유하고 있음.
 -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분권화의 모습을 보여줌.

나. 원조정책

- 덴마크는 '94 년에 “A Developing World—Strategy for Danish Development Policy Towards the Year 2000”를 선언함. 그 배경은 '90 년대 이후 엄청난 국제적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임.

- 이 선언에서 덴마크는 지금까지의 우선 지원분야였던 빈곤완화, 여성개발, 환경 및 선정뿐만 아니라, 인구, 무역 및 외채탕감과 같은 분야를 새로운 우선지원 분야로 추가함.
- 또한 원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위해 이 선언에서는 제한된 최우선 지원국가에 집중화하여 원조를 지원하고, 덴마크의 원조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다자간원조기관을 지원할 것을 표명함.
-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지지의 표시로 덴마크의 수상은 '93 년에 개발협력담당 장관을 임명함.
- '95 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4 이 덴마크의 ODA 가 GNP 대비 1%를 지지함. 이와같은 지지배경에는 덴마크의 많은 단체가 ODA 에 관여하기 때문임. 예를 들면 NGO, 자문회사, 연구원, 무역노조, 그리고 민간사업체들의 활발한 관여가 높은 지지율을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음.

다. 양자간 원조

- 덴마크의 양자간 원조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설정과 실시과정에 수원국 및 원조수혜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임. 원조전문가를 현장에 보내는 현장 중심의 실시체계는 조직의 관료주의를 극복케 만듦.
- 덴마크는 대부분의 양자간 원조가 20 개의 최우선 지원국가에 집중 지원됨. 이들 국가는 1 국을 제외하고 모두 LIC 국임. 그러나 20 개 최우선 지원국가를 제외한 양자간 수원국에 대한 원조는 '99 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리고 덴마크는 20 개 최우선 국가에 대한 국별원조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이를 위해 먼저 수원국의 지역전문가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준비하게 한 다음, 이들과 덴마크의 원조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침.
- 덴마크는 국가의 집중화 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원조를 실시함.

라. 다자간 원조

- 덴마크는 다자간 원조에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 즉 덴마크의 최우선 지원분야와 일치하는 원조를 실시하는 다자간 원조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바뀜. 이를통해 덴마크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다자간 기구에는 원조액을 더욱 증액함. 예를들면 UNDP 와 같은 기구임.

마. 덴마크 비정부 원조관련 단체

- 덴마크 원조기관과 덴마크 NGO 단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함. 현재

덴마크 NGO는 정부로부터 사업실시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됨.

- '94년에 원조조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채택됨. 양자간 원조액의 50%를 타이드로 해야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이 조달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함. 그 결과 수원국의 기업이 원조제공자로서 더욱 많은 관여를 할수 있게 되었음.

마. 원조정책 및 관리

- '91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덴마크 외무성내의 "South Group"이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양자간 관계에서도 원조, 무역, 일반적인 외교관련 업무가 모두 이 부처에서 책임지고 있음. 외무성내의 개발협력 담당 장관이 원조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책임짐. 이와 같은 기관이 모든 원조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덴마크는 정부내 원조 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그러나 장관협의회에서 EU와 관련된 개발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은 실시 하고 있음

바. 국별원조계획 및 분권화

- '94년에 최우선 지원국가에 대한 선정이 완료됨. 이를 기초로 국별원조 계획이 수립됨.
- 우선 이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야기. 그러나 덴마크는 참여적 개발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둘째, 지금까지 양자간 원조를 공여받은 타 국가에 대한 지원은 '99년에 종료할 예정. 그리고 덴마크가 우선순위를 부여한 분야에 원조를 집중함. 그 분야로는 민주화 및 인권에 대한 지원, 덴마크 NGO 프로젝트, 신뢰도가 높은 국가에 협조용자 제공등임..
- '89년에 발표한 "Plan of Action"은 수원국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에게 원조관련 많은 권한을 이양할 것을 표명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수가 관건임. 덴마크 외무성은 조직개편후 자국대사관에게 많은 인원을 배치하였음.
- 관련 수원국에 대한 원조정책은 수원국 정부, 수원국 원조관련 종사자, 그리고 덴마크의 NGO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덴마크 외무성이 수립함. 해외주재 원조담당관은 국별원조계획의 준비작업을 대부분 담당하고, 프로젝트의 실시에 관한 감독의 대부분을 책임짐.
- 덴마크가 분야별 프로그램과 분권화 관리구조로 변경한후 개발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실시과정에 수원국의 중간급 및 하위급의 공무원에 의한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래서 덴마크는 수원국 공공조직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South Group 의 평가부서는 원조관리와는 독립되어 있는데, 덴마크의 원조가 수원국의 특별한 분야 및 특별한 국가의 발전에의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 덴마크의 원조평가의 특징은 다자간 원조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것임.

사. 원조액 및 지원분야

- '92 년에 덴마크는 GNP 대비 1%, '93/'94 년에 GNP 대비 1.03%를 달성함. 다자간 원조기관은 '93 년 전체 ODA 의 43%, '94 년 45%를 지원받음.
- '90% 이상의 양자간 원조는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최빈곤 국가에 배당됨.
-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전체 원조의 40%이상이 배당됨. 이것은 5 년전에 15%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
- 또 다른 분야로는 '93 년의 민간기업 발전 프로그램임. 이는 덴마크의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수원국의 기업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케함. 이 프로그램은 현재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5 년에 재평가할 예정임.

아. 평가

- 덴마크의 원조는 현재 원조에 대한 피곤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른 회원국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90 년대의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위해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추구함.

6. 핀란드(Finland)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지속적발전과 번영추구
- 개도국의 평화,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및 인권확립에 기여
- 핀란드와 개도국간의 우호증진

2) 원조기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외무성내 조직)

본부인원: 138 명, 해외주재: 21 명, 해외사무소: 17 개(대사관직원)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0.41 bil. \$ (GNP 대비 0.34%) (양자:다자 57:43) ('96 년)
- 중점수원국: 10 대 중점협력대상국
 - Africa: Egypt, Ethiopia, Kenya, Mozambique, Namibia, Tanzania and Zambia
 - Asia: Nepal, Vietnam
 - Latin America: Nicaragua
- 중점협력분야:
 - 빈곤완화분야
 - 환경보호
 - 인권 및 민주주의 신장분야
 - 민간분야발전분야

나. 원조 목표

- 개도국에 만연한 빈곤완화
- 환경문제 해결
- 개도국의 사회평등, 민주주의 및 인권추구

다. 원조실시 요인(Motives)

- 도움을 필요로한 국가 및 국민들을 도와주는 도덕적 명령 및 연대
- 개발협력은 시민사회의 표징임
- 개도국의 번영은 위기와 전쟁에 대한 위협을 줄이면서 자국의 정치안정과 안보를 보장함.
- 개도국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제발전을 달성

라. 외교정책의 요소

- 개발협력은 핀란드의 외교정책의 통합된 부분임
- 특히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측면, 무역적 측면, 그리고 개발협력은 한 요소임.

마. 수원국의 책임

-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는 개도국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그리고 핀란드는 이와같은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임.

바. 개발협력의 수단

- 양자간 협력
- 국제 기구
- 국제 개발 금융기구
- 인도적 원조
- NGO

사. 양자간 원조

- 대부분의 원조는 최빈국가에 분배됨. 특히 사헬 지역에 대한 원조를 강조
- 수원국을 선택하는 데 있어 좀더 신축성을 가함
- 새로운 원조 수단, 예를 들면 Micro-funds 같은 것을 개발함

아. 다자간 원조

- UN 의 역할을 강조
- 핀란드 정부는 UN 기관중 특히 UNFPA, Unicef, UNDP, WFP 에 집중화
- 핀란드 원조정책과 일치하는 다자간 원조 활동이나 분야에 다자간 원조의 특정액을 특별히 할당함.

자. 인도적 원조

- 분쟁방지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리고 위기에 대한 변함없는 해결책 모색
- 인도적 원조는 전체 개발 원조 예산의 10-15%를 할당

차. NGOs

- 핀란드 및 외국 NGO 를 통한 지원은 개발 예산의 10-15% 할당

카. 양허성 차관

- 핀란드는 OECD 와의 합의에 의해 양허성 차관을 중단할 예정
- 그때 까지는 혼합성 차관은 줄여나감.

타. 원조액

- 2000 년까지 GNP 의 0.4% 달성
- 장기적으로 GNP 의 0.7% 목표
- '96 년의 원조예산은 2 billion FIM 정도임. '97 년에는 53 millionFIM 이 증가됨

7. 프랑스(France)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인간발전
- 개도국의 생산분야 발전
- 프랑스의 언어 및 문화전수

2) 원조 담당기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Cooperation
- Caisse Francaise de Developpement (CFD)
- The Fund for Aid and Cooperation (FAC)
-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본부인원: 1931 명, 해외주재: 1142)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8.44 billion \$ (GNP 대비 0.55%) (양자:다자 76:24) ('95 년)
- 중점수원국:
 - 중점협력대상국: 프랑스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며 양자간 원조의 50% 가 배분됨. 아프리카 및 카리비안 국가들
 - 다른 개도국: 양자간원조의 30% 할당됨. 여기에는 대부분 Maghreb 국가 및 Egypt 에 배분됨. 아시아 지역에서는 Vietnam, Laos, and Cambodia 가 포함됨.
 - TOM 국가들: New Caledonia and French Polynesia): 양자간 원조의 12% 공여됨.
- 중점협력분야:
 - 경제간접자본분야: 교통 및 통신분야
 - 사회간접자본: 교육, 보건, 인구문제
 - 문화발전: 외국 유학생접수, 불어향상 및 기자재 제공
- 원조특징
 - 프랑스는 원조정책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이로인해 정책담당기관들간의 정책조정이나 일관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위해 최근에 프랑스 정부는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을

외무성산하로 변경하였음.

-프랑스는 불어령국가(Francophone)와의 관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원조가 집행되고 있음.

나. 원조의 목표와 수단

- 프랑스는 현재 ODA 규모에서 세계 제2위를 차지함. 그리고 '96년에 리용에서 G7 회의를 개최시 개발협력을 주요의제로 채택하였음.
- '94년에 개최된 DAC 원조 검토회의에서 프랑스의 여러 원조형태에 대한 관심 및 문제점이 지적됨. 그후 프랑스는 원조 조직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음. 그예로 '96년에 프랑스의 수상은 원조관련 자문회의의 보고서를 토대로 조직을 변경시켰으며, 실례로는 협력부가 외무성의 산하로 편입된 것임. 협력부의 업무범위도 모든 아프리카, 카리비안과 태평양(ACP), 그리고 남 아프리카를 포함함.
- 또다른 조직상 변화는 수상이 주재하는 부처간 개발원조 위원회(CIAD)의 설치임. CIAD의 목적은 원조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간의 원조정책에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 정책레벨에서는 '90년대 엄청난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정책의 변화를 시도함. 이것은 DAC의 21세기 전략의 수립시기와 일치하며, 프랑스는 DAC의 21세기 전략의 수립에 많이 기여함. 현재 이 전략은 프랑스의 개발협력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음.
-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담당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임. 특히 이를 위해 직원의 충원이나 직원의 재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

다. 파트너십, 빈곤완화 및 공여국간 조정

○ 수원국 중심 개발

-현재 프랑스는 "Ambit"국가(구 식민지 37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원국 자체의 개발전략에 기초한 중.장기 국별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프랑스는 "Ambit" 국가를 제외하고는 수원국에서의 요청에 의해 원조를 제공함.

○ 빈곤완화

-프랑스의 빈곤완화에 대한 개념은 원조를 최빈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됨. 그러나 '96년에 선언된 DAC의 21세기 전략은 지금까지의 전략에 대한 재분석을 요구함. 특히 이 전략에서 양적인 개념으로 나타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원조에 대한 평가,

협력형태 및 도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프랑스의 사회개발기금(FSD)에 의한 증여는 대부분이 수원국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이의 목표는 그 국가의 가장 못사는 수혜자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것임.

-그리고 프랑스 NGO도 이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함.

프랑스 NGO가 ASI의 자금지원을 더욱 많이 받고 있으며, 사회분야의 발전을 위한 원조정책 수립과정에도 자신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음.

-여성개발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다른 공여국에 비해 수적으로 적음.

○ 공여국간 원조조정

-프랑스는 공여국간 원조조정 회의에 많이 참석함. 특히 프랑스의 “Ambit”국가에 관한 조정회의에는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참석함. 그러나 원조 조정회의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레벨에서 관련 수원국의 자체 개발 전략에 관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프랑스 국민들의 원조 지지

- 자국의 ODA 규모에 비해 프랑스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임. 매스컴에서도 취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회에서도 거의 관심이 없는 실정임. 프랑스의 상원이나 하원에서는 개발협력을 취급하는 위원회도 없음. 그러나 실제로 속을 들여다 보면 프랑스의 국민, 민간 기업들은 이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에는 지속적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ASI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프랑스 중앙정부는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마. 프랑스 원조의 특징

- 프랑스의 고위층에서는 프랑스의 원조체제를 더욱 단순화, 투명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이 개혁에는 원조과정에 참여하는 각 기관간의 원조 조정을 향상하는 것도 포함됨.
- 프랑스가 DAC의 평균보다 더 높은 원조액을 유지하고 부채경감을 실시하고 있어 타 공여국의 모범이 되고 있음.
- 양자간 원조의 대부분이 최빈국에 공여되고 있으며, 분야로는 교육 및 보건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또한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Francophone 국가와 브레튼우즈협정을 포함해 협조유자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프랑스가 다른 회원국을 선도하고 있음.

- 원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높은 직업의식을 나타냄. 이는 원조기관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종합적인 원조정책이 없다는 것임. 현재 원조제공은 수원국의 차별화 전략에 의거 실시되고 있음.
- 또한 같은 유형의 수원국이라도 서로 다른 원조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원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 사회분야, 특히 여성개발이나 인구억제와 같은 분야에 좀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 요구됨. 또한 교육 및 보건분야에 관한 원조에 있어서 인구증가와 같은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고 있음.
- 빈곤완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대부분의 수원국을 위한 중.장기 국별원조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프랑스 원조를 접수하는 모든 수원국과 진정한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바. 프랑스 원조의 지역별 배분

- 현재 프랑스의 원조의 지역적 배분은 크게 3 개의 범주로 나누어 지며, 각 범주마다 원조 전략이 다름. 예를들면 Ambit 국가는 프랑스와의 오랜 역사적 관계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으며,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 반대로 3 개 해외영토는 자율성이 많이 허용되지만 프랑스 영토이기 때문에 Ambit 국가 보다는 관심이 적음. 그외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년 단위로 예산이 배분됨.

사. G7 회의(파리 리용개최, '96 년)에서 합의된 개발협력 관련 사항

- 원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에 원조를 제공
- 효율적인 원조
- 지속적 개발과 빈곤경감에 원조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
- 개도국의 민간 기업 발전에도 기여

참고: 프랑스 ODA 지역 배분

- Ambit 국가(구 식민지 37 개 국가): 전체 원조의 43% 배분
- 3 개 해외영토: 전체 원조의 19% 배분
- 기타 100 개 개도국: 38%

8. 독일(Germany)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인권존중 추구
- 개도국 국민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유도
- 개도국의 법치주의 확립
- 개도국의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이식 및 사회형평성제고
- 개도국 정부의 사회보장 과 군사적목적에의 경비의 적정성유지

2) 원조기관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BMZ)
- Bank for Construction (Kfw)
-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GTZ)
- 본부인원: 2338 명, 해외주재: 1564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7.51 bil. \$ (GNP 대비 0.32%) (양자:다자 64:36) ('96 년)
- 중점수원국: 양자간 원조의 배분
 - 아시아지역: 42%
 - 아프리카지역: 37%
 - 라틴아메리카: 13%
 - CEEC/NIS: 7%
- 중점협력분야:
 - 빈곤완화분야
 - 교육 및 직훈분야
 - 인구억제분야
 - 인도적분야
- 원조특징
 - 다른 회원국과 달리 원조정책은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과는 다르게 고안되고 집행됨. 그리고 원조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BMZ 이고, 기술원조는 GTZ, 그리고 유상원조는 Kfw 에서 나눠서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따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원조규모를 줄이지 않았음. 반면에 독일국민들에게 범세계적인 문제 해결과 독일에서 당시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 이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원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나. 원조 정책

- 독일은 세계 4대 원조대국에 포함됨. 현재 원조액 규모는 \$7.5billion 정도이며, 그중에 1/3은 다자간원조, 그리고 나머지는 양자간 및 채무경감으로 사용됨.
- 독일은 다원적 원조체제를 가지고 있음. 현재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BMZ가 있으며, 그리고 양허성 차관을 집행하는 KfW와 증여를 기술협력을 집행하는 GTZ의 2개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짐. 그리고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훈련시키는 기관으로 CDG, DSE, DAAD, 그리고 독일의 개발관련 직원 및 전문가를 훈련시키는 GDI, 봉사단 관련 단체인 DED, 인적자원 지원기관인 CIM, 투자제공기관인 DEG로 나누어져 있음. 그리고 독일 외무성을 통해 많은 해외주재 대사관을 원조 전진기지가 되고 있음.
- '90년에 들어와 독일은 정책, 우선순위, 및 제도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BMZ는 '96년에 "Concept for Development Policy"를 발표함. 이것은 모든 정부부처 및 원조 관련 조직의 원조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으로 사용됨.
- 여기에서 개발협력의 철학과 '90년 이후 국제 환경의 변화후 독일의 원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특히 지속적개발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개도국의 정치 및 경제적 조건의 발전을 원조의 중심적인 요소로 인정하였고,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의기준으로 5개 기준치를 설정함.
- 3개의 원조 우선분야로 "Poverty Alleviation based on Participation and Self-help,"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정함.
- 원조의 규모, 방향 및 경험적인 면에서 독일은 타 회원국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다음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 원조과정에 참여하는 조직이 많고,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방식은 수원국 중심의 분야별 원조 프로그램 추진과 잘 조화되지 못함.
- '90년 이후 독일의 원조규모는 계속 감소되고 있음. 물론 원조 규모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규정에 의해 모든 다른 공공 예산의 삭감 비율로 감소됨. ODA/GNP는 '90년에 0.42%에서 '97년에 0.28%로 감소됨.

이것은 EC 에의 분담금의 증가로 타격을 받음. 특히 양자간 원조 및 UN 의 분담금에 많은 영향을 줌.

다. 독일 원조기관들의 재조정

- 일반적으로 DAC 의 회원국들은 대체로 원조정책은 외무성에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정책 및 집행이 외무성에서 행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독일은 이와같은 모델이 아니고 정책 및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조직인 BMZ 를 가지고 있음. 이는 정부부처간에 정책간의 마찰 발생요인으로 작용함. 그러나 이제 점차 원조규모가 감소되고, 원조관리 형태가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과연 이와같은 조직설정이 이상적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집행기관의 분권화: GTZ 는 수원국 주재 지역담당 책임자에게 프로그램, 관리, 조달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함. 이것은 GTZ 가 자신들의 필요나 절차를 중시하는 관행에서 이제는 수원국 중심, 서비스중심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KfW 도 처음으로 수원국에 자신들의 해외지역 사무소를 설치함. 이 사무소는 현재 GTZ 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기관간의 협조 및 시너지 효과를 달성케 함. 현재 GTZ 와 KfW 는 150 개의 합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양 기관간의 정기적으로 위원간의 회의가 개최됨.

다. KfW 의 변화된 모습

- '90 년이후 KfW 는 분야별 정책대화를 포함하여 분야별 접근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 그리고 그 분야도 과거의 상업적 인프라인 에너지, 동력에서 이제는 사회 인프라인 환경, 식수, 보건, 교육로 바꿈. 이것은 '92 년에 발효된 "Helsinki Package"의 영향임. 그리고 KfW 는 BMZ 의 권고에 따라 빈곤 및 여성개발을 프로젝트의 선정과 고안과정에 접합시키고 있음.

라. 평가

- BMZ 는 최근에 평가기능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를 실시함. 즉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에의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에 독일 원조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주제별 평가로 바꾸었기 때문임.
- 그러나 집행기관들은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를 계속 실시함. 이를 통해 독일 원조가 좀더 결과 중심으로 이동할수 있음.
- BMZ 는 DAC 의 평가지침에 입각하여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범위를

조정함. KfW 와 GTZ 는 외부 평가자를 보유하고 있음.

마. **BMZ** 의 내부 감독

- BMZ 는 자체적으로 내부 타스크포스를 지님. 이를 통해 내부의 기능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결과자료는 경제협력/개발부에 제출됨. 이는 BMZ 가 원조예산이 점점 감소되는 시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여기에는 BMZ 가 새로 변화하는 환경하에서 세부적인 프로젝트 까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BMZ 의 역할도 좀더 전략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또한 원조수원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독일과 수원국의 우선순위에 일치하고, 영향을 고려하며,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정해진 구조에 따라 EU 의 프로그램을 감시하는데 관여하며, 그리고 독일내의 원조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함.

바. 독일 수도의 베를린 이전

- 수도의 베를린 이전결정에도 불구하고 BMZ 는 본에 잔류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향후 베를린에 거주할 외무성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사. **NGO** 와의 관계

- 좀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MZ 는 NGO 의 협의체 구성을 지지함. 현재 독일은 VENRO 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 이와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됨. 즉 BMZ 가 일체의 집행과정에서 떠나 정책결정을 하게될 경우 과연 정책대화나 수원국의 책임의식을 증가할수 있느냐 하는것임. 현재 BMZ 는 거의 해외주재관이 없으며, 반면에 해외주재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GTZ 는 수원국과의 대화과정에서 얼마나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무성 직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원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음.
- 현재 독일의 원조체제에서 향상된 의견조정이나 협의를 할수 있는 수단으로는 BMZ 가 작성하는 “Country Concept Paper”임. 문제점으로는 각 수원국의 목표 및 전략을 해결하기 위한 독일의 각 원조기관의 역할을 잘 정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임. 반면에 독일의 외무성도 이와 비슷한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만듦. 이는 BMZ 가 만드는 보고서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아. 독일의 주요 원조분야: 빈곤, 성 및 개발목적의 긴급구조

- '92년의 리오선언이후 독일은 지속적 개발이 원조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고, 양자간 원조의 30%를 환경분야에 투입함.
- 빈곤완화는 지난 30년 동안 독일원조의 기본 분야였음. 그리고 여성개발도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음. BMZ는 모든 프로젝트의 선정과 수립과정에 이 두 주제가 고려될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함. 그리고 GTZ는 '90년 이후 이 두제에 대해 개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빈곤완화와 성의 평등에 관한 관리를 위한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KfW는 이 주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독일은 개도국의 정치적안정 및 분쟁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경주함.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난민 문제가 독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독일의 정치단체가 개도국의 정치체제의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독일의 인도적인 원조는 독일 외무성에 의해 주재되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 정책은 현장에 있는 NGO에 의해 수립됨.

자. 원조액, 국민들의 지지 및 개발관련 교육

- 독일의 원조액 감소는 본질적으로 독일의 통일 및 마스트리히기준에 의한 예산억제의 결과임. 현재 독일은 구 동구 및 중앙유럽, 구 소련에 대한 제일의 원조 공여국 임.
- 이와같은 원조액 증액의 어려움 때문에 KfW는 기존에 빌려준 양허성 차관의 원금 및 이자금이 본국으로 환원되었을 때 이를 다시 양허성 차관자금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며, 의회의 개발협력 위원회 활동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음.
- 현재 독일은 구 봉사자들을 개발협력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함.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민들의 대국민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참고: “Basic Principles of Development Policy of the Federal Government”(’86)

“ The aim of the German development policy i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f the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provide scope for their creative growth. It therefore helps meet the basic needs of the people and enable them to help themselves.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viable economy and social diversity as the prerequisite for the country’s self-sufficient development. And it promotes regional cooperation and facilitates the integ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to the

world economy”

- “Guiding Principles for Bilateral Financ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84)—updated in ’96.

참고: “Development Policy Concept”

- 독일원조의 주요 집중분야
 - Poverty Alleviati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 Education and Training
 - 피난민의 독일유입, 분쟁방지 및 긴급원조
- 독일은 현재 원조액이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원조의 경제적인 이익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함.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원조가 독일의 경제발전과 고용증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98 년 말에 발간할 예정.

참고: 독일의 원조제공시 5 대 조건

- Respect for human rights;
- Population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s
- The Rule of Law
- Introduction of a Social Market Economy; and
- The Development Commitment of the Partner Government

차. 독일원조의 국별원조계획

- 국별 개념은 ’92 년에 도입됨. BMZ 는 이를 모든 독일의 개발 협력의 기획과 조정의 중심 관리 도구로 사용함. 현재 50 국 이상에 국별원조 계획이 존재함. 이 개념에는 중.장기 우선순위, 그리고 수원국과의 향후 목표를 명기함. 이것은 또한 수원국과의 매년 및 2 년마다의 정책대화의 기초로 사용됨. 이것은 독일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화 하기 위한 것임.
- 이 보고서는 BMZ 에 의해 준비됨. 이는 해외주재 대사관에서의 정기적 보고서, KfW 에서의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국가의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작성됨. 또한 NGO,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로 부터의 제안도 고려됨.

- 이를 완결한후 KfW, GTZ, 외무성, 타 정부부처, NGO 들이 BMZ 에서 개최되는 “country discussion”에 참석하여 보고서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및 향후 협력을 위한 제안을 개진함.
-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이것은 공식적인 재정 및 기술협력의 기준이 됨. 이를 통해 관련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기본자료가 되며, 프로젝트의 선택 및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정의 기초로 활용됨. BMZ 내의 지역부서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실천해야함.
- 이 보고서의 문제점으로는 수원국과의 합동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관련 수원국은 양국간 정책대화시 비공식적으로 알려줌.

9. 아일랜드(Ireland)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기본욕구충족
 -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달성
- 2) 원조기관
 -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DCD)
 - 본부인원: 45 명, 해외사무소: 6 개
-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1.78 bil. \$ (GNP 대비 0.3%) (양자:다자 58:42) ('96 년)
 - 중점수원국:
 - 아프리카지역: Lesotho, Tanzania, Zambia, Sudan, Ethiopia, Ugand
 - 중점협력분야:
 - 인적자원개발 분야
 - 교육 분야
 - 기본욕구분야
 - 원조특징

기초로 작성됨. 또한 NGO, 국제기구 및 민간분야로 부터의 제안도 고려됨.

- 이를 완결한후 KfW, GTZ, 외무성, 타 정부부처, NGO 들이 BMZ 에서 개최되는 “country discussion”에 참석하여 보고서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및 향후 협력을 위한 제안을 개진함.
- 이 보고서가 확정되면 이것은 공식적인 재정 및 기술협력의 기준이 됨. 이를 통해 관련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기본자료가 되며, 프로젝트의 선택 및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조정의 기초로 활용됨. BMZ 내의 지역부서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실천해야함.
- 이 보고서의 문제점으로는 수원국과의 합동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관련 수원국은 양국간 정책대화시 비공식적으로 알려줌.

9. 아일랜드(Ireland)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기본욕구충족
 -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달성
- 2) 원조기관
 -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DCD)
 - 본부인원: 45 명, 해외사무소: 6 개
-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1.78 bil. \$ (GNP 대비 0.3%) (양자:다자 58:42) ('96 년)
 - 중점수원국:
 - 아프리카지역: Lesotho, Tanzania, Zambia, Sudan, Ethiopia, Ugand
 - 중점협력분야:
 - 인적자원개발 분야
 - 교육 분야
 - 기본욕구분야
- 원조특징

- 다자간협력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APSO(Agency for Personal Service Overseas)를 통해 양자간 협력 사업과 NGO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나. 원조정책

- 최근까지 원조액의 60%이상이 UN, World Bank, EU에의 기부금이었음. 또한 양자간 원조의 반이상이 아프리카에 보낸 전문가나 봉사단원으로 사용됨. ODA/GNP는 '86년 0.28%에서 '92년 0.16%로 감소됨. 그리고 대부분이 증여이며, 타이드 원조가 아님. 그리고 기술원조는 대부분 개도국에게 전문가나 봉사단원을 보내는 것임.
- 그러나 원조개혁의 시작은 “Programme for a Partnership Government”(’93)가 공표될 때였음. 아일랜드정부는 이를 통해 ‘93-97년까지의 원조목표를 설정함. 이에 의거하여 '93년에 “Irish Aid: Consolidation and Growth”가 발표됨.
- 이 계획에서는 '97년까지 ODA/GNP 0.40%로 설정하고, 증가된 원조액은 양자간 원조에 국한 하였으며, 최우선 원조국도 기존의 4개국에서 6개국(모두 아프리카)으로 증가시킴. 봉사단 파견 담당기관인 APSO에의 예산은 많이 증가됨. 그리고 NGO에의 지원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많이 증대시킴. 또한 이 계획에 의해 외무부 장관에게 원조에 관해 조언을 하는 독립된 원조관련 자문기구인 IAAC가 설립됨.
- Strategy Plan은 아직까지 구체화는 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외무부가 백서를 편찬시 구체화 계획을 담을 예정임.
- 아일랜드 원조개혁의 열매는 이미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원조액은 '93년에 31% 증가함. 즉 GNP 대비 0.2%인 \$81million이며, '94년에는 GNP 대비 0.24%로 증대하였음. 예산의 증대와 함께 조직도 강화됨. 즉 직원이 증가되었으며, 새로운 해외사무소가 만들어졌고, 직원들에 대한 재훈련이 강화됨. 그러나 원조관련 통계에 관한 체계는 더욱 발전하여야 할 분야임.
-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Strategy Plan을 잘 실현 하는 것임. 또한 '97년까지의 원조액 증대 계획을 계획대로 잘 실천하는 것임.
- 빠르게 증가하는 원조액에 발맞추어 질적인 측면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왜냐하면 이를 위해 자체 원조기관의 관리능력 및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때문임. 양자간 원조는 일반적으로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관련 분야도 수원국의 빈곤층, 참여적 개발과 개도국의 능력개발에 우선하고 있음. 이를 위해 봉사단과 NGO를 많이 활용함.

- 원조를 담당하는 외무성내의 개발협력국의 직원들은 아주 높은 사기와 그리고 높은 질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확대되는 원조액에 발맞추어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기술, 훈련 및 제도적장치가 따라 주어야함. 이를 위해 원조평가에 대한 환류장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수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야함.
- 아일랜드는 원조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 주재 대사관에 원조관련 전문가와 직업외교관을 함께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함.
- 아일랜드의 대아프리카 원조활동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특히 양자간 원조중 농촌발전, 식량안보, 공공행정 및 보건분야는 수원국의 우선 순위분야와 일치함. 그러나 원조액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별수준에서의 원조실시, 정책대화의 강조, 그리고 국별원조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최근의 프로젝트의 사후평가 및 레소토에 대한 국별원조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양자간원조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즉 농촌지역에서 빈곤완화, 그리고 인구억제관련 분야임.
- 전통적으로 가난과 기아를 경험한 아일랜드는 좀더 부유한 계층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 기독교적인 가치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 아일랜드의 집중분야로는 교육, 훈련이나 조언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임.
- APSO는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봉사단을 양자간 원조의 집행업무나 NGO 관련 사업에 파견함. 현재 파견수는 2000명 수준임. 그러나 이와 같이 늘어나는 단원의 질적인 측면을 유지하기위해 철저한 심사하는 과정이 요구됨. 그리고 현재 4000명의 선교사중 절반이 실제로 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함.

참고: “Programme for a Partnership Government”(1993-1997)의 내용

- '93년에 ODA/GNP를 0.2%로 증대하고, 매년마다 0.05%를 증가하여 UN의 목표인 0.7%를 달성하고자함. '97년까지는 타 EC국가와 동등한 비율로 높일 예정임.
- 원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APSO의 파견인원을 대폭 확대함. APSO는 현재 400명을 파견함. 그러나 '97년 까지 2000명으로 확대. 그리고 APSO는 파견된 봉사단원들의 기여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 현재의 4국의 최우선 원조국가(Sudan, Tanzania, Lesotho, Zambia)에다 2개 국가를 추가함.
 - 소말리아에는 정치적 안정이 달성된후 중.장기적인 원조가 가능함.

- 아일랜드는 적절한 재활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92년에 리오회담에서 채택된 환경보호관련 분야에의 원조실시.
- 현재의 UNICEP, UNDP, UNHCR 과 같은 기관에의 원조액은 경미하기 때문에 향후 증대할 것임.
- Concern, Trocaire , the Red Cross 와 같은 NGO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그리고 협조유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NGO 의 역할을 ODA 실시에 강화 할것임.
-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 지원이 되지못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 이 분야로는 아일랜드의 상품을 포함한 수입지원 프로그램, 개도국의 공공행정 관련 프로그램임.
- 봉사단원의 사회보장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함.

10. 이태리(Italy)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기본욕구를 충족 및 인간생명 보호
 - 개도국의 식량자족달성,
 - 인적자원의 능력고양
 - 환경보호
 - 경제적인 자족달성
 - 여성의 개발참여를 통한 지위향상 달성에 기본적인 목표를 둠.
- 2) 원조담당기관
 - Direct 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eation 외무부내)
 - 본부인원: 530
-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2.4 billion \$ (GNP 대비 0.2%) (양자: 다자 50:50) ('96)
 - 중점수원국:
 - Sub-Saharan Africa: Angola, Eritrea, Ethiopia, Mozambique, Somalia, Tanzania
 - Europe/Arab State: Albania, Algeria, Egypt, Morocco, Tunisia

-Latin America/Caribbean: Argentina, Bolivia, Chile, Colombia, Peru

-Asia: China, Philippine,

○ 중점지원분야: Italy 정부의 비교우위 5개분야

-농업분야

-보건분야

-상품원조분야

-과학 및 기술전수분야

-교육 및 훈련분야

○ 원조특징:

-People-to-People 전략에 따라 정부대 정부의 원조보다는 이태리의 20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원조 및 NGO 와의 원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

-자국의 원조효과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을 완화시키기위해 DGIS 는 국별원조계획, Project Management Cycle, 그리고 체계적인 원조평가 체제구축을 도입하고 있음.

나. 원조 정책

○ '90 년초 이태리는 정치상황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 즉 이태리의 각 분야에서 개혁작업 및 부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 또한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도 평강히 낮을 때였음.

○ '90 년초 이태리 원조의 우선순위는 분쟁해결과 지역중심의 사회프로그램 분야였음.

○ '90 년 후반기 이태리 원조의 나아갈 방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DAC 회의에서 지적됨.

-국별원조계획의 도입, 조달과정에서 경쟁요소 도입, 체계적 프로젝트 평가 및 프로젝트 사이클 관리 도입, 평가능력의 도입 및 해외 주재 사무소의 강화

-민간분야의 발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시하는 능력배양

-직원수준과 재훈련의 강조

-NGO 의 국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존도를 경감

다. 실시된 개혁 및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인식 변화

○ 이태리정부는 현재 외무성의 원조담당 조직인 DGCS 의 강한 지도력아래 DAC 원조심사시('93) 요구한 여러가지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실시중임. 특히 프로젝트에 관한 원칙이 엄격히 적용

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제안들은 종합적인 점검표에 의해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음. 비 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을 시작하였으며, 계약상의 의무조건내에서 가능한한 능률적으로 탈바꿈함.

- 평가활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요구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평가활동이 잘 진행될 예정임. 그리고 민간분야의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이 도입되었음.
- 직원충원이나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진함. DGCS의 조직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국별원조계획 수립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수원국의 경제, 사회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임.
- '93년 이후 NGO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많이 감소됨. NGO들은 지방자치단체나 EU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함. 현재 많은 이탈리아의 지방단체가 원조에 참여하고 있음. 이탈리아 정당이나 국민들은 아직까지 원조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개혁의 과정후 국민들로부터 어느정도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

라. 주요 원조 활동의 급격한 감소: 부채탕감의 중요성

- 이탈리아의 원조규모는 '80년대 신장하였지만 '90년대에는 급격히 감소됨. 이는 원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졌고, 공공 예산의 증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원조규모의 감소로 양자간 증여와 차관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다자간 원조는 담당 비율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상황임.
- 현재 원조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예전에 상업적인 목표로 빌려준 양허성 차관의 재조정에 의한 것임. '94년 ODA/GNP는 0.27%임. 그러나 이중 부채탕감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0.18%임.

마. 이탈리아 원조의 장점

- 이탈리아의 원조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서는 시민단체의 원조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수 있음. 또한 수원국 경제발전에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들수 있음.
- 이탈리아 원조는 경제, 환경, 사회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간연대, 자주 의식, 그리고 지속적 개발을 중시함.

바. 이탈리아 원조의 주요 특징

- 지역, 지방도시, 그리고 NGO들은 수원국의 개발, 구원, 그리고 재개발 노력에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구가 잘 발달 되어있음.

- 수원국레벨에서 이태리는 ODA 가 어떻게 그 지역의 경제.사회조건을 향상시킬수 있는지, 제도적 능력개발, 그리고 성의 평등에 관해서 효율적인 사회개발 전략을 개발하였음. 중미의 피난민들의 재통합를 촉진시키게 하는 이태리의 노력은 이와같은 분야에서는 이상적인 모델임.
- 특히 다자간 기구와 평화구축 프로그램, 그리고 World Bank 와의 협력이 잘 되고 있음
- 좀더 공개되고 경쟁적인 요소가 가미된 조달과정이 도입됨. 대부분 수원국 정부가 입찰과정을 진행함. 대부분의 원조가 타이드가 아님.
- 민간분야의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이 양자간 원조의 1/4 이상을 차지함. 이는 이태리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원국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듦. 이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단순한 장비의 효율적인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시장 지원, 그리고 지식을 이전하는 것임.

사. 향후 나아갈 방향

- 조직구조와 인력구조에 관한 개혁작업을 통하여 국별원조계획, 정책분석, 프로젝트 원칙 및 평가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개혁작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다년간 원조를 제공할수 있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토록기존의 예산항목을 변경해야함.
- 결과 및 재정적 일치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양하기위해 행정절차를 바꾸어야함.
- 특히 다자간 개발 은행에의 출자금을 포함하여 부처내 원조조정을 강화해야함.
- 지역, 지방도시, NGO, 민간기구와의 광범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기구를 강화
- 외교정책의 목표, 향상된 개발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원조사용에 상응하는 양자간 원조에대한 비율을 증대

참고: 이태리의 원조관련 법(Law No. 49 of 1987)

1.개발협력의 목적

“Development cooperation is an integral part of Italian foreign policy and pursues the ideals of solidarity among peoples, seeking the fulfillment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anctioned by the United Nations and EEC-ACP

convention.”

2. 구체적 목표(Specific Aim)

- satisfying basic needs
- safeguarding human life
- encouraging food self-sufficiency
- enhancing human resources
- environmental conservation
- promoting self-relia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참고: “Guidelines for a new policy on development cooperation”(’95)

1. 총괄

-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정책의 진전
-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행
- 이태리의 국제관계 및 현 예산의 진행
- 모든 개발협력 관련 기본원칙을 받아들임.
- 가능한한 이태리의 재정이 허락하는한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

2. 이태리 개발 협력의 목표

- 이태리의 개발협력은 원조형태에 상관없이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정치적 고려
 - 주요한 산업국의 하나로써 빈국에대한 원조노력에의 참여를 확인
 - 이태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가의 안정을 강화
 - 전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범세계적이슈의 해결에 기여함.
- 경제적 고려
 - 개도국민들의 이민의 주요한 원인인 빈곤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
 -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위한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함.
 - WTO 체제에서 수원국의 경제구조가 시장구조로의 변혁을 지원
- 인도적 고려
 - 국제적인 자연 및 인재에 의한 참사에 도움을 줌

3. 지역적 배분 우선지역 및 국가

*최우선 지원 국가군

- Eastern Mediterranean
- Western Mediterranean & Albania
- Former Yugoslavia
- Horn of Africa & Southern Africa(SADC area)

*우선 지원국가군

- Latin America
- Asia

4.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분야에의 참여

- 국제적 환경보호
- 세계 인구문제
- 마약퇴치 및 조직적 범죄
- 기초교육분야
- 여성개발
- AIDS 방지
- 개도국의 지역통합 및 개발교육 분야

5. 세부 추진 분야: 위에 언급한 분야는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를 통해 달성

- 긴급원조
- 식량원조
- 인적자원개발
- 민간기업 발전
- 인권보호 및 민주과정의 발전
- 제도구축
- 직업훈련 및 기술원조
- 개도국의 문화적 전통의 지속
- 개도국의 천연자원 보호
- 국제수지 지원
- 사회인프라

6. 원조수단

- 증여
- 직접관리
- Multi-bilateral contribution
- 자선기부

- 양허성차관
- Mixed Credit
- Funding of the Joint venture's Italian risk capital in developing countries
- NGO
- 봉사단파견

7. 국내.외 원조 관련기관과의 협조

- 민간기업
- 은행
- 국내.외 대학
- 국내.외 NGO

8. 이태리와 EU

- EU와의 보완원칙 및 마스트리히 조약에 의한 타 국가와의 협동
- 특히 EU 회원국과는 원조조정, EU 기구에서의 참여 및 협조유자에 관한 제도적 합의 실시

9.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4 원칙: 조정, 참여, 협동, 지원

10. NGO와의 협력

- 국내.외 NGO에 지원, 및 최우선 지원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에 지원
- 지원조건으로는 NGO의 기본요건, 자체 재정능력 및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
- NGO와의 협의를 통해 원조관련 국제적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NGO의 국민에 대한 개발협력 관련 정보제공 활동을 지원

11. 수원국 시장 및 민간 기업의 발전

-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및 제도적 틀을 완비하는데 도움제공
- 시장경제를 달성할수 있도록 수원국 공적기관과의 제도구축
- 수원국 민간기업에게 적절한 기술제공
- 개도국에 외국자본, 특히 이태리자본이 투자될수 있도록 격려
- 재정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수원국의 민간기업에 재정적 지원제공

12.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이니시티브(국별원조계획 및 Reference Framework) 선택
- 이니시티브 집행
- 통제: 평가활동의 강화

11. 일본(Japan)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환경보호 및 발전추구
- ODA 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
- 원조와 개도국의 군비,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무기수출과의 연계
- 개도국의 민주화, 인권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2) 원조기관

- 무상원조기관: JICA(본부인원:813, 해외 297)(해외사무소: 52 개)
- 유상원조기관: OECF(본부: 248, 해외: 49)(해외사무소: 16 개)
- 외무성: (본부: 165, 해외: 240)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9.44 billion \$ (GNP 대비 0.2%) (양자: 다자비율 72:28) ('96)
- 중점국가: 아시아지역이 중심임 (양자간원조의 65% 배분).
 - 10 대 원조수원국중 6 개의 아시아지역 국가 포함(Indonesia, China, Philippine, Thailand, Malaysia, Sri Lanka)
- 중점지원분야:
 - 경제구조조정분야:
 - 인구분야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 사회간접자본분야
 - 환경분야
- 원조특징:
 - 원조를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활용됨. 즉 일단계로 무상원조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기본육구를 충족, 둘째로 무상과 유상원조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인프라의 건설 및 마지막 단계

- 로 일본민간기업의 시장진출 및 투자여건 조성.
- 일본헌법상 외국에 군대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음.
- 다른 서방국가들과 비교할 때 NGO의 역할이 미약함.
- ODA를 담당하는 인원이 비교적 작음으로 인해 원조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나. 일본 원조의 변혁

- 일본의 원조는 변혁의 와중에 있음. 특히 일본의 원조는 외교정책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임.
- 일본은 '92년에 원조대강을 발표함. 그리고 수원국의 자조노력과 선정을 조화시키려 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인구 및 AIDS와 같은 범 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은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같은 분야에 국제 원조 조정을 이끌고 있음.

다. ODA 현상 및 중.장기 목표

- 원조는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 '94년에 원조액이 \$13.2 billion으로 1위를 차지함.
- 일본의 원조는 40년의 역사를 지님. 특히 '54년 콜롬보계획의 참여로부터 계속됨. 그리고 '94년 ODA/GNP는 0.29%으로 약간 향상됨.
- 일본의 원조대강은 '78년 일본이 원조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조치임. 여기에서 일본은 ODA의 4대 원칙을 발표함.
 - 환경보호와 개발을 추구
 - ODA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회피
 - 수원국의 군사비, 대량파괴 무기의 생산 및 무기수출에 주위를 기울임.
 - 수원국의 민주화, 인권 및 시장경제로의 변화에의 진전에 주위를 기울임.
- 또한 원조대강은 일본이 수원국의 자조노력에 중요한 무게를 두며, 그리고 ASEAN 지역에 원조의 집중화를 둠.
- 그리고 제 5차 원조 중.장기계획 기간('93-97)에 \$70-75 billion을 투입함. 이를 통해 ODA/GNP를 높이며, 그리고 LLDC에 많은 증여를 배정할 것을 나타냄.
- 일본은 전통적으로 증여보다 양허성 차관중심으로 원조를 배분하고 있으며, 증여율도 회원국중에서 가장 낮은 79%('93년)를 기록함.

- '94년에는 일본인들의 원조공여에 대한 인식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95년 고베지진사건이후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정부는 개발협력에 대한 교육, NGO나 원조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함.

라. 정책형성, 조직 및 직원

- 일본원조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 증여
 - 양허성 차관
 - 기술협력
- 증여와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은 외무성에서 먼저 수립됨. 반면 loan에 관한 결정은 4개 정부부처, 즉 MOFA, MOF, MITI, EPA의 협의에 의해 결정. 또한 17개의 다른 부처도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외무성은 무상원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원칙적으로 집행을 책임짐. JICA는 외무성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원조에 관한 기초 타당성연구, 및 증여를 집행하며, 사후관리, 기술원조도 담당함.
- 차관 프로그램의 집행은 OECF가 함. 그러나 국제 금융 기관에의 출자는 재무성이 담당하며, 외무성은 UN 분담금을 책임짐.
- DAC 원조심사시('93년) 원조 담당 직원의 숫자가 ODA 대비 가장 적다는 것이 지적됨. 그러나 향후 일본이 원조업무를 사회개발과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유도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직원이 충원되어야하며, 범세계적인 이슈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을 위해서는 이들 분야관련 전문가들이 특채되어야함.

마. 해외주재 사무소 및 국별 원조계획

- 일본의 원조 프로그램은 모든 권한이 본부에 집중된 정책 결정 구조를 지님. 현재 원조관련 해외 사무소로는 일본 외무성의 해외협력관련 조직에다 16개의 OECF, 52개의 JICA 사무소 그리고 일본 봉사단원을 관리하는 JOCV 사무소를 들수있음. 그러나 일본의 원조액과 프로그램의 규모에 비해 해외 주재 사무소의 직원은 아주 적은 편임. 일본의 원조가 실제로 수원국이 요구하는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외주재 사무소 및 직원이 증원되어야함.
- 일본은 현재 수원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함. 프로그램은 해외에 파견된 각 기관의 해외주재 사무소에서 실시됨. 또한 4-5년 마다 정기적인 수원국과의 고위급 정책대화가 개최되고, 이를 통해 관련 국가에 대한 주요한 원조관련 전략 방향이

결정됨.

- '93년부터 일본은 주요 원조국가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집행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내각에 제출. 이에 기초하여 일본은 최 우선 원조국가에 대한 국별 원조계획이 수립되며, 현재까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JICA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기술협력에 관한 원조의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 부처간의 기술협력 관련 프로그램이나 조정의 강화가 요구됨.

바. OECF-JEXIM 합병

- 원조 조직관련 변화로는 '95년 내각의 결정에 의해 OECF와 JEXIM 간의 합병임. 이는 '99년에 완결될 예정임. 일본 정부로는 이와같은 합병을 통해 양 기관의 업무중 ODA 업무와 비 ODA 업무를 구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일본은 양 기관의 합병에 관한 진행을 OECD에 통보.

사. 원조의 지역별 및 분야별 구조

- 일본 원조의 주요 원조 수원국으로는 아시아, 중국 및 인도네시아임, 필리핀, 인디아 그리고 태국으로 양자간 원조의 53%가 사용됨. ('93/'94년). 아시아는 양자간 원조의 65%를 받음. 그리고 주요 원조 분야로는 경제인프라, 특히 교통, 에너지분야이고 대부분의 사업이 차관으로 행하여짐.

아. 평가, 효율성 및 사후관리

- 평가는 최근에 주요한 분야로 등장. 외무성의 평가과는 평가에 관한 정책, 결과 및 외무성의 평가 프로그램, 즉 매년 50개국, 140 프로젝트건을 관리함. 외무성외에, JICA, OECF와 타 정부부처도 평가활동을 실시함. '82년부터 외무성은 매년마다 정기보고서를 발간함. 여기에는 경제발전 정책에 적합한 원조 프로젝트의 실시의 중요성, 기술적 자원, 수원국의 발전수준, 남남협력의 중요성, 수원국에서 행하여진 정책 변화의 준비, 기초타당성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프로젝트의 준비에 있어서 경상비의 필요성등 여러 사항을 담고 있음.
- 타 회원국에 비해 일본의 사후관리제도는 일본 원조의 장점이라 할수 있음. JICA는 “사후관리”, OECF는 “Special Assistance for Projects Sustainability”(SAPS)라는 체제를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해 일본은 평가시 제기된 문제나 특별한 이슈에 관한 치유를 할수 있음.

자. 국제적 역할

- 일본은 국제적으로 원조의 조정에 관한 선두 역할을 수행함. '93 년에 일본은 제 1 차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회의를 주재함. 뿐만 아니라 몽골 원조 공여국 회의,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의 종합적 개발포럼을 선도하고 있음. 그리고 현재 일본은 North-South 협력을 바탕으로 South-South 협력에 매진하고 있음. 이 개념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수원국이 그들보다 뒤떨어진 다른 수원국을 돕게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면 일본은 한국이나 태국이 타 수원국에게 기술협력을 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

차. 인구 및 AIDS

- 일본은 UNFPA, IPPF 에 제일 많이 기부금을 내고 있음. 그러나 양자간 원조에서는 이 분야에 다른 회원국보다 지원이 적은 수준임. 지난번 심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에게 이 분야에 더욱 많은 지원을 요구함. 그러나 이를 위해 더 많은 경험과 전문가가 필요함.

카. 환경

- 리오회의후 일본은 환경보호에 많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해 일본은 각 수원국에게 이 주제에 관한 정책대화 관련 팀을 보냄

타. NGOs

- 역사적으로 일본의 NGO 는 타 회원국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역할을 수행함. 그러나 현재 일본은 수원국의 NGO 프로젝트를 위한 증여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빈곤층을 위한 증여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NGO 와의 협조 프로그램을 증대하고 있음. '94 년에 외무성은 NGO 지원과를 신설함. 그러나 NGO 의 등록등 절차상의 복잡성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파. 성의 평등

- 일본은 '95 년 북경에서 개최된 여성관련 회의에서 이 과제 관련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향후 이에 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리라 예상됨. 그러나 원조담당 직원들의 동 주제에 관한 지식함양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배려가 필요함.

참고: 일본의 주요국별 원조 프로그램의 수립과정

- 일반적으로 양국간의 고위급회의, 매년 증여 및 기술협력에 관한 정기적 정책대화, 그리고 차관제공을 위한 사절단의 활동을 통해 행하여짐
- 대개 사절단은 전략적으로 최우선 지원국가에 보내짐. 주요한 프로젝트는 사절단이 파견되기전 이미 선택을 함.
- 선택과정을 통해 일본은 대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함.
- JICA 보고서, OECF 보고서, 해외주재 대사관의 직원의 활동, 사절단의 대수원국 정책대화를 통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함.
- 특히 ODA 현장의 목표와 일치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기위해 일본은 최선을 다함.

파. 원조의 질을 높이기위한 조치

- 원조관리 및 평가체제의 구축
- 프로젝트 분석과 사이클이 강화됨
- 직원들의 재훈련강화
- 경제적 상황 및 환경에 관한 고려가 첨가됨
- 능률성, 투명성, ODA 관련 프로젝트의 조달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됨.
-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도입됨.

참고: South-South Cooperation

- **Third Country Training Programme:** a “third country” can offer facilities to train personnel of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transfer lectures and subsidising part of the expenditure. One of the benefits of this programme is that participants can usually stay in the same region with similar social and cultural life as their own and learn the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eir own country.
- **Triangular Cooperation:** This arrangement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to promote the resettlement of Cambodian refugees who have returned home. Experts from Indonesia, Malaysia, the Phillippine, Thailand and Japan are taking part along with JOCV to consolidat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promote rural development.

참고: 일본의 대 NGO 관련 내용

- Non-profit foundation subsidy
- Subsidy system for NGO projects: half of the project cost be funded
- Grant assistance for grassroots projects, mainly unde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MOFA missions.(Upto Y 10 million per project for activities)

참고: 일본이 21 세기를 맞이하여 원조개혁을 위해 실시한 “Council on ODA Reforms for the 21st Century”에서 일본 외무성에게 제출한 보고서 내용

1. 서론

- ODA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 냉전후 범세계화와 시장경제에의 전환
 - 개도국내에 빈곤과 지역간 불평등
 - 환경문제의 심화
 - 선진국내의 원조에 대한 피곤현상 증대
- 예산의 우선화 및 능률중심의 배분
 - 서로 다른 원조수단간의 향상된 능률성 및 일관성 유지
 - 3 대 수준 즉 새로운 원조공여국, 민간투자자, 그리고 시민 및 지역주민과의 확대된 협력

2. 권고안

- 가. 일관적이며 체계적인 원조정책 및 국별 원조프로그램
- 국별원조정책을 강화. 구체적인 국별 원조프로그램을 형성
 - 원조관련 기관과 직원간의 정보 및 연구물의 공유
 - 다자간원조기관과의 밀접한 정책대화를 추구하며 직원들의 교환을 강화.
또한 다른 원조공여국 및 기관과의 좀더 나은 원조조정을 실시
 - 지역에 넓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

나. 수원국의 강점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수요를 잘 반영하는 원조실시

- 수원국의 원조인프라(대사관, 원조기관의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향상
- 해외사무소 직원들에게 좀더 정책결정권 및 재량권을 제공
- 외국의 노동자나 전문가를 활용
- 새로운 형태의 원조를 개발
- 원조전문가의 질을 높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다. 실시체제의 향상

- 원조기관의 조직개편추진
- 원조기관의 직원들이 수원국에 관한 전문가로 채워져야함
- 프로젝트의 형성과 실시를 책임지는 제도적 구분의 역할공유기능을 명확히하고 향상시킴

라. 일본의 장점과 일본의 경험을 잘 이용하는 원조실시

- 수원국의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 정책형성을 위한 포럼을 통해 공동 정책형성을 위한 체제를 수립
- 엔차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
- 원조에 더 이상 의존하지않는 국가와의 새로운 동반자의식을 추구
- 원조를 사회분야관련 프로젝트로 더 많이 배분함
- 환경문제를 원조의 가장 최우선분야로 지정
- 정책형성에 강점을 가진 전문가의 지원체제를 구축. 직원들의 재훈련강조.
- 개발과 관련된 일본의 경험을 체계화. 이를 개도국과 공유함

마. 남남협력의 강화

- 남남협력관련 지원을 강화
- 남남협력에 관심을 가진 다른 국가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포럼을 개최
- 개발관련 연구기관과 아시아지역내 선발개도국의 연구기관간의 연계 체제구축
- JICA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남협력의 지원을 강화

바. 강력한 조사, 감사, 평가 및 사후조치

- 원조 프로젝트 전후의 조사, 감사, 평가 및 사후조치에 예산배정에서 우선순위 부여
-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에서 조정업무를 강화
- 프로젝트의 평가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확보. 향후의 발전을 위해 평가자료의 환류를 잘 수행함
- 프로젝트이 감시나 사후조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부여

사. 정보공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개발교육

- 원조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함
- 대국민 홍보활동에 대한 원조관련 직원들의 재훈련실시
- 국민여론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문, TV, 및

- 타언론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
-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자체차원에서도 실시
- 수원국에서의 대국민 홍보활동을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추구
- 개발교육관련 모든 정부부처는 이것이 초등 및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경주

아. 국민의 참여

- 모든 원조의 과정에 NGO 와 함께 협조함.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에의 참여를 지원또한 지자체 시민들의 원조사업에의 참여를 조장함.
- 프로젝트의 실시과정에 민간분야와 조정작업을 실시
- 질적으로 높은수준의 인적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개입찰을 도입
- 공.민간분야에서 국제협력에 관한 의견이나 견해를 공유하기위한 포럼을 확대

자. 직원 재훈련

-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확대키위해 기존의 직원 재훈련 기관과 업무 제휴
- 다자간 기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킴
-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의 참여기회를 확대.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대학의 설립을 지원
- 개도국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적자원의 재훈련에 많은 원조예산을 배분(투자)함.

12. 네델란드(Netherland)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발전의 기본요건으로 민주주의, 자유 및 인권보호
- 환경 지속발전
- 세계경제질서의 강화와 개혁
- 개도국의 경제자족을 강화하여 빈곤에 대한 투쟁실시
- 여성의 자주권강화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강화

2) 무상원조기관: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부인원:540)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3.3 billion \$ (GNP 대비 0.83%) ('96 년)(양자: 다자비율 70:30)

○ 중점국가: 다음과 같이 4 개군으로 나누어 원조액을 배분함

-중점대상국: 아시아지역 6 개국

-나일 및 홍해지역: 3 국.

-남아프리카: 3 개국

-Sahel 지역: 7 개국

-동아프리카: 4 개국

-중미: 6 개국

-안데스지역: 3 개국

-기타: 3 개국

-지속발전협약체결국가: 3 개국

-분쟁발생지역: 3 개국

-과도국가: 17 개국

○ 중점지원분야:

-경제구조조정분야:

-인구분야 및 인적자원개발분야

-사회간접자본분야

-환경분야

○ 원조특징:

-최근에 원조조직을 재편하여, 자국의 대사관에게 많은 원조재량권을 이양하였음.

나. 원조정책

○ 네델란드는 원조액이나 노력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원조국중의 하나임. 특히 원조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원조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능력 면에서는 다른 기관을 선도함.

○ 이를 기초로 최근에 원조의 관리나 내용면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음.

○ '94/95 년에 신정부는 자국의 외교정책(원조정책포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행됨. 그 결론이 "The Foreign Policy of the Netherland: A Review" 라는 보고서이며, 이는 '95 년 의회에서 승인되었음. 여기에는 자국의 원조의 기본목표를 빈곤완화와 수원국의 자조노력에 두었음.

- 원조기관의 직재개편의 방향은 수원국과의 동반자의식을 강조하며, 그리고 프로젝트원조에서 프로그램원조로의 이행을 하기위한 것임.
-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키위해 8 개의 주요 정책분야를 강조함.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은 외무성내의 DGIS(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다른 국에서 수립됨.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원조액은 '97 년의 경우 2/3 을 차지하며, 이는 DGIS 의 관할임. 이 분야중 사회 개발분야가 가장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인도적원조, 농업, 교육, 환경, 경제 및 민간분야발전, 거시경제프로그램 원조, 그리고 인권 및 분쟁방지 분야가 그 뒤를 따름.
- '97 년에는 BHN, 최빈국가, 모자보건, 환경, 열대림에 대한 원조액의 목표가 정해짐.

다. 원조관리

- 네델란드는 원조조직을 개편하였음. 그 주요한 방향으로서는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사무소에서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는 것임. 특히 해외주재 대사관은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책임짐.
- 원조관련 정부부처내의 원조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외무성내의 DGRB(Director General for Bilateral Relations)가 그역할을 담당. 또한 수원국과의 원조의 일관성은 '96 년에 수립된 "Council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REIA)에서 담당함.
- 원조조직의 개편이 어느정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됨. 특히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해외주재 대사관의 역할정립이 요구. 또한 원조관련 기관간의 원조조정이 이전보다 더욱 요구됨.
- 네델란드는 인권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의회에서 압력이 강함.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에는 원조를 중단하고 있음.

라. 원조의 효율성

- 현재 네델란드는 두가지 레벨에서 원조를 평가함. 첫째는 원조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나 분야에 관한 정책 레벨임. 첫번째 것은 일명 "분권화된 평가"라고 불리우며, 현재 외무성의 관련 부서에서 매년 200 개를 평가함. 두번째 것은 프로젝트의 완결후 실시하며 특히 해외주재 대사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함.
- 현재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외무성내의 IOB (the Policy and Operations Evaluation Dept.)임. 이 조직은 원조관리 조직과는 독립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음.
- IOB 는 이전의 원조정책에 많은 비판을 가했으며, 이의 보고서는 '95 년에

제정된 “Foreign Policy Review”에 많이 반영됨.

- IOB는 특히 분권화의 평가와 이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에 관한 평가를 실시함.

마. 원조규모

- '96년에 네덜란드의 원조규모는 \$3.2 billion에 이르며 이는 GNP 대비 0.81%를 차지함. 이중에 양자간 원조의 비율은 70%에 이름. 양자간 원조중 약 40%는 Sahel 지역에 배포됨. 최우선원조국가로는 모잠비크나 탄자니아임. 양자간원조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배포비중은 34%에서 '95년에는 17%로 급격히 감소함.
- '84-'94년의 10년간 원조경향을 살펴보면 이전의 사회인프라, 특히 교육 및 다른 사회서비스에는 29%에서 23%로 감소되었으며, 경제인프라는 15%에서 9%로, 그리고 생산분야에는 19%에서 13%로 줄어듬. 그 반면에 채무경감 및 긴급구호는 많이 증가됨.
- 해외주재 대사관의 역할이 증대된 만큼 직원들의 원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원조액의 불용이 늘어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조담당 부처는 직원들에 대한 재훈련을 강화하며, 특히 원조액의 사용을 위해 신축성을 많이 부여함. 예를 들면, 대사관은 매년 할당된 원조액중에 분야별로 원조액을 재배당할수 있게 되었음.

마. 원조정책 방향의 재정립

- 원조정책을 외교정책의 한분야임을 확인, 그리고 외무성내에 원조담당 조직간의 원조의 일관성을 증진을 추진
- 양자간원조를 지금까지의 지역중심에서 주제별로 방향을 재정립하며, 프로젝트의 원조에서 프로그램 원조로 전환
- 주인의식과 동반자의식에 입각하여 수원국의 경제상황에 적절한 원조정책의 차별화유지
- 수원국과의 동반자의식에 입각하여 수원국정부 및 수혜민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등 인간개발중심의 원조방향 정립
- 평가 및 감시기능의 강화

바. 조정책의 재정립과 조직개편

- 거의 모든 권한을 해외주재 대사관에게 위임함.
- 예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DGIS에게 이양함.

사. 네델란드 원조의 특징

- 이전의 국별원조중심(Country Programming) 중심에서 주제(Thematic-Oriented)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원조를 실시키 위해 많은 권한을 해외주재 사무소에 이양함. 외부성내의 DGRB 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DGIS 에 많은 권한이 옮겨짐.

13.뉴질랜드(New Zealand)

가. 기본개요

1) 원조목표

- 개도국 주민중 특히 최빈곤층의 생활수준향상
- 민간분야 발전
- 고용기회확대
- 발전에 희생된 계층의 이익보호
- 여성개발
- 문화발전도모
- 환경보호

2) 무상원조기관: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외무성내)(본부인원:50)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0.12 billion \$ (GNP 대비 0.24%) ('95 년)(양자: 다자비율 80:20)
- 중점국가: 태평양군도(양자간 원조 70%) 및 동남아시아가 중점협력 지역임.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및 훈련분야
 - 여성개발분야
 - 민주주의 신장분야
 - 환경분야
- 원조특징:
 -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함.

사. 네델란드 원조의 특징

- 이전의 국별원조중심(Country Programming) 중심에서 주제(Thematic-Oriented)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원조를 실시키 위해 많은 권한을 해외주재 사무소에 이양함. 외부성내의 DGRB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DGIS에 많은 권한이 옮겨짐.

13.뉴질랜드(New Zealand)

가. 기본개요

1) 원조목표

- 개도국 주민중 특히 최빈곤층의 생활수준향상
- 민간분야 발전
- 고용기회확대
- 발전에 희생된 계층의 이익보호
- 여성개발
- 문화발전도모
- 환경보호

2) 무상원조기관: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외무성내)(본부인원:50)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0.12 billion \$ (GNP 대비 0.24%) ('95년)(양자: 다자비율 80:20)
- 중점국가: 태평양군도(양자간 원조 70%) 및 동남아시아가 중점협력지역임.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및 훈련분야
 - 여성개발분야
 - 민주주의 신장분야
 - 환경분야
- 원조특징:
 -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실시함.

나. 원조 정책

- NZODA(New Zealand ODA)의 철학과 원칙은 원조가 외교정책의 주요 부분임과 국제사회에서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고, 특히 남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에 그 목표를 둠. 또한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뉴질랜드의 적극 대처에 있음.
- '96 년에 새로운 정책들이 수립됨. 이를통해 주요한 전략과 목표가 정해지며, 원조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함.

다. 원조 조직

- 뉴질랜드의 원조는 기본적으로 태평양지역이 중심임. 양자간원조의 54%('95-'96)가 남태평양지역에 집중됨. 반면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적음.
- 원조규모면에서 보명 '75 년에 GNP 대비 0.52%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함. '94 년에는 0.24%, '95 년에는 0.23%를 나타냄. 뉴질랜드는 원조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위해 '94 년에 경제성장에 따른 3 년간 평균 5%의 규모증대 계획 및 '97-'98 년에는 GNP 대비 0.25%의 계획을 수립함.
- 뉴질랜드의 원조담당조직은 외교통상부내의 "DEV"(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임. 직원들은 직업공무원과 개발협력 전문가(계약)으로 구성됨.
- 최근에 도입된 정부개혁은 상당한 질적향상을 가져오고 있음. 특히 원조평가, 분석 및 프로그램 지원기능의 강화, 국별원조계획의 강화, 또한 정책 및 절차의 체계화는 DEV 내나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원조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직원들의 능력제고에 큰 역할을 차지함.
- 또한 조직개편의 방향은 결재라인을 한단계 축소하고, 본부와 해외주재 대사관이 역할의 재정립, 계약 컨설턴트의 역할 조정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직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효율적인 원조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라. 정책대화 및 정책조정

- '92 년 원조검토회의후 뉴는 남태평양국가와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정책개혁, 선정(good governance) 및 민간 분야발전을 지원함.

마. 제도구축

- 뉴질랜드의 주요 원조분야로는 교육과 직업훈련임. 이를 위해 수원국의 대학생들을 뉴질랜드의 대학에 입학케 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 특히 WID의 일환으로 '94-'99년에 수원국의 여학생을 많이 받아들임. 또한 수원국 제도구축의 일환으로 환경관리, 선정 및 공공기관의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

바. 향후 추진 방향

- 최근에 뉴질랜드 원조프로그램에 많은 질적인 진전이 있었음. 첫째, 평가의 결과에 대한 평가기능이 강화되었고, 프로젝트의 심사 및 고안시 전문적인 지원의 제공이 가능해 졌으며, 조직이 효율적으로 개혁되었음.]
- 둘째, 국별자료와 3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국별 원조계획이 도입 되었으며,
- 셋째, 수원국, 특히 남태평양국가와의 국별 정책대화를 통해 개발원조의 정책적 기초가 더욱 확대됨.
- 특히 '80대에 들어와 계속 축소되는 원조규모가 '90년에 들어와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장기 규모 확대계획을 추진하여 더욱 증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참고: A Policy Framework for the New Zeal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NZODA) ('92)

1. 기본방향

- 원조의 필요성은 범세계적 평화, 안전에 기여하고 개발이 미래에 대한 투자
- 원조의 기본목적은 수원국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위해, 특히 수원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제공
- 원조의 최우선제공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남태평양지역이며, 최근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함.

2. New Policy Framework

- 위에 언급한 3 가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
- Guidling Principle and Key Strategies

- 수국자신의 개발에 대한 책임강조
- 질랜드의 원조는 인적자원개발 및 제도구축을 통한 수원국 능력배양에 있음
- 뉴질랜드의 원조는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균등한 경제발전을 지원함에 의해 지속적인 조건의 향상에 있음.
- 뉴질랜드 원조는 빈곤층의 자조意識과 그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 빈곤완화에 초점을 둠
- 수원국 주민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는 원조 성공의 필수조건임
- 뉴질랜드 사회는 자국의 원조노력에 참여하도록 격려함. 여기에는 뉴질랜드 NGO 를 포함하는 민간분야, 공적기관 및 타 인종제도 포함됨.

3. 목표달성 전략

- 지속적인 경제행위와 사회개발목표를 조장하는 적절한 정책 및 체도를 위한 개혁
- 모든 주민을 위한 원조의 책임성, 투명성,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공적분야의 개혁과 선정
- 민간분야가 환경분야의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격려하는 공공정책
- 수원국 주민들이 자신들의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케하는 수원국 기관의 발전
- 개발효과로부터 여성에게 균등한 혜택을 줄수있게하는 행위
-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기초교육, 보건 및 인구문제등 사회적인 문제에 좀더 많은 노력실시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 하도록 천연자원의 관리나 환경의 보호

4. 국별계획(Country Programming)

- 뉴질랜드의 국별계획은 프로젝트의 자금, 기관예산 및 장학금제공에 있어서 수원국과의 합의에 의한 프로그램에 기초함.
- 양자간원조의 최우선지원국가는 15 개이며,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임. 이들이 양자간 원조의 90%를 지원받음. 이외에 69 개 국가가 장학금이나 연수생 지원자금명목으로 지원을 받고있음.
- 뉴질랜드의 국별계획은 해당 수원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현 상황을 기록한 내부자료와 중.장기 국별계획에 의해 작성됨.
- 국별계획은 모든 주요한 양자간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수시로 변경됨. 해당수원국의 개발프로그램 담당 책임자는 평가국, 타 DEV 직원, 외무통산부의 지역담당자 및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혹은 해당 수원국 혹은 타 공역기관으로 부터의 개발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함.

여기에는 뉴질랜드가 비교우위분야로 여기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 이것이 작성되면 그다음으로 Bilateral Framework Paper 를 작성함.
여기에는 뉴질랜드가 해당 수원국간에 합의된 중.장기계획들, 해당 수원국에서 원하는 분야를 직접 명기함.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확정 되기 위해서는 원조관련 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5. 뉴질랜드의 원조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

-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원조는 비조건부원조임. 그러나 양.다자간원조의 자국 제품을 사용한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난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
- '95 년에 뉴질랜드의 외교통상부는 원조의 효과에 대한 경제적접근을 시도. 이에 의하면 '93/'94 년에는 양자간원조는 59%의 회귀율을 보이며, 다자간원조는 무려 279%의 회귀를 보낸 것을 지적하면서, 원조의 경제적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함.

14. 노르웨이(Norway)

가. 기본개요

- 1) 원조이념: 개도국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조건향상
- 2) 무상원조기관:
 -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본부인원:220, 해외:78)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본부인원: 81 명, 해외인원 17 명)
- 2)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1.31 billion \$ (GNP 대비 0.85%) ('96 년)(양자: 다자비율 73:27)
 - 중점국가: 노르웨이는 다음의 3 군으로 국가를 나눔.
 - 프로그램국가
 - 협력국가
 - 기타국가
 - 중점지원분야:
 - 보건분야
 - 쓰레기수거 및 처리분야

- 교통 및 통신분야
- 농업분야
- 에너지분야
- 교육분야

○ 원조특징:

- 원조액이 GNP 대비로 가장 높은 국가임.

나. 원조 정책

- 현재 노르웨이는 회원국중 둘째로 높은 GNP 대비 원조규모를 보여줌. 그러나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 이전보다 원조에 대한 가치는 줄어드는 실정임.
- 노르웨이는 범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및 사회문제, 분재해결 및 민주적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있음. 그러나 예전의 원조의 가치에 대한 무한한 지원은 이제는 효율적인 원조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음.
- 다음의 3 가지 측면에서 노르웨이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능력배양과 수원국의 책임이 원조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를 결정함
 - 원조대상국이 확대되며, 이제는 범세계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함.
 - 다자간원조나 장기적 원조보다는 긴급원조나 지역중심원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
- 원조체계
 - 외무성의 양자간 협력부에서 정책이 형성되며 NORAD 에서 집행되는 양자간원조
 - 외무성내의 정무부에서 담당하는 긴급 및 정치발전원조
 - 외무성내의 NORAD 나 정무부의 지원으로 80 개의 NGO 에 의한 원조
 - 외무성내의 다자간협력부에서 취급하는 다자간원조
- 현재 원조의 초점으로는 원조수단간의 일관성, 균형성 및 조정임.
- '95 년에 발표된 "Report on Norwegian South Policy For A Changing World" (이것은 Commission on North-South and Aid Policies 에 의해 제출됨)는 위에서 언급한 방향을 지지함. 이는 수원국 수혜자중심전략에서 능력배양과 수원국의 책임으로 원조의 수립과 실시의 방향이 바뀐 것을 의미함. 이 위원회는 개도국의 개념을 없애고 이를 3 그룹-즉 low-welfare, medium-welfare, high-welfare 으로 나눔.

다. 양자간원조

- 수원국책임의 개념은 국별배분에서 지역별배분으로 전환을 의미함. 예를들면 탄자니아 정부와 합의된 국별원조계획에 대한 자금의 축소를

들 수 있음. 노르웨이는 이와같은 조치가 지금까지의 공급자 우선원칙에서 수요중심의 원칙으로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여김. 왜냐하면 공급우선원칙이 수원국의 능력과 원칙을 저해하였기 때문임. 노르웨이는 지속적인 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리 및 행정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보고있음.

- 노르웨이는 '89 년에 조직을 개편했으며 분야별중심에서 국별중심으로 바꾸었고 NORAD 와 해외주재 공관을 합쳤음. NORAD 는 수원국과 협조로 노르웨이의 NGO, 컨설턴트 및 민간회사들이 그 국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질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함.

라. 긴급원조, 인권 및 민주주의

- 이 분야에는 전체원조의 16%, 양자간 원조의 22% 를 차지함. 현재 이 분야는 외무성내의 정무담당책임자의 책임아래 빠르고 신속적인 결정을 내리며 특히 노르웨이의 NGO 와 정례적으로 협의함.

마. NGO

- NORAD 가 보조하는 NGO 에의 보조금지급 형식은 정부 80: NGO 20 임. NGO 에 대한 보조는 양자간원조의 15%를 차지함. 규모가 큰 NGO 는 NORAD 와 Framework Agreement 를 체결하여 실시. 다른 NGO 들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NORAD 와 연결. NORAD 는 또한 수원국 NGO 에도 보조금을 지급함.

바. 다자간원조

- 노르웨이는 다자간원조의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해가 갈수록 다자간 원조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현재 다자간원조는 27%를 차지함. 그러나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책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multi-bi 원조에 중요성을 부여함.

사. 원조관리

- 현재 원조담당 직원 및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NORAD 는 '92 년부터 "Development Cooperation Training Center"를 운영함. 이를 통해 노르웨이의 원조관련 기관 즉 NORAD, 외무성, NGO, 전문가, 민간분야 및 봉사단에 대한 원조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원조의 질과 평가의 문제는 최근에 부각됨. 원조관련 행정체제는 더욱 엄격해 졌으며,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는 잣대가 확정되고, NORAD 내의

새로운 부서가 이를 시행함. 최근에는 예산과 원조의 목표, 관리책임 및 운용프로그램간을 일치하는 새로운 제안이 수립되고 있음

- 평가는 외무성내의 양자간 협력부서내의 새로운 “Section for Cross-secto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에서 취급함.

아. 향후 방향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노르웨이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백서의 내용임. 특히 “Capacity Development and Recipient Responsibility”의 개념은 많은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개념임.
- 현재 노르웨이는 기존의 원조가치에 대한 개념은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원조의 균형, 일관성 및 조정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 수원국 책임의식과 원조에 대한 수원국간의 경쟁은 적절한 방향임. 그러나 최빈곤국가의 문제와는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것임.
- NGO의 참여는 노르웨이의 가장 중요한 원조자원이며 또한 수원국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이 아주 중요함. 그러나 NGO에의 이행조건이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그리고 많은 재량권의 허용이 NGO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연결된다는 비판도 있음.
- 다자간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전략적인 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긍정적임.

참고: Report by the Commission on North-South and Aid Policies

1. 개요

- 외무성이 의회에 백서를 제출한후(‘91-’92), 독립적인 원조전문가 위원회가 임명되었음. 이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노르웨이의 남북관계, 원조에의 영향, 그리고 무역, 환경, 부채, 특히 다자간원조에 대한 재정립을 목적으로 함. 동 위원회는 “Norwegian South Policy for a Changing World, Official Norwegian Report”를 만들어 외무성에 제출함.

2. 일관성있는 노르웨이의 대개도국 정책

- 노르웨이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에 있어서 외교정책과 관련되어 더 많은 정치적관심이 부여되며 대개도국 정책간의 일관성이 더욱 강화되어야함.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천연자원의 지속적관리의 한계내에서 좀더 나은 인간복지 및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음.

- 대개도국정책은 최빈국과 중진국사이에 많은 차이를 두어야함. 이와같은 차이는 개발원조의 예산과 무역정책에 반영되어야함. 최빈국에 해당되는 원조예산은 적어도 현재만큼 유지되어야함.
-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처는 긴급구호, 피난민을 위한 인도적원조, 개도국의 민주화에 대한 지지 및 특별 무역정책을 맡고 있음.

3. 국별배분

- 노르웨이의 정책은 UNDP 가 마련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의거하여 개도국 정책을 결정하며 최빈국 및 중진국에 대한 정책의 차별화를 실시함.
- 최빈국(Low-welfare Countries): 사헬지역, 남아시아 및 최빈국을 지칭함. 이 국가들의 평균 수명은 56 세이며, 문맹률은 47%임. 주민들은 대개 2 년정도의 학교교육을 받으며, GDP 는 \$1,170 이하임.
- 중진국(Medium-welfare Countries):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국가, 중동 및 동북, 동남아시아국가. 평균 수명은 68 세이며, 문맹률은 80%이고, 평균 학교수학기간은 4.8 년이며, GDP 는 \$3,420 임.

4. 분쟁해결 및 긴급구호

- 긴급구호는 분쟁을 해결하는것과 연계되어야함. 긴급구호의 실시책임은 외무성에서 NORAD 로 이동되어야함. 대신 외무성은 정치적 조정력을 가져야함. 노르웨이의 난민접수를 위한 경비는 원조예산에서 제외되어야함. 긴급상황, 분쟁 및 위기에 대처하는 여러 조치의 조정노력이 향상되어야함.
- 평화유지노력에의 참여, 분쟁관련 노력은 대개도국정책과 통합되어야하며, 노르웨이의 긴급구호와 밀접히 연계되어야함.
- 노르웨이는 UN 의 분쟁해결 강화노력에 도움을 주어야함. 노르웨이의 긴급 구호는 UN 의 역할을 훼손치 않게 해야함. 노르웨이의 긴급구호에 관한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기위해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UN 이나 노르웨이의 NGO 를 통해 실시되어야함.

5. 무역 및 민간분야 발전

- 노르웨이는 최빈국에 대한 무역의 국제적인 조건을 향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또한 개도국의 무역에 있어서 보조금의 사용을 지양해야함. 원조는 민간분야의 발전을 지원해야하고, 그리고 무역정책과 연계되어야함.
- 노르웨이는 무역정책에 환경요소의 고려가 포함되도록 해야함. 그리고

UNCTAD 가 독립적개체가 되어 향후에는 WTO 에 통합되어야함.

6. UN 및 다자간체제

- 노르웨이는 UN 조직의 개혁을 지지함. World Bank, IMF 는 UN 에 좀더 책임을 져야함. 동위원회는 국제금융기구가 기술원조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에 회의를 가지고 있음. UN 의 원조노력은 특히 개도국의 능력배양에 두어야함.

7. 개발원조

- 노르웨이의 원조정책은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함. 동위원회는 원조가 수원국의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것에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원조의 역할은 수원국이 자신의 개발정책이나 제도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함. 원조의 효과가 기대치보다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조의 삭감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말아야하고 반면에 원조의 질적인 측면의 향상으로 진행되어야함.
- 다자간기관은 범세계적인 이슈에 집중하고, 수원국의 당국과 협조해야함. 대신 양자간원조는 개도국 정부조직 및 공공정책에 집중되어야함. 시민 사회의 기업, 산업체,조직들은 개개의 채널로 지원받아야함.

8. 양자간원조

- 원조예산은 완전히 재수립해야함. 빈곤완화에 대한 충분한 강조를 두기 위해서는 원조예산의 많은 부분은 최빈곤국가에 고정화되어야함. 그리고 환경분야에 원조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함. 산업 및 상업발전기금은 최빈곤, 중진국에의 투자를 위해 설립되어야함. 동위원회는 원조의 질의 보장을 위한 원조가 준비될 것을 제안함.
- 제한된 최빈국에의 중.장기적원조 프로그램과 타최빈국 및 중진국에의 좀더 신축적이고 확대된 협력에는 차이점을 두어야함.
- 양자간원조는 2 개로 나뉘져야함. 즉 최빈국에의 원조는 2 개의 프로그램을 포함함.
 - 제한된 최빈국가에 중.장기프로그램실시
 - 중.장기프로그램을 보조하기위해 같은 최빈국에게 단기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금이 설립됨
- 타최빈국 및 중진국에의 프로그램실시
 - 환경우선 개발원조
 - 산업, 상업 및 경제발전
 - 민주화, 조직 및 제도발전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

9. NGO 역할

- NGO의 역할은 실질적인 개발원조에 제한되며, 정부의 NGO에 대한 보조는 최빈국에 국한되어야함. NGO는 중진국 원조의 재정출연에 50%를 부담해야함.
- 원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제한된 NGO는 노르웨이의 원조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해야함. 그리고 NGO에 대한 보조는 원조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야함.

10. 정보 및 홍보활동

- NGO들은 정부의 홍보기금을 자유롭게 활용케 하여 대국민정보 및 홍보를 담당케함

15.포르투갈(Portugal)

가. 기본개요

- 포르투갈의 원조규모는 '90년에 들어와 등락을 거듭함. '89/'90에는 GNP 대비 0.24였지만, '92년에 0.35%였고, '94년 0.34%, '96년에는 0.21%(\$218million)로 낮아짐.
- 이것은 포르투갈의 채무경감에 기인함. 전체원조에서 채무경감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에 25%, '92년에 50%를 차지. 어떤 회원국도 포르투갈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채무경감을 제외하면 '96년 원조규모는 0.14%임.
- 원조규모중 두번째는 다자간기관에 대한 기부임. 여기에는 EC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는데 여기에 포르투갈 전체원조의 20%가 배당됨. 포르투갈은 IDA, UNDP, UNICEF에도 재정적인 기여를 함.
- 경제협력기금(FCE)을 통한 민간분야의 지원은 포르투갈 원조프램의 주요한 부분임. '94년에 \$27 million, '95년에 \$26 million을 차지함. FCE를 통한 지원은 포르투갈의 외무성과 재무성이 공동으로 관할함.
- 기술협력은 포르투갈 원조의 1/4 정도를 차지함.
- 포르투갈은 원조규모 및 범위에 대해 근본적인 정립을 해야할 때가 도래함. 포르투갈 정부는 원조규모로 GNP 대비 0.36%로 정함.

나. 원조 정책

- 포르투갈의 원조노력은 크게 양자간원조에의 집중, 원조배분에 있어서 구 5 개 식민자국가와의 역사적관계, 언어, 문화와의 연결로 대분 될수 있음.
- 포르투갈은 '61 년 DAC 의 창단멤버였지만 '74 년에 이 위원회에서 탈퇴함. 그리고나서 '91 년에 재가입함.
- 포르투갈은 원조의 개혁을 실시함. 그 방향으로서는 지금까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실시해온 교육 및 보건분야의 원조를 합치는 것임. 또한 포르투갈의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러나 NGO 의 역할은 아직 미약함.
- 포르투갈의 원조중 다음분야는 아직 발전하여할 것임.
 - 지금까지의 제한된 원조범위와 목표를 확대하고, 원조전략을 수립하는 것
 -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양자간원조중 기술협력프로그램을 향상하는 것
 - 통합된 프로그램과 예산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관리, 조정 및 원조에 대한 평가를 보장하는 것.
 -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NGO 분야를 강화하는것

다. 범위, 목표 및 전략

- 현재 포르투갈은 기존의 5 개 구식민지국가에 원조를 집중하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함. 반면에 이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포르투갈 외교정책의 기본목표임.
- 특히 구 식민국가중에서 모잠비크는 민주화의 시작 및 시장경제에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아주 힘든 상황에 있으며, 앙골라는 힘든 평화 과정을 통해 수립된 신정부가 정치,경제적재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에 직면함. 다른 3 개국가인 기네비소, 케잎베르데 및 사오토메에 있어서는 선정과 역동적인 민간분야에 기초한 경제발전이 그들의 중요한 과제임.
- 이와같은 상황에서 포르투갈은 원조노력의 목표와 범위를 확대하려고함. 특히 법적장치완비 및 법무관련 행정을 포함하는 선정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이 포르투갈 원조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있음.
- 민간분야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경제협력기금(Fund for Economic Cooperation)에서 제공됨. 이를통해 타당성조사나 재훈련을 실시함. 또 이 기금의 목적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interest subsidies 의 제공에 있음.
- 포르투갈은 저축, 투자 및 기관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적 안정 및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정책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이를위해 World

Bank, IMF 의 구조조정기금을 지지함. 그리고 이 기금의 채무경감 및 재투자를 위해 포르투갈은 많은 자금을 제공함. 그 다음으로는 환경 관리에 대한 분야임.

- 동시에 고등교육 및 병원을 통한 보건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도 우선 순위를 부여.
- 최근에는 포어를 구사하는 국가공동체를 결성함. 이를통해 관련 국가와의 정책대화, 상호협조 및 이해를 높임. 포르투갈 의회와 구식민지 국가 의회와의 협조는 진일보됨.

라. 원조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원조관리의 통합

- 포르투갈의 원조실시체제가 여러 정부부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프로그램에 의한 전략적 접근, 원조배분에 있어서 투명성보장, 그리고 관련 부처의 원조실시에 있어서 효율성추구라는 세가지 주요한 과제가 부각됨. 지난번('94) DAC 원조검토회의에서 이 과제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난번 검토회의후 포르투갈은 외무성산하에 ICP(Institute for Portuguese Cooperation)를 설치하여 원조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시켰으며, 프로젝트사이클에 관한 관리기법이 도입되었고, 평가기능이 가동됨. 또한 원조관련 모든 정부부처가 그들의 원조에 관한 지침을 공표하고 원조의 투명성을 증대시킴. DAC 의 효율적인 원조에 관한 지침이 번역되었고, ICC(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Cooperation)가 기존의 비효율적인 원조조정기관을 대체하여 설립되어 포르투갈 정부내의 원조조정업무를 담당함. 이 위원회는 설립후 2 번 소집되었지만 소위원회에는 자주 소집됨. 구 식민지국가와 코트디브와르, 및 UN 에는 현재 ICP 의 해외사무소가 있음.
- 그러나 더욱 효율적인 원조수행을 위해서는 ICC 를 통해 ICP 의 원조 실시가 일관성있게 그리고 더욱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함. 현재 ICP 는 직원수가 적으며, 또한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다른 회원국처럼 원조프로그램이 주재공관원에 의해 관리 되는 것에서 보듯이 ICP 도 직원의 신중한 선택 및 보직순환이 직원들의 원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 사항임.
- 특히 ICP 에 대한 효율적인 원조실시는 양질의 직원충원에 달려있음. 그리고 ICC 를 통해 원조에 대한 일관성유지 및 모든 원조예산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포르투갈의 의회도 중요한 역할 수행. 물론 의회의 원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내의 외교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책임자들과의

빈번한 토론이 진행됨.

마. 시민사회의 참여 및 NGO의 역할

- 원조에 대한 포르투갈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장점중의 하나임.
포르투갈의 지자체, 대학교는 원조실시에 많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구 식민지에 대한 포르투갈 언론매체의 취급이 높은편임. 반면에 NGO는 약함. 그리고 원조에 관한 전문적인 실시가 가능한 NGO는 많지않음.
- 포르투갈정부는 NGO 활동을 강화시키기위해 ACC(Advisory Council for Cooperation)를 설립코자함. 이 조직은 이전에 한번 설립되었지만 해산되었음. 현재 구식민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포르투갈 시민사회의 참여가 바람직함.

바. 향후전망

- 원조에 대한 높은 국민들의 지지속에 한편으로는 현재의 원조에 관한 개혁에 찬성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 다른 그룹들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가 원조에 대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됨.
- 통합되고 투명한 원조프로그램과 강하고 전략적인 부처간 조정을 통해 확실한 전망과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
- 양자간 기술원조의 확대는 현재 채무경감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GNP 대비 0.36%를 달성하는 주요한 대안임. 이를위해 DAC의 21세기 전략에 기초하여 포르투갈의 원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원조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제고가 요구됨.
- 좀더 많은 권한을 해외주재 사무소에 이양함으로써 수원국과의 동반자 의식을 강화하며, 현장에서 타 원조기관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
- NGO에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 및 봉사단원에 대한 법적지위의 확보는 포르투갈 시민사회의 원조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킴.
- ICC의 빈번한 모임, NGO의 활성화, 그리고 의회에서 원조에 대한 검토와 토론의 활성화는 포르투갈 원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임.

16. 스페인(Spain)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주민의 기본욕구충족, 부의 공평한 분배, 모든 국민의 안전과 자유보장
- 개발협력은 국가 및 사회적 의견일치에 기초를 둠
- 개도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의견교환

2) 무상원조기관:

-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부인원: 324 명, 해외인원 440 명)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1.25 billion \$ (GNP 대비 0.22%) ('96 년)(양자: 다자비율 71:29)
- 중점국가:
 - 라틴아메리카: 양자간 원조의 45% 할당
 - Maghreb 지역: 양자간 원조의 30% 할당
 - Sahel 지역: 양자간의 15% 할당
- 중점지원분야:
 - 인적개발분야
 - 경제구조조정분야
 - 경제생산분야
- 원조특징: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외무부와 재무부간의 마찰이 큼.
 - 원조와 자국의 수출을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타국의 비판을 받고있음.

나. 원조규모 및 구성

- 스페인의 원조규모 및 구성은 유상원조인 FAD 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에 이에 영향을 많이받음. 그러나 현재 FAD 의 비율이 많이 낮아져 예전과 같지 않음.
- 스페인은 '80 년대의 낮은 규모에서 '93 년에 GNP 대비 0.28%로 가장

피크를 이룸. '92 년 현재 규모는 \$1.5billion 으로 회원국중 10 번째를 차지. 그러나 FAD 가 많이 줄어들고 EU 에의 회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96 년 \$1.25billion 으로 세계에서 12 번째를 차지함.

- 스페인 정부는 점차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며, 잠정적으로 GNP 대비 0.35%로 목표를 정함.
- FAD 의 규모가 작아지자 무상원조의 전체원조중 차지하는 비율도 92 년의 17%에서 '96 년에 45%로 증가됨.
- 부채경감은 '93 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96 년에는 스페인의 주요한 원조부분이 됨. 부채경감이 '96 년에는 전체원조의 10%를 차지함. 이것은 회원국의 평균의 2 배임.
- NGO 에 대한 보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스페인의 원조가 좀더 빈곤완화, 환경보호 및 여성개발과 같은 원조정신과 일치하는 분야에 원조를 실시할수 있게 됨을 의미.
- 비타이드원조의 경우, 스페인의 경제적이고려가 많이 고려되고 있음. 이것은 최근에 NGO 들이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이 스페인제품만 허용되고 있는 것에 잘 나타나고 있음. 특히 스페인의 각 정당도 원조는 스페인과 수원국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유했.

다. 정책방향

- DAC 의 21 세기 전략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함. 여기에는 스페인도 예외는 아님. 위에 언급한 스페인의 원조방향은 이와같은 방향의 재점검의 일환임. 최근 몇 년간 스페인의 중점분야로는 선정, 법치주의, 환경보호, 여성동등 및 독립, 최빈곤층 및 토착민을 위한 사회개발, 그리고 민간기업의 발전에 둠.

라. 분권화 협력 및 NGO

-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여 스페인 원조의 특징으로는 지자체의 강화된 원조활동임. 그중에서도 Basque Country, Andalusia, Navarra, Catalonia 가 가장 앞서감. 물론 이들의 원조방향도 중앙정부에서의 원조방향에 적용받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 및 원칙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대개 빈곤완화, 사회정의 구현, 참여적개발 및 구호원조에 치중함. 대부분의 지자체의 원조의 실시는 NGO 및 다른 비영리단체에 의해 행하여짐. 향후 설립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Interterritorial Commission 은 양자간의 원조에 관한 정책대화, 조정 및 원조관련 양자간의 중복을 피하게 할것임.

- '95 년 이후 NGO 는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음('95 년 \$80million). NGO 들은 또한 지자체 원조의 실시기관으로 활동중임. 정부보조금은 매년 2 번씩의 프로젝트당 경쟁에 의해 지급됨. 이의 심사는 AECI 가 실시함. 그러나 타 회원국처럼 NGO 들과의 다년간 Framework Agreement 에 의한 NGO 보조는 존재하지 않음.

마. 원조 개혁의 방향

- 스페인은 다음의 4 가지 측면에서 개혁을 하고 있음
 - 원조관련 기본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
 - 타이드원조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우선 분야도 바뀌었소, 증여비율도 늘어남
 - 지자체에 의한 분권화도 잘 이루어 지고 있음
 - 프로젝트의 수립 및 평가기능의 향상

나. 향후 추진 방향

- 스페인이 채택한 개발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잣대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어야함.
- 원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책임의식과 동반자의식을 고취해야함.
- 수출진흥 목적의 원조차관인 FAD 에 의한 생산분야에의 타이드원조가 몇 년전에는 스페인 ODA 의 50%이상을 차지함. 그러나 이것은 '92 년에 DAC 에 체결된 소위 헬싱키팻키지에 의해 현재 20%이내로 대폭 줄어듬. 그리고 그 방향도 사회발전에 치중함.
- 원조관련 기본법안이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임. 이것이 통과되면 스페인 최초로 원조관련 법안이 됨. 이 법안에는 스페인의 정부 부처에서 수립 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기존의 개발지침을 포함하고, 스페인의 다년간 및 단년간 원조계획, 스페인 의회의 외교위원회에서 원조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그리고 각당의 원조에 대한 감시 강화내용이 포함될 예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화와 조정을 강화할 Interterritorial Commission 이 설립됨.
- 현재 외무성의 관할인 스페인 무상원조에 대한 계획수립, 조정 및 평가 기능이 약한 것을 강화하기위한 조치들이 이미 취해짐. 다년간 원조 계획수립기법이 정립되어 논리틀에 의한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케함. 이를 통해 스페인정부는 원조를 좀더 원조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실시할 수가 있게 되었음. 국별수준에서는 국별원조계획에 있어서 좀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함.

- 프로젝트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수립됨. 그리고 기존의 서로 연관없이 나뉘어져 수행되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좀더 통합되어 실시하게됨.
- 현재 외무성의 기획 및 평가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조정, 기획 및 영향평가에 중점을 둠. 이것은 이전의 NGO 담당부를 외무성에서 원조 집행기관인 AECI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함.
- 스페인은 원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질적인 측면, 경험 및 직업에 대한 안정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를위해 현재 외무성의 통제를 받고 있는 원조집행기관인 AECI의 재량권을 더욱 많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반면에 AECI도 무상원조의 확대 및 차관의 축소에 발맞추어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요구됨.
- 현재 정부 조직에서 두종류의 각료회의 수준의 위원회가 있음. 하나는 재정부에서 주관하는 FAD 위원회이며, 다른 하나는 외무성주관의 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CICI) 임. 현재 의회에 심의중인 기본법안에는 스페인의 ODA가 좀더 통합된 목표, 전략,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공정한 잣대, 그리고 수원국과의 원조수단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
- 또한 새롭게 설립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원조조정역할을 수행할 Interterritorial commission이나 의회의 원조관련 위원회의 강화된 역할, 그리고 기존의 정부, NGO, 시민사회간의 위원회가 이와같은 목적으로 사용됨.

17. 스웨덴(Sweden)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경제발전
-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형평달성
- 개도국의 경제 및 정치적 독립달성
- 개도국의 민주발전달성
- 개도국의 환경보호

2) 무상원조기관

- Sida(Swedish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본부인원: 441 명, 해외

- 프로젝트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수립됨. 그리고 기존의 서로 연관없이 나뉘어져 수행되던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좀더 통합되어 실시하게됨.
- 현재 외무성의 기획 및 평가부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조정, 기획 및 영향평가에 중점을 둠. 이것은 이전의 NGO 담당부를 외무성에서 원조 집행기관인 AECI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가능함.
- 스페인은 원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질적인 측면, 경험 및 직업에 대한 안정을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함. 이를위해 현재 외무성의 통제를 받고 있는 원조집행기관인 AECI의 재량권을 더욱 많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반면에 AECI도 무상원조의 확대 및 차관의 축소에 발맞추어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요구됨.
- 현재 정부 조직에서 두종류의 각료회의 수준의 위원회가 있음. 하나는 재정부에서 주관하는 FAD 위원회이며, 다른 하나는 외무성주관의 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CICI) 임. 현재 의회에 심의중인 기본법안에는 스페인의 ODA가 좀더 통합된 목표, 전략,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공정한 잣대, 그리고 수원국과의 원조수단에 대한 조정을 요구함.
- 또한 새롭게 설립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원조조정역할을 수행할 Interterritorial commission이나 의회의 원조관련 위원회의 강화된 역할, 그리고 기존의 정부, NGO, 시민사회간의 위원회가 이와같은 목적으로 사용됨.

17. 스웨덴(Sweden)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경제발전
-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형평달성
- 개도국의 경제 및 정치적 독립달성
- 개도국의 민주발전달성
- 개도국의 환경보호

2) 무상원조기관

- Sida(Swedish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본부인원: 441 명, 해외

근무직원 97 명)(해외지사는 '94 년 조직개편에 따라 모두 대사관과 합쳐짐)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1.98 billion \$ (GNP 대비 0.89%) ('95 년)(양자: 다자비율 72:28)

○ 중점국가:

-아프리카지역: 양자간 원조의 50% 할당

-아시아지역: 양자간 원조의 20% 할당

-라틴아메리카 지역: 양자간의 13% 할당

○ 중점지원분야:

-사회발전분야

-자원관리분야

-인프라분야

-공공행정 능력배양분야

-교육분야

○ 원조특징:

-정책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축소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고양하였음.

이전의 5 개 원조기관을 통.폐합하여 1 개기관으로 만들었음.(Sida)

나. 개혁 진행 방향

○ 스웨덴의 개발원조는 변화기에 놓여있음.

○ 조직체계는 대규모의 조직개편과 변신을 시도

○ 원조규모는 많이 삭감됨

○ 원조정책은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상황을 반영

○ 지금까지 스웨덴의 원조는 다른 회원국보다 앞서나가며, 이의 건설적인 다자간원조주의(constructive multilateralism)및 높은 수준의 GNP 대비 원조규모로 대변함.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변화는 스웨덴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함.

다. 조직개편 방향

○ 최근에 5 개의 원조관련 조직인 SIDA(Swedish Int'l Development Authorith), BITS(Swedish Agency for Int'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SAREC(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wedecorp, Sando U-centrum(Swedish Centre for Educ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합쳐서 Sida(Swedish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를

만들

- 또한 외무성의 역할도 재조정됨. 여기에는 국별원조계획의 담당이 외무성의 지역국으로 이양되고, 이 지역국이 정부, 무역 및 원조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함. 그러나 원조의 종합적인 정책과 다자간협력 정책은 외무성의 타부서에서 관할함.
- 예전에 원조관련 부처가 많아서 수원국들이 접촉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두개의 조직만 접촉하면됨. 즉 원조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성, 그리고 원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Sida 임. 현장에서는 이 두조직이 대사관내에 통합되어있음.
- Sida 의 조직개편의 원칙은 매트릭스체제의 균형유지임. 즉 원조의 기획과 정책을 담당하는 지역담당국과 프로젝트의 고안 및 실시를 책임지는 분야담당국의 조화임. 강한 정책담당국이 설립되어 범세계적인 이슈인 빈곤, 성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만들며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함. 또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부서도 존재함. 그러나 이와같은 조직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됨.
- 이와같은 조직개편은 스웨덴이 향후 원조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원조수단간의 조정을 더욱 원활히 하게 만들.

라. 원조동향

- '60년대 ODA 개념을 도입한 이후 스웨덴은 회원국중에서도 가장 선도 그룹임. GNP 대비 ODA 비율도 가장 높았음.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점점 감소되는 경향을 보임.
- 스웨덴 의회에서 승인된 원조의 목표는 6 가지임.
 - 자원성장: 재화와 용역의 생산의 증가에 기인함
 - 경제 및 사회형평: 빈부간의 격차를 줄이고, 특히 수원국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기본욕구충족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
 - 경제적,정치적 자율성:수원국이 자국의 경제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정책을 실시하며, 그들의 독립 및 자조노력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조함.
 - 민주발전 및 사회: 국민들이 지역별, 국별정책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
 - 천연자원의 활용 및 환경에 대한 고려:
 - 남.녀평등추구:성적평등을 조장하기 위함
- '95년에 원조규모는 3% 감소됨. GNP 대비 비율도 0.89%로 떨어짐. 이것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야기됨. 현재 스웨덴정부는 GNP 대비 원조규모를 0.7%로 예상하며 이 비율을 '99년까지 유지할 예정임.
- 현재 UN에서 정한 비율이 0.7%임을 고려시 스페인정부의 조치는 이해함.

그러나 예전의 스웨덴정부의 원조에 대한 노력, 성과등을 비교할 때 이는 타 회원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특히 '95 년에 스웨덴의 EU 가입은 스웨덴으로 하여금 EU 에의 회원분담금을 늘게 만들었으며, 전체원조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양자간 원조 및 EU 를 제외한 다자간원조의 비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 스웨덴 원조의 특징으로는 스웨덴정부가 피난민을 위한 재정을 ODA 로 계상한다는 것임.참고로 DAC 의 통계규정에 의하면 현재 피난민에 대한 ODA 에의 계상은 회원국의 자율사항임

마. 원조 정책

- 스웨덴의 원조 목표는 의회가 정해준 6 개의 목표에 기초함.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음.
- 타회원국에 비해 스웨덴은 원조관련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음. 특히 스웨덴정부는 '93 년에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SASDA(Secretariat for Analysis of Swedish Development Assistance)를 설립함.
- SASDA 는 개발협력의 많은 분야에서 여러가지 주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 특히 스페인이 우수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질적인 면에 치중해야하고, 특히 수원국이 적절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주장함.
- SASDA 의 권고에 따라 스웨덴정부는 EGDI(Expert Group on Development Issue)를 설립하여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케하여 원조관련 여러 권고 및 정보를 계속하여 정부로 제출케하였음.

바. 빈곤완화

- 스웨덴 원조의 주요목표는 빈곤완화임. Sida 의 TASKFORSUM은 이 목표를 위해서는 상황이 다른 국가에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실시할 것을 권고함. 이는 국별원조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Sida 는 현재 21 개국에 대한 국별원조계획을 보유함. 이 팀은 특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교육 및 성적평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수원국의 능력배양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음.

사. 다자간협력 및 EU 관련사항

- 스웨덴정부는 타 회원국과의 협조를 통해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 예를 들면 스웨덴정부는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와의 협조로 국제금융기관들이 연성자금에 관한 조건들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함.
- 스웨덴정부는 또한 UN 의 개혁에도 적극 참가함. 스웨덴정부의 EU

참여는 스웨덴정부가 EU 의 원조프로그램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임.

아. 특별프로그램 분야

○ 민주화 및 인권

-Sida 의 새로운 조직체계는 민주화 및 인권에 대한 스웨덴정부의 높은 관심을 반영함. 또한 스웨덴정부는 개도국, CEECs 국가 및 구소련연방 국가들의 정당발전에 스웨덴의 각당을 통하여 도움을 줌. 스웨덴정부는 현재 '95 년에 14 개국으로 창설된 각국의 지속적 민주발전을 목표로하는 International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의 의장국임.

○ 재난 및 구호원조

-재난구호에 있어서 스웨덴정부는 회원국중 세번째로 원조규모면에서 많은 액수를 제공함.

-그러나 재난구호의 문제점으로는 이것이 스웨덴국민들에게 정부의 원조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는 많이 제공할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한 중.장기적 지속적 발전의 개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임.

-스웨덴정부는 재난구호관련 많은 자금을 UN 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UN 의 재난 및 구호원조관련 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냄.

○ 성적평등

-이 분야는 스웨덴정부가 오랫동안 우선순위를 두면서 실시함. 특히 스웨덴의회는 이 분야를 원조의 6 대목표로 설정함.

○ 보건, 인구 및 환경분야

-스웨덴정부는 20 년전부터 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실시함. 특히 세계의 인구증가가 급속한 아프리카국가에서 스웨덴정부의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스웨덴정부는 모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하기위한 정책 및 절차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자. 원조규모

○ 스웨덴정부는 '75 년에 GNP 대비 1%달성한 해를 매년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이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스웨덴의 NGO 및 시민사회에서는 0.7% ODA/GNP 비율을 "Level of Shame"으로 정하여 강력한 원조 증대 의지를 포명함. 이는 원조규모에 대한 스웨덴의 강력한 의지가 시민사회에 깊이 파고 들었음을 보여줌.

차. 스웨덴정부의 5 대 국별배분기준

- 시장경제로의 발전
- 민주화
- 인권보장
- 원조의 능률성
- 총 정부지출중 낮은 군사비

카. 스웨덴 국별 원조 계획(Country Programming in Sweden)

- 스웨덴은 '93 년부터 양자간원조를 위한 새로운 기획과 관리체계를 도입함. 국별계획은 수원국의 필요(수요), 빈곤상황 및 기존에 제공한 원조의 효과에 기초하여 수립됨. 현재 21 개국에 대한 계획이 준비됨. 이 전략은 수원국과 상의하여 작성되며, Sida 에서 작성되어 최종적으로 외무성의 승인을 거치게됨.
- 스웨덴의 기획 및 관리절차는 DAC 의 효율적인 원조에 관한 지침과 일치함. 즉 수원국은 자신의 개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지며, 공여국 및 수원국 양쪽이 반드시 실시하기를 원하는 분야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야 국별계획이 작성될수 있음. 수원국의 책임성 결여는 향후 그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의 제한으로 나타남. 스웨덴은 수원국의 책임성을 고양하기위한 자극제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에 원조의 효과를 고양하기위해서는 공여국 및 수원국간의 정책대화를 통한 조정, 공여국간의 원조일관성 유지, 그리고 분야별, 프로그램별 의견일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18. 스위스(Switzerland)

가. 기본개요

1) 원조목표

- 개도국의 주민의 생활향상
- 개도국주민의 자조노력향상
- 국제사회의 균형적 발전추진

2) 원조기관

- 무상원조기관: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본부인원: 275 명, 해외인원 78)

- 유상원조기관: FOFEA(Federal Office of Foreign Economic Affairs)(본부직원: 28 명)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1.08 billion \$ (GNP 대비 0.34%) ('95 년)(양자: 다자비율 72:28)
- 중점국가:
 - 아프리카지역: Benin, Burkina Faso, Chad, Madagasar, Mali, Mozambique, Niger, Rwanda, Tanzania
 - 아시아지역: Bangladesh, India, Nepal, Pakistan, Indonesia
 - 라틴아메리카 지역: Bolivia, Honduras, Nicaragua, Peru
- 중점지원분야:
 - 농업 및 조림분야
 - 인적개발분야
 - 상수원개발 및 인프라분야
 - 산업, 도시발전분야
 - 교육분야
- 원조특징:
 - '94 년에 “North-South” guideline 을 만들어 원조정책의 기본틀을 작성함

나. 원조 정책

- 스위스는 '76 년 의회에서 승인된 개발협력관련 연방법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빈곤완화와 수원국의 자조노력지원에 스위스의 원조목표를 두고 있음. 여기에는 최빈국, 지방 및 최빈곤층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스위스는 원조관련 연방법 및 '94 년에 발표한 “North-South Guidelines”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주요한 정책성명서로 볼수 있음. 이 지침서는 '90 년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정치, 생태 및 경제환경의 범세계화, 부국 및 빈국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일관성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함.
- 이 지침서는 스위스와 다른 공여국간의 원조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책임 및 개발협력의 주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이 지침서의 주요한 이슈로는 다음과 같음.
 - 평화, 안전, 인권, 민주화 및 법치주의를 강조
 - 복지실현

- 사회형평의 증대
 - 자연환경의 보호
- 스위스 원조의 특징으로는 연방의회에서 4 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연장을 실시하는 원조항목(Framework Credits)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각 항목은 원조액의 최고한계액을 가지고 있음. 현재 6 개의 항목이 있음.
- 기술 및 재정협력(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 경제 및 무역정책 조치(Economic and Trade Policy Measure)
 - 브레튼우드 제도(Bretton Woods Institutions)
 - 지역 개발은행에 참여(Capital Participation in regional development banks)
 - 중앙 및 동부유럽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
 - 국제적 인도적 원조(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 위의 항목들은 매년 예산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통해 정책수립시 좀더 개발정신에 입각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 이 항목은 처음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파기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연장됨.
- '96 년에는 경제 및 무역정책 조치에 관한 항목의 재연장을 결정하였음. 연장시 '97 년부터 4 년간 SF960 million 으로 운영됨. 그리고 이의 집행은 7-8 년정도 연장될수도 있음.

다. 조직

- 현재 스위스의 원조조직은 크게 둘로 나뉨
 - 연방외무성의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연방재무성의 FOFEA(Federal Office of Foreign Economic Affairs)
- SDC 는 기술 및 재정협력, 그리고 인도적원조를 담당하며 총예산의 75-80%를 차지함. 반면에 FOFEA 는 경제협력을 담당하며, 예산의 15%를 담당함.
- 이원화된 원조조직은 2 차세계대전후 스위스의 부흥노력에서부터 기인함. 현재 원조조직의 개편에 대한 의견이 개혁연구위원회에 상정됨.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양기관이 함께 협력해야하는 부분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라. 분석 및 실행

- 스위스의 개발원조는 주어진 전략을 실시하기위한 분석 및 집행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냄. 이것은 원조정책이 수립되는 방법, 개발협력체계와 수원국이 사용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과 접근법에 관한 문서, 그리고 NGO와의 협력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나타남.
- SDC는 현재 집중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17개의 최우선국가를 가지고 있음. 이들 국가와의 전략은 분석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줌. FOFEA는 무역 및 민간분야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정책개혁을 끌어 내기 위한 수단을 지니고 있음. FOFEA는 부채경감전략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함.
- 다른 회원국에 비해 스위스의 원조조직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된 우수한 직원으로 구성됨. 연방의회는 스위스의 원조조직이 아주 우수한 직원과 계약직원을 가질수 있도록 허락함. 이를통해 원조기관들은 우수하고 원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직원들을 충원할수 만들었음.
- 스위스의 평가방법은 참가형 접근법 및 개발협력 관련 직원의 분석에 대한 우수함을 반영함. 외부에 평가의뢰 및 자체평가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원국이 참여하는 평가도 실시. 이것은 참가형 개발원조의 통합된 측면을 나타냄. 최근에는 원조기법에 대한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마. 원조규모

- '95년 원조규모는 &1.1 billion으로써 전년대비 6%의 하락을 보여줌. 양자간원조는 72%를 차지하며, 다자간원조는 28%를 차지. '92년 브레튼우즈 협정에의 가입은 스위스로 하여금 원조의 성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 GNP 대비 비율은 0.36%에서 0.34%로 하락함.
- 스위스는 UN이 정한 0.7%를 달성한 적이 없음. 현재 스위스는 목표로 GNP 대비 0.40%를 정함.

바. 국민들의 지지

- 스위스는 NGO로 하여금 매 4년마다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음. '94년에 실시한 국민여론, 대다수는 현재의 원조 규모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를 바람.
- NGO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큰 역할을 수행함. '94년에 NGO에 대한 보조는 전체 원조의 16.5%(\$162 million)를 차지함. 이는 회원국 평균인 2%를 고려시 굉장히 높은 비율임. NGO는 최우선국가 및 타국가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국민홍보활동에도 참여함.

사. 원조의 일관성(Coherence)

- 지침서는 개도국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함. 또한 스위스정부내에도 대개도국 정책간의 모순이 있음을 지적. 더욱이 아주 미묘한 무기거래, 부패, 환경, 국내 농업분야에의 보조금지급, 수출신용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한 공개토론이 열릴 정도로 스위스정부의 일관성유지에 관한 의지는 강함.

아. 향후 과제

- 현재 이원화된 원조조직을 단일화하여 원조의 효과를 고양하는 것
- 지침서에 제시된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GNP 대비 원조의 비율을 0.4%로 확대하는 것.

참고:North-South Guideline(issued March 1994)

1. 이 지침서는 대개도국 관련 스위스의 미래 역할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협력정책에 관한 통합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구하기위해 각료급 토론 및 분석에 기초하여 만들어짐.
2. 주요환경의 변화
 - 정치, 생태 및 경제환경의 범세계화
 - 제3 세계의 종말
 - 빈국과 부국간의 새로운 상호의존
3. 전략적목표
 - 평화 및 안전유지
 - 인권, 민주화, 법치주의 추구
 - 일반 번영의 추구
 - 사회형평의 고양
 - 환경보호
4. 전략적 방향
 - 선정추구
 - 인권, 법치주의, 민주과정을 추구하기위한 긍정적인 조치
 - 분쟁목표의 인지
 - 국제적인 법에 의존을 향상
 - 개도국의 지나친 군사비 지출축소
 - 평화추구 및 보장
 - 복지추구

- 지속적성장을 위한 기본조건의 향상
- 개도국의 NGO에 대한 지원
- 개도국의 생산품에 대한 부국의 시장의 개방
- 빈곤에 대한 도전 및 사회형평의 조장
- 인구증가의 억제
- 국제적으로 잘 조정되고 일관된 인도적원조를 추구
- 천연환경의 보호
- 스위스의 지속적개발 모델의 수립
- 지속적개발을 위한 국제적 해결방안의 추구
- 환경, 무역 및 개발정책의 조화
- 경제, 무역, 외교 및 개발정책의 국제적인 조정

19. 영국(United Kingdom)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적절한 발전정책을 지향, 효율적인 시장제도 구축 및 좋은 정부설립
- 개도국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교육 및 보건향상 생산능력제고 및 환경보호 지속적개발 정책향상 및 다자간개발기구의 효율성제고

2) 무상원조기관:DFID(Department for Int'l Development)

(본부인원: 1077)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3.19 billion \$ (GNP 대비 0.27%)('96 년)(양자: 다자비율 56:44)

○ 중점국가:

-아프리카지역: Kenya, Malawi, Moambique, Zambia, Uganda, Tanzania, Sudan, Zimbabwe, Ethiopia, Ghana, Somalia, Nigeria, and South Africa.

-아시아지역: India, Bangladesh, Pakistan, Indonesia, Malaysia, China, Sri Lanka, Nepal

-라틴아메리카 지역: Guyana

○ 중점지원분야:

- 빈곤추방분야
- 환경 및 자원보호분야
- 선한통치분야 및 인권보호분야

○ 원조특징:

- '96 년에 원조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의 ODA 에서 DFID 로 바꿈.
- 또한 원조백서를 '97 년에 만들어 원조의 우선순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

나. 신정부의 빈곤추방에 대한 의지

- '97 년에 들어선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개발협력의 목표로서 빈곤추방을 표방함. 이것은 DAC 의 21 세기 전략에 나타난 목표에 입각하여 타 회원국에도 이 목표가 적용되기를 바람.
- 신정부는 개발협력담당부 장관을 임명함. 그는 각료이며 수상에게 책임짐. 이는 영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또 다른 변화는 이전의 ODA 를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격상시켜 독립적인 청으로 운영시킴.
- DFID 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국은 개발협력을 단순히 독립적인 원조정책에서 벗어나 좀더 광범위한 정책으로 격상시켰으며, 원조에 대한 관련 정책에서 일관성을 향상시키려고 함.
- 개발협력에 관한 백서(White Paper)가 20 년만에 만들어짐.

다. 원조 백서

- 백서의 제출은 영국의 시민사회 및 정부내에 개발협력에 관한 활발한 토의를 끌어냄. 백서에 나타난 빈곤추방에의 강조는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계몽화된 국익(enlightened self-interest)에 기초함.
- 영국정부는 개발협력의 효과는 수원국과의 동반자의식을 가질 때 가장 높다는 것을 인지. 또한 동반자의식이 불가능할 때 NGO 를 통한 연대의식(Solidarity)을 추구함으로써 가능함.
- 백서는 또한 수출과 관련된 ATP(Aid and Trade Provision)을 중단할 것을 선언함.
- 영국의 새로운 개발협력의 중점인 빈곤추방의 개념은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시민의 참여와 권리, 또한 환경적인 측면 및 여성의 권리향상까지 포함함.
- 백서는 빈곤추방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어떻게 추구되는가, 그리고 DFID 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하는가에 관해 언급함.

라. 일관성(Coherence)

- 백서는 환경, 무역, 농업, 투자, 선정, 인권, 부채경감, 재정안정, 마약, 이민, 및 문화적 연결에 관한 모든 정책에 일관성원칙을 수립함.
영국에는 일관성을 추진하기위한 여러 수준의 mechanism 을 가지고 있음.
- 국제협력에 관해 새롭게 설립된 영국의회의 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해서 청문회개최, 문제점의 이슈화 및 원조정책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음.
개발협력담당 장관은 각료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의 일원으로써 의견을 제시함. 예를 들면 무기판매권의 신청과정에 DFID 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기판매에 대한 일관성의 유지와 관련됨.
- DFID 내에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회의시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이나 관련 예산이 강화됨. 특히 무역, 농업 및 투자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이 설립되었으며, DFID 내의 EC 담당부서는 EC 회원국내의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을 담당함. 참고로 DFID 장관은 World Bank 의 Governer 였음.

마. 빈곤추방

- 빈곤추방관련 현재 쟁점중 하나는 백서에 제시된 빈곤을 확인하고 이의 영향에 대한 검증임. 물론 영국의 원조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빈곤추방과 관련이 있지만 과거의 이에 대한 기획, 실시, 평가보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현재 이를 위한 몇 개의 조치가 실시되고 있음.
 - 예전의 빈곤층을 단순한 원조의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벗어나 환경, 자원, 선정, 사회개발, 성의 평등, 인구 및 보건, 민간분야에서 능동적인 역할자로서의 접근법
 - 빈곤추방에 사용되는 PRISM(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System for Management)
 - DFID 내.외에서 HAPAE(Health and Population Aid Effectiveness Project), SCOPE(Social Development System for Co-ordinating Poverty Eradication)과 같은 분야에 조직적인 교훈이나 네트워크의 개발
 - 영국원조에 있어서 빈곤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바. 원조의 효과성

- DFID 는 원조의 효과측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이의 평가체제는 보고서와 합동연구로 구성되어있는데, 잘 발달되어 있으며 독립적임. 그러나 '95 년 평가의 환류에 대한 3 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이 부딪치는 문제점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응답을 하는 것
- 빈곤추방을 포함한 각 분야의 프로그램의 영향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안을 고안
- NGO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향상

사. 원조관리

- 영국은 양자간원조가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민간기업과 같은 성격을 지님. 특히 사회발전, 교육, 보건/인구, 자원/연구.환경 및 정부제도분야에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DAC의 21세기전략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지님.
- DFID의 잘 분권화된 조직 즉 현장에 있는 개발부(Development divisions)와 직원(aid management offices)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원조의 효율성을 고양하기위한 동반자의식을 강화함.
- DFID의 전신인 ODA의 내부규정이 잘 조직화됨. 이는 DAC의 원칙에 기초함.
- 원조관리에 관한 DFID의 접근법은 다음에 열거한 분야에서 분명하게 나타남.
 - 공표된 목표가 전체 조직, 특히 프로그램 기획, 성과 측정과 같은 부분을 관리하는 원동력을 제공
 - 정보제공체계에 대한 강조는 DFID의 분권화된 조직체계를 떠받치고 있음
 - 공여국중심의 원칙보다는 수원국중심의 원칙에 의한 프로젝트의 고안
 - 분야별 전문가직원들이 본부와 현장에서 활용됨
 - 새로운 개발분야 및 수원국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로써 기술협력 전문가를 충원하는 잣대로 정함
 - NGO와의 Joint Funding Scheme(JFS)을 채택
 - 회원국중 가장 발전된 원조통계체제 및 자료의 양질
- 그러나 원조관리에 있어서 2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즉 직원의 전체수가 부족하다는 것임. 현재 DFID의 직원수는 1077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99-2000에는 1000이하로 감소될 예정임. 이는 예산이 증가하고 백서에서 공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다음으로는 DFID의 대국민,대수원국, 그리고 대회원국가에 대한 정보의 공개문제임. 지난번 검토회의시에 지적되었지만 국별원조계획은 외부에 공개되지않으며, 내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음. 그 이후에 정보공개

관련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원조의 조정이나 수원국과의 동반자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아. 민간분야

- 개발협력장관은 백서에서 민간분야의 발전은 지속적발전의 통합된 부분임을 선언함. 이와같은 정신이 백서에 반영됨. 영국의 원조정책은 잘 운영되는 국가와 잘 기능되는 시장과의 동반자의식이 빈곤추방에 필수적임을 인지. 이를 위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음.
 - 영국의 무역, 환경, 투자 및 수출금융정책은 개도국의 민간분야발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들 정책간의 일관성유지
 - 수원국의 선정 및 정책개혁을 위한 능력개발 그리고 투자환경의 향상
 - 민간분야관련 조직 및 회사의 능력개발
 - NGO 에 의한 중.소기업을 발전하기위한 제안들
 - 빈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사회책임과 수원국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을 인지. 이를 위해서공정노동 표준, 아동노동법, 환경관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무역 및 투자, 재정적 의무, 윤리적 무역을 위한 행위규범
 - CDC(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으로 하여금 수원국 스스로 자신들의 자영업자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

자. 원조규모 및 예산

- 영국은 백서에서 규모로 UN 이 정한 0.7% 목표를 설정함. 그러나 '97/'98 년 2 년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사항에서 볼 때 조만간 예산이 증가될 여지는 없음.
- '96 년에 규모는 0.27%로 '90 년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96 년에 \$3.2 billion 이며 이는 절대액 규모에서는 회원국중 6 번째이고, GNP 비율로서는 14 번째임.
- 예산규모의 경직성 때문에 영국정부는 예산을 백서에 나타난 새로운 원조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재 분배하고자 하며, 특히 향후 증가하는 예산은 새로운 원조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차. 조달, 비타이드원조 및 ATP(Aid and Trade Provision)

- 영국의 조달에 관한 체계는 아주 조직적임. 또한 최근에 SPA(Special Programme of Assistance to Africa)에 대해서 비타이드로 하기로 하는등 조달에 있어서도 좀더 자유로운 입장을 추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타이드율은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가지는 못함.

- '96 년에 타이드원조와 영국경제에의 효과분석은 아주 흥미있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음. 즉 일방적인 비타이드원조는 영국의 수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반면에 원조계약자에게는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나타냄. 그리고 영국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함. 현재 여러형태의 예외를 두면서 운영되는 조달관련 비용과 행정운영을 감안시 원조를 완전히 비타이드하는 것이 영국의 수출업자에게 어떤 비용도 물지 않고 공여국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도할수 만듦.
- 혼합금융(Mixed Credit)이나 연성차관(soft loan)을 개발목적과 연계되는 산업 및 상업적목적에의 프로젝트에 연결시켜주는 ATP 는 '90-'96 평균 전체 양자간 원조의 5.9%를 차지함.
- '92 년에 제정된 소위 헬싱키페키지는 ATP 관련 프로젝트의 수를 경감함. 정부는 백서에서 ATP 의 폐지를 선언하며 현재 이 페키지의 실시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함. 이것은 백서에 나타난 원조의 주목적이 빈곤 추방이라는 선언의 정신과 일치함

20.미국(United States)

가. 기본개요

1) 원조이념

- 개도국의 경제발전달성
- 개도국의 환경보호달성
- 개도국의 민주주의 구축
- 개도국 주민의 보건 및 인구감축달성

2) 무상원조기관:US AID (본부인원: 2469, 해외직원: 7173 (현지고용인 포함))

3) 주요특징:

- 원조규모: US 9.06 billion \$ (GNP 대비 0.12%) ('96 년)(양자: 다자비율 76:24)
- 중점국가:

-아프리카지역: Burkina Faso, Botswana, Cameroon, Cape Verde, Chad, Cote d'Ivoire, Lesotho, Togo, Zaire

-아시아지역: Afghanistan, Pakistan, Papua New Guinea, South Pacific

Regional, Thailand

-라틴아메리카 지역: Argentina/Uruguay, Belize, Chile, Costa Rica,

Caribbean Regional

-중동국가: Oman, Tunisia

○ 중점지원분야: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에너지분야

-인구 및 보건분야

-교육분야

나. 원조정책의 변화

- 미국이 개발원조에 있어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현재 이 프로그램들이 국내의 심각한 비판과 압력에 처해 있음. 오랜 기간동안 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감소 및 분열된 여론을 통해 미국은 다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국민적지지를 강화할 기회를 가지게됨. 공공부분을 향상하고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의 일환으로 AID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AID는 개혁의 우선순위 분야로 원조관리 체제와 정해진 목표와의 연계, 강력한 동반자의식의 추구, 수원국의 능력배양, 남녀평등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 수원국이 세계경제주체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위해 도움을 주는 것 등임. 이와같은 개혁은 현재 진행중인 국제정치,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기도 함. 현재 타 회원국에서 행하고 있는 것 처럼 최근에 실시한 제안이나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
- AID 관리들은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와는 별도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한 원조규모 증대계획의 실현시기에 대해서는 미확정
- 타 회원국들은 현재의 미국 원조규모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원조규모의 증대를 위해서는 미국 정치적 지도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봄.

다. 전략적틀 및 결과중심주의

- 미국 원조의 주요한 요소중 하나는 정부 성과 및 결과법안(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임. 이는 모든 미국 정부조직이 자신의 성과 측정목표를 설정하며, 매년마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전략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임. 미국의 원조관련 조직들은 연방정부의

- 결과 중심에 대해 강조점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 및 기관간에 전략적계획을 조화시키려고 함.
- 케네디 대통령시 입안된 대외원조법('61) 이후 AID는 미국의 양자간 원조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써 수원국의 지속적개발, 인도적원조를 담당하고 있음.
 - 다른 원조관련 조직으로는 재무성(국제금융기관에의 출자), 국무성(UN 관련 기관, 약간의 인도적 및 구호원조), 평화봉사단, 국방성(제한된 인도적원조), 농무성(식량원조의 예산담당, 그러나 대부분이 AID를 통해 집행됨)이 있음.
 - 정부 성과 및 결과법안에 따라 AID는 전략적계획을 제시함(Strategic Plan: 1997)
 - 전략적 계획은 AID의 6대 목표를 수립함.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위한 잣대가 만들어짐.
 - 광범위한 경제성장 및 농업분야발전 촉구(Broad-based Economic Growth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Encouraged)
 - 민주화 및 선정의 강화(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Strengthened)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Human capacity buil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 세계 인구의 안정 및 보건문제(World's population stabilized and human health protected)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계 환경보호(The world's environment protected for long-term sustainability)
 - 인명구조, 재난 및 인재난의 경감, 정치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조건(Lives saved, suffering associated with natural or man-made disaster reduced, and conditions necessary for political and/or economic development re-established)
 - AID는 미국의 가장 큰 양자간원조 기관으로써 5개의 관리 가치를 재확인
 - 수원국중심(Customer Focus)
 - 결과중심(Results Orientation)
 - 책임성(Empowerment and Accountability)
 - 동반자의식(Teamwork)
 - 다양성(Diversity)
 - 전략적 계획틀에 명확성, 그리고 이의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측정잣대는 의회와 국민들에게 원조에 대한 가치나 효과를 알려줌
 - 이는 DAC에서 강조하는 동반자전략과 일치함. 특히 이 전략틀은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AID의 측정장대는 장기적인 DAC의 목표에 대한 시금석역할이 될수 있음.

- 광범위한 전략에는 2007년까지 세계의 빈곤층을 25%로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됨. 이것은 DAC의 목표가 회원국의 원조정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빈곤완화라는 목표는 AID의 광범위한 경제성장 및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목표에는 간접적으로 언급됨.
- 빈곤완화를 위한 체계적이며 비목표화 전략을 적용하면서 미국의 접근법은 빈곤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측정, 영향력의 예상 및 평가, 그리고 상호 다른 접근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우선순위를 둠.
- 다른 회원국들은 이와같은 기법의 적용을 통한 방법론과 영향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법을 향후 적용하고자 함.

라. 동반자의식과 능력배양

- 미국은 동반자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NPI(New Partnerships Initiative)를 실시. NPI는 지역수준에서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동반을 위한 기술이나 방법임. 여기에는 AID와 동반자인 수원국내의 지역 공무원, 시민사회, NGO와의 팀을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실시코자 함.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이를 통해 좋은 효과가 발생한것으로 보고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음
- 미국에서 PVO/NGO(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은 아주 큼. '97년에 PVO/NGO가 받는 기부액은 AID의 \$1.4 billion 보다 4배가 많은 \$6billion 임. 이의 역할은 새로운 동반자의식을 강조하는 신 전략모델에서 더욱 높아짐. AID는 현재 이들을 통해 예산의 30%를 사용함. 그리고 향후 이 비율을 40%까지 높이하고자함.('95년 사회개발 정상회담에서 Al Gore 부통령이 선언하였음.)
- 동반자의식에서는 수원국의 능력배양이 주요한 분야임. 이 주제는 이미 경제발전을 촉진하거나 시장경제를 뒷받치고 있는 제도 및 체제 강화를 위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음. 이 것은 또한 여성을 포함한 빈곤층을 위한 프로그램과도 연결됨.
- AID는 예전부터 여성을 포함한 상위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기초교육에도 많은 우선순위를 두며, 여기에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최우선순위를 둠. 능력배양은 민주화 및 선정, 환경관리, 재해방지프로그램의 부분임.

마. 원조조정

- 미국은 여러 원조 조정회의에 참여함(DAC, World Bank Consultative Groups,

Special Programme of Assistance to Afric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Round Tables, Global Coalition for Africa, Club du Sahel,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 Development). Japan-US Common Agenda and New Transatlantic Agenda 는 미국의 일본 및 EC 와의 원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임.

- 원조규모가 점차 줄어가는 점도 미국이 원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하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AID 의 전략적계획에 나와있는 결과중심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다른 조직과의 원조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냄.
- 미국처럼 전세계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조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님.

바. AID 의 개혁 및 구조조정

- '93 년 고아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국 정부의 관리개혁안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를 따라 AID 는 업무과정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에 의해 성과 및 수원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NPR 에 기초하여 AID 는 다음의 부분에 많은 노력을 실시.
 - 조직의 군살빼기 및 직원들의 능력배양
 - 절차의 재구성 및 단순화
 - 해외사무소 및 전체 직원의 축소
 - 세계와 연결된 정보망 구축
- 원조의 주요한 가치를 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며, 결과중심 및 조직정비는 효율적인 개발협력에 좋은 효과를 줄 것으로 측정함. 그러나 해외사무소의 축소는 토론이 요구됨. 해외사무소의 폐쇄는 여러가지 이유 즉 안전, 정치적이고려, 수원국의 원조국 졸업, 나쁜 결과, 정치적 불안정, 법적인 요구, 수원국의 인구가 있음. 그러나 해외사무소의 축소는 AID 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함.
- AID 의 최근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르면, 현장인력은 거의 감축하지 않고 현재의 700 명 수준으로 동결코자함. 반면 본부인원이 감축대상에 들어 있음. AID 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원국적 직원을 활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수행케 함으로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함. 현재 AID 는 현지고용 직원이 4200 명이며, 대부분이 아주 전문적이며, 현장의 사업실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 민주화, 선정, 분쟁 및 재해관련

* 민주화

- 민주적인 제도구축, 자유롭고 열린 시장, 평화적이고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가진 다원화 사회는 지속적개발의 기초로 인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원조행위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60년대, '70년대에 이와 비슷한 작업이 수원국 정부의 행정의 강화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된 적이 있음. 그러나 이후 기존의 프로그램의 성격은 '80년대에 들어와 많이 바뀌었으며, 활동도 민주적인 제도구축 및 선정으로 재조정됨.
- 민주화 및 선정 주제는 현재 AID의 6대 목표중 하나로 중요성을 부여함. 현재 AID는 90개 국가에 이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며, 특히 법치주의의 강화, 인권보호, 정치과정의 향상, 시민사회의 형성, 정부가 좀더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두고 있음.
- 현재 AID는 목표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잣대를 개발중이며, 몇 개의 예를 들어 이를 범주화 하고 있음. 예를 들면 AID는 EC와 New Transatlantic Agenda를 통해 함께 이 주제에 대해 협조하고 있음.

* 재난

- 미국은 천재 및 인재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전통을 가짐. AID의 인도적 원조담당국내 대외원조 담당관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피난민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담당하는 국무성 및 이에 대한 병참업무를 담당하는 국방성과 밀접히 협조하고 있음.
- AID는 지속적성장이 가능토록 인도적 원조를 인명구조, 교통의 감소에 둬.
- 또한 식량의 위기가 존재가능한 지역에 FEWS(Famine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재난을 최대한 축소 하고자 함.

* 분쟁관련

- US Transition Initiative는 분쟁과 개발사이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임. 분쟁후 관련 국가에 대한 단가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필요 및 군인들의 사회재통합, 선거준비, 선정 및 민간의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함.
- 미국은 DAC의 Guideline on Conflict,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입안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아. 여성지위

- AID 는 이 주제에 있어서 예전부터 타회원국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함. Global Bureau 내에 WID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음. AID 는 자체의 WID 관련 제안을 실시하고 타 기관에 조언을 하고 있음.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본부 및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조하고 있음. 이는 모든 AID 에서 요청되는 이 주제에 관한 의문이나 질의에 대해 적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케 함.
- '96 년에 제작된 The Gender Plan of Action 은 AID 의 20 년 경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AID 가 이 주제에 관해 제도적인 구축을 의미하며, 직원들은 이 주제를 매 업무시 고려함.

자. 환경

- AID 의 환경전략은 장기적 지속성의 입장에서 전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감소하는데 있음. 여기에는 생태적 다양성을 보존, 공기오염을 포함한 지속적인 도시화, 친화적인 에너지 증가,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
- DAC 의 case study 는 미국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고려가 최근 5 년간 강화되었으며, 전략적계획에 잘 통합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함. 반면에 이 보고서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환경전문가가 현장에도 활용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함.

차. 효율성, 평가 및 결과중심의 원조

- AID 는 원조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보를 결과중심의 원조로 환류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음. 평가에 대한 교훈은 AID 의 CDIE(Center for Development Information and Evaluation)에 집합됨. CDIE 는 다른 부서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해주고 있으며, 책임자들에게 가장 최신화된 연구물, 분석 및 경험을 제공함.
- AID 의 성과측정 체제는 전략적 계획에 의거하여 각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잣대를 통해 결과를 측정함. 그러나 현재 NMS(New Management System)은 완전히 체계화된 것이 아님.

카. 다자간 원조

- 현재 미국은 IM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MDBs)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재무성의 IFIs(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이며, UN 이나 다른 국제기구는 국무성에서 AID 처럼 전략적계획에 의해 실시함. 미국은 이들에 대한 최대 규모의 출자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책 및

정보제공에도 기여함.

- 재무성의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Programme('97)은 광범위한 지속적 개발과 시장중심정책을 지지하며 IFI의 개혁을 추구함. 미국의 해외주재 대사관이나 해외주재 AID 사무소에서는 향후의 MDB 프로젝트나 세계은행의 국별계획 전략에 대한 정보를 재무성이나 AID에 보고하는 Early Project Notification System를 가지고 있음. 특히 이 체제를 통해 MDB들이 환경에 대한 증대된 관심을 갖게 만들
- 국무성의 International Affairs Strategic Plan('97)은 다자간 원조기관의 활동이 민주화, 분쟁방지, 인권보호 및 법치에 치중하도록 목표를 설정. 또한 국무성의 AID와 함께 세계 인구의 안정 및 다자간 원조의 활동이 인구관련 분야에로 갈수 있도록 함. 또한 이들의 역할이 보건, 전염병의 확산방지, 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에 있음. 이 분야는 AID도 현재 특별히 많은 중점을 두고 추진함.
- 또한 다자간 원조조직에 대한 개혁과 효율성의 고양에도 우선순위를 부여
- 현재 미국은 UN이나 국제금융기관들에 대한 미의회의 회의적인 태도로 인해 분담금의 중단상황을 맞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체된 금액에 대해 미 행정부는 '99년 예산에 이를 반영했지만 의회이 동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함.

타. 정책의 일관성, 내부조정: 과정 및 실체

- 미국은 각종 정책이 개도국의 개발전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더욱이 미국의 원조규모 비율이 타 회원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미국은 개발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미국은 현재 원조조정을 위한 몇가지 대안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각 원조 담당기관에 의한 전략적 계획의 도입이 수평적인 원칙과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게 함. OMB의 지침아래 국무성의 대외관련 예산에 대한 지도력이 강해지고 있음.
- 원조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각 부처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됨. Ferris Commission Report('92), Wharton Report('93),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97). 반면에 현장에서는 해외주재 대사가 원조 조정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
-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목표는 미국의 세계 무역 및 투자체계, 개도국의 세계경제에의 통합에 대한 시장경제적 접근법, 원조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측정 하는 것임. 이와같은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노력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파. 예산 및 원조규모: 부족한 자원

- 현재 미국의 경제규모는 DAC 회원국 전체의 GNP 중 30%를 차지. 그러나 원조규모는 17%임. 미국의 국민 일인당 원조담당액은 \$31 이며, 이것은 회원국중 상위 4 개국의 일인당 \$257 의 1/4 이며, 회원국 평균인 \$71 보다 낮은 수치임.
- 미국의 GNP 대비 원조비율은 0.12%임. (회원국 평균 0.25%). 이것은 4 년째 회원국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96 년 원조규모는 \$9377 million 임. 이것은 10 년째 원조규모면에서나 비율면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더욱이 '95/'96 양자간 원조의 30%를 차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스라엘은 DAC 기준에서 볼때 수원국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음)에의 원조가 더 이상 '97 년부터 ODA 로 계상되지 않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낮아짐.
- 미국의 원조통계에 대한 질적인 측면은 각 부처마다 서로 다름. 예를 들면 상무성에 의한 원조공여에 관한 수치는 적시적이고 아주 높은 질을 지님. 그러나 AID 의 프로젝트 약속액, 타이드올 및 분야별 원조액에 대한 통계는 약하고, 또한 보고되지 않는 부분도 많음.
- 미국의 원조규모에 대한 낮은 수치는 미국 예산항목중 국제관련 항(International Affair Accounting)이 ODA 를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미국민들은 이 항목의 엄청난 예산이 원조로 여기기 때문임. 그러나 실제로 미국민들의 대부분이 원조규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 현재 AID 는 국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 PVOs/NGOs 를 활용하며, 그리고 "Lessons without Borders"를 활용함. 그러나 의회는 '98 년에 이 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함. 그러나 미국 원조담당 기관들의 개혁에 못지않게 미국 원조의 성과 및 인도적원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II.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II. 우리의 국제협력 방향

1. 원조정책: 전략적 틀

가. 회원국의 양태

- DAC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체의 원조관련 전략적인 틀을 지나고 있음. 그 형태로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법률을 가지는 경우, 정부에서 공표한 정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원조실시 조직의 내부 정책으로 수립되는 경우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남.
- 먼저 법률로 정해진 경우의 장점으로 첫째,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가장 강하며, 둘째, 개도국에 자국의 원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셋째, 법률로 원조의 목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조정책의 일관성, 조정이 용이하고, 넷째, 국민의 원조에 대한 인식 및 지지도 강하다는 것임. 그러나 이의 문제점으로는 원조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원조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임.
- 둘째, 정부에서 공표한 정책의 경우 장점으로 첫째 정부의 원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세계에 표명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둘째, 원조정책에 대한 방향수정이 첫째의 경우보다 용이하여 원조의 신축성이 가능하며, 셋째, 원조정책의 조정에 있어서 더욱 유리함.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부가 바뀌는 경우 기존의 정책에 대한 방향이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조의 일관성 및 계속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원조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을 가짐.
- 셋째, 자체 기관에서의 내부 정책으로 정해지는 경우의 장점으로 정부 및 의회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황에 맞게 원조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둘째, 원조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그 책임을 타 조직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임. 반면에 단점으로는 원조정책 수립시 의회 및 타 정부부처로부터의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둘째, 타 정부 조직과의 원조정책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셋째, 의회로부터 원조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원조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위에서 언급한 회원국들의 양태를 보면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둘째 대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려됨. 이 형태는 현재 우리와 원조조직 및 정책의 유사성이 높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경우임. 일본은 '92년에 각의의 결정으로 원조대강(ODA Charter)을 공표하여, 원조의 기본 목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전세계에 공표하였음. 현재 일본은 이 원조대강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 부처이기주의가 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원조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음.

- 현재 다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의 교체가 심한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기 보다는 국가가 공표한 정책을 통해 원조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정치권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자체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강 속에 원조정책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들 정당이 정권 획득시 자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변경에 대한 신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가장 높은 첫번째 대안에 대해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임.
- 현재 우리가 지닌 문제점으로는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낮은 인식, 원조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들의 낮은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조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둘째 대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전략적 틀의 내용

- 일반적으로 전략적인 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먼저 원조의 기본목표, 나아갈 방향,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구성됨. 그러나 각 국가마다 포함된 내용은 상이함. 예를 들면
- 호주, 이태리, 일본, 스위스의 경우에는 기본목표, 나아갈 방향, 중점 추진분야,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에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목표,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있는 반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각 담당기관의 정책으로 맡겨져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기본목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적시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담당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근거로는 첫째, 양자간, 다자간 및 증여, 차관에 대한 담당부처가 상이한 경우 각 정책의 성격 및 상이한 시행과정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일관성유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원조의 기본목표로는 대부분의 DAC 국가가 개도국의 빈곤완화 및 자조 노력에 두고 있음. 이는 '96년에 DAC에서 채택한 "21세기 전략"에

기초한 것임. 즉 “ownership”, “partnership”이라는 대명제 속에 개도국의 빈곤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목표, 경제적목표, 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한 및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므로 우리의 나아 가야할 방향도 DAC 의 “21 세기 전략”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함.

- DAC 회원국들은 중점추진 방향으로 자국의 비교 우위분야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두고 있음. 이를 통해 각 국가들은 수원국 및 타 공여국에게 자국이 나아 가야할 방향 및 분야에 관해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이는 각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시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알릴게 함.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원조의 경험,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우리 고유의 분야를 구축하고 이를 원조대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분야의 전문화, 직원의 경험 전문화, 신속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책수립과정에 투여되는 시간 및 노력을 최소화하게 함.
- 원조의 규모에 있어서는 각국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선언한 국가도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조규모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수준에 만족함. 그러나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자국의 향후 원조규모에 대한 예측의 수준임. 그 이유로는 향후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기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회피코자 하는 것임.
- 우리가 대외적으로 원조 규모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협의과정 및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부담이 되리라 보지만, 원조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을 위해서는 다른 DAC 국가처럼 향후의 원조규모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사정이 허락하는한”이라는 단서조항을 첨가하여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됨.
- 원조의 국별 배분에 있어서는 DAC 회원국들은 최우선 원조대상국을 지정하여 원조의 집중화를 실시하고 있음. 배분기준으로는 먼저 DAC 에서 제정한(가장 최근의 DAC list 는 '97 년에 발표됨) 최빈곤국가(LLDC) 혹은 기타 빈곤국가(LIC)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그러나 실제의 국별 배분 양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의 정치.경제, 사회 및 역사적유대 관계가 있는 국가에 최우선 지원을 실시 하고 있는 경향을 지님.
- 일본의 경우 정치. 경제적 관계가 높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원조대강에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적시하여 대외에 공표함. 프랑스의 경우도 자국의 과거 식민지, 자치령국가, 그리고 francophone 국가에 원조의 75%이상을 배분하고 있음.

- 위에 언급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우리도 원조대강에서 우리와 지리적,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원조에 대한 국별 집중화를 가능케함.
- 일반적으로 DAC 회원국들은 가능한 많은 국가에 작은 규모로 원조를 제공하는 분산화정책이 원조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잘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시 여러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원조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조정책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 공여국과의 선별성이 부각되는 것임. 현재 각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아프리카 제국의 정치불안 및 수원국의 흡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잘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국내 언론기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된 주요 원인임.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각 수원국의 경제발전수준이 높으며, 특히 이 지역국가의 흡수능력이 타 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도 더욱 높아질 수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특히 동남아 지역은 향후 선진국을 제외한 우리의 가장 안정적인 상품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진국 민간자본의 투자를 가능케함. 이는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유도케 할뿐만 아니라 또한 공여국 자신이 함께 그 발전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향유케 만듦.
- 현재 아프리카를 비롯한 최빈국가들은 원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접수를 통해 원조의 습관성에 길들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원조의 기본 목표인 자조노력의 향상에 반하는 방향임.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지 못하며 원조의 효과도 계속 지속될 수가 없음.
- 원조 정책의 방향도 각 수원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이는 원조의 효과 고양에도 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도출하게 함.

2. DAC 지침 준수 여부

- 현재 DAC에서는 여러 개의 지침 및 권고안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원조 정책의 효율성제고에 힘쓰고 있음. 이는 각 회원국의 원조실시에 효율성을 부여케 만들었으며, 특히 시행에 있어서 각국이 지켜야 하는

규범을 통하여 원조실시의 표준화를 고양케함.

- DAC은 '92년에 예전에 제정한 각종 지침 및 권고를 중심으로 “DAC Principles for Effective Aid”로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대수원국 원조조정, 프로젝트 평가, 기술협력, 프로그램원조, 여성개발, 환경영향평가, 조달, 조건부원조, 원조평가에 관한 지침 및 권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 DAC/DCD는 Peer Review를 통해 각 회원국들이 이 지침 및 권고안에 대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Peer Review 회의를 통해 이를 보고토록 함.
- DAC 회원국들이 원조업무를 실시한지 40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많은 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 지침 및 권고를 준수하는 수준에 비교하여 아직까지 원조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이를 국내 원조실시 기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권고 및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현재 우리의 준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가 있어야 함. 이는 향후 우리가 DAC의 회원으로 정식 가입 신청시 이 지침 및 권고안에 대한 우리의 실시여부가 DAC 회원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임.
- 우리의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기위한 행동지침의 중.장기적인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규정의 제정, 내부지침, 또한 필요 시 법의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임. 특히 전혀 이 지침이나 권고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또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시 더욱 세심한 협의가 요구됨.
- 특히 환경평가, 조건부 원조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님. 특히 100% 조건부 원조를 실시하는 우리의 경우는 비 조건부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요구되며, 이는 많은 비판과 상반된 의견이 국내의 여러부처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환경 평가는 '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세가 필요함.
- 현재 DAC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Working Party)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인 주제로는 “원조평가”, “LLDC 국가에 대한 100% 비조건부 원조실시”, “여성개발”, “환경관련 사항”, “좋은 정치 및 민주화 추구”, “부패방지”, “분쟁방지 및 복구”와 같은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 또한 '96년에 제정된 “21세기 전략”의 구체화 및 확인화등임.
- 우리는 DAC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단순히 경청하는 정도이며 회원국이 정식으로 합의한 지침의 준수의무는 지니지 않음. 그러나 각 주제에 대한 배경 및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원조조정, 개발전략 및 국별 원조계획

가. 원조조정(Coordination)

- 원조조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즉 대외적인 측면에서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사업에 관한 조정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원조실시 기관간의 조정임.
- DAC는 “21세기 전략”에서 공여국들에게 원조에 관한 조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특히 각국마다 원조형태, 같은 형태라도 상호 다른 진행절차, 분야등에 있어서 조정이 되지 못한 것이 원조의 비효율성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현재 각 공여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국이 자신의 원조방법 및 수단을 고집하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조정이 잘 이루어 지지 못함.
- 대내조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남. 즉 대다수의 원조업무가 외무성이나 외무성의 산하기관이 실시하기 국가에서 대내조정이 쉽게 이루어 지는 경우, 원조의 정책 및 실시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독일의 경우), 원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원조 정책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내조정이 용이한 경우가 있음. 반면에 원조담당기관이 많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대내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들 수 있음. 특히 원조수단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다를 경우 각료급 원조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대내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우리의 경우 일본처럼 무.유상,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실시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조조정이 용이한 것은 아님. 특히 무.유상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부와 재경부간에 원조관련 업무협조가 업무성격의 차이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음.
-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상으로 무.유상을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교부와 재경부간에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원조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과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대외 조정의 경우 우리는 대외 원조기관(World Bank, UNDP, CIDA, JICA, UNIDO)등과 공동사업을 실시하거나 양자간 원조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음. 향후에는 더욱 많은 양자 및 다자간 기구와의 업무협약 및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로 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원조 심사시 대외 원조 조정노력에 대한 많은 회원국들의 관심 때문에 다른 공여기관과의 조정 업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나. 개발 전략(Development Strategy)

- 일반적으로 공여국들은 수원국에 대한 개발 전략에 기초하여 관련 수원국에 대한 원조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개발 전략은 국별 원조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이는 기존의 국가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환경의 차이성을 고려치 않고 원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각 수원국의 차별성에 기초한 사업을 실시하여 원조의 효과를 배가하고자 하는 의도임.
- 핀란드의 경우 원조의 실시에 있어서 해당 수원국의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효과분석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는 원조효과의 증대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현재 많은 국가는 GNP를 기준으로 DAC에서 제정한 수원국 list를 중심으로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LLDC, LIC 국가를 최우선 국가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원조를 집중화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LLDC(LIC 포함), UMIC, HIC 국가들에 대한 원조전략을 차별화함. 예를 들면, LLDC 국가에는 인도적 원조 및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원조를 실시하며, UMIC 국가는 기술협력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원조를 실시하여 외국 민간 자본 유입을 가능케하는 경제 및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반면에 유럽제국들은 원조의 효과를 제고키 위해 각 공여국이 지닌 비교 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원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원조기관들의 원조분야 축소로 나타남. 특히 EU의 통합으로 현재 DAC의 21개 회원국중 14국이 이 기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간의 원조조정은 예전보다 용이하리라 판단됨.
- 현재 우리의 경우 요청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사업규모에 비해 원조실시 분야도 많음. 그러나 EU 국가들이 나아가는 방향처럼 우리도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있고,

-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이 된 “학교건설 및 직업훈련 관련 분야”, “병원건축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 개발분야”를 우리의 중점 협력 분야로 정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우리의 특화분야를 개도국이 인지하도록 수원국과의 원조협이나 정책대화를 활용해야함. 특히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 정부가 관련 분야만 요청케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배제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고양케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원조사업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 유.무상 연계를 확대하고 있음. 이는 원조조정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음. 특히 우리의 경우 무상원조의 1건당 규모가 작은 경우 사업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와의 연계가 필수 적임. 그러므로 유.무상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다. 국별 원조계획 실시(Country Programming)

- '90 년대에 들어와 각 공여국들은 여론의 원조효과에 대한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즉 원조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원조의 사이클에서 Logical framework 의 의무적 사용, 그리고 국별 원조계획의 실시를 들 수 있음..
- 국별 원조계획은 해당 수원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국가에 적합한 중,장기적 원조정책의 수립 및 실시라고 정의할 수 있음. 특히 DAC 가 설정한 개도국의 범주가 GNP 에 기초하여 크게 4 가지로 설정된바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국가를 동일시 간주하며 각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함.
- 국별 계획은 이와 같은 범주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원조의 효과를 고양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봄.
- 현재 각 공여국은 대부분 국별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차별화됨. 그러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국별 계획에서 공통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 수원국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그 국가의 경제 발전계획 및 우선순위 파악, 공여국의 나아갈 원조 정책 및 문제점, 타 공여국의 원조에 대한 실태 및 분석임.
- 반면 회원국중에는 국별계획내에 시기별 구체적인 원조 사업 명시 및 원조규모를 명시하기도 하며, 다른 회원국은 예산이 확보된 후 이를 해당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결정하기도 함.
- 또한 국별 계획을 작성시 관련 수원국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수원국의 의견은 단순히 참고 정도에 거치는 국가(일본, 프랑스, 독일), 마지막으로 수원국의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수립하는 국가로 대분 할 수 있음.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DAC 의 “21 세기 전략”에서 강조하는 “동반자의식(Partnership)”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국가임. 이는 수원국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그들이 가장 원하는 분야를 국별 계획에 반영케 하여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만듦.

- 국별 계획의 문제점으로는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공여국과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하는나 하는 것임. 또한 국별 계획에서 다년간 사업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국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관련 수원국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형편상 시기 상조로 판단됨.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각 중점 협력 국가에 대한 경제 및 사회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립은 반드시 필요함. 이를 근거로 관련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시, 유.무상연계 회의와 같은 원조의 조정업무 수행시, 그리고 관련 수원국의 요청주의에 입각한 현 원조정책에서 벗어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하게 만드는 상호요청주의를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단계적이라도 국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4. 원조평가

가. 선진국의 현황

- '90 년에 들어와 DAC 회원국들의 원조정책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원조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임. 이는 원조효과에 대한 언론, 국민들의 점증하는 회의 및 예산의 점차적인 감소라는 어려움속에 원조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문제점이 파악된 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원조평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됨. 먼저 지금까지의 원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본래 목표와의 대비를 통해 성취도를 측정 하는 것임. 또 다른 목적으로는 원조실시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의 모색임.

- 첫번째 목표의 경우 기본 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함. 이는 사업의 성취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잣대이며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책임성과 관련되기 때문임. 먼저 기본 목표를 설정할 시에는 반드시 내부적인 의견청취 및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 주목적인 평가는 평가 실시후 그 결과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 및 활용이라 볼 수 있음. 이는 직원에 대한 책임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문제해결 및 노하우의 축적에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임.
- DAC 회원국들은 원조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먼저 원조 기관내에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투입하였고, 또한 원조효과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계약을 맺어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도 하며, 그리고 평가기법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경험 및 노하우의 공유를 실시함.
- 특히 각 회원국들과 다자간 원조기관들은 원조평가를 합동으로 실시하기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World bank, UNDP 와 합동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CIDA 및 UNDP 와 합동 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평가의 의미가 개개인에 대한 성취도 측정 도구로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지지를 얻기가 힘들며, 또한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90 년에 들어와 높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계량적인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기법이 체계화 되지 못하였고, 고위직을 포함한 조직내 임원들로부터 평가에 대한 관심 및 지지도가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임.
- OECD/DAC 에서도 원조평가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모여 전 회원국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 및 권고를 하고 있음.

나. 우리의 현황 및 향후 방향

- 현재 한국의 경우 사업평가 단계는 기초적인 수준임. 예를 들면 무상협력의 경우 각 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토록 체계화 되었지만 기본목표에 대한 달성정도를 계량화 및 비계량화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는 단계임.
- 문제점으로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기법 및 노하우가 개발되지 못하고 단순한 목표간의 비교정도에 그치는 정도임. 또한 평가자료에 대한 환류 및 활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진 원조기관처럼 평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도 예산 부족으로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다행히도 KOICA의 경우 '96년부터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전담부서를 설립하였으며,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인 구축을 달성하였음. 또한 주요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평가대회 및 평가보고서 발간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feedback 과정이 진행중임.
- 향후 우리의 원조평가의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선 먼저 평가에 대한 고위직을 포함한 임원들의 이해 및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평가를 개인에 대한 성취도의 객관적인 잣대로 여기는 직원들에게 평가의 미래 지향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이 요구됨.
-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원조실시 기관내 평가전담기구에 관련 전문직원을 충원하고, 각 사업에 대한 평가기법의 개발, 평가자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원조의 효율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15개국에 설치한 해외사무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에게 현지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함.
- 또한 매년마다 평가팀을 구성하여 피평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들이 대개 전체사업중 5%정도를 실시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도 중.장기적 평가실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의 평가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위해 다자간 원조기관이나 양자간 원조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합동평가회의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필요함. 다자간 원조기관에서는 평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세계은행이나 UNDP, 양자간 원조기관으로는 우리나라와 원조형태 및 수단이 유사한 일본과의 협력이 적절하리라 판단됨.

5. 원조 조직, 관리, 예산, 제도 및 직원 재훈련

가. 원조 조직

- 원조조직은 크게 3 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첫번째의 형태로는 원조의 정책수립 및 집행을 외무부가 담당하는 경우임. 이는 영국, 이태리, 뉴질랜드, 아일랜드등 예산의 규모가 적은 회원국이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원조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개도국 외교, 무역, 원조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은 외무부를 확대.개편하고 있으며, 기존에 원조실시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모든 원조 관련 업무를 외무부에서 담당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음.
- 두번째 형태로는 원조정책은 외무부에서 수립하고 원조 집행기관이 외무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이는 현재 캐나다,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등에서 볼 수 있음. 이 형태의 장점으로선

원조정책수립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첫째 경우보다는 적다는 것임. 또한 조직이 자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조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고 양성할 수 있음.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경우처럼 원조정책이 상위기관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된다는 것임. 또한 원조정책의 일관성 및 적합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셋째 형태로는 원조정책수립 및 집행이 외무부가 아닌 다른 독립부처에서 실시하는 경우임. 이 형태를 가진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임. 독일의 경우 원조정책 수립은 각료 멤버인 BMZ 가, 집행은 GTZ, KfW 를 비롯한 많은 집행 기관에서 실시함. 이 형태의 장점으로는 먼저 정책수립 및 집행이 외무부가 아닌 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교적 고려가 적다는 것임. 또한 원조정책의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계속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임. 그러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개도국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조담당직원의 자국 해외대사관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임. 이는 대사관 직원이 외무부 소속이며, 원조관련 직원은 타 기관에서 파견되었기 때문임. 특히 원조관련 정책대화를 대사관에서 주관시 수원국은 누가 사업실시 파트너인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3 가지 유형의 원조조직중 우리는 두번째 형태를 지님. 즉 원조정책은 외교부, 재정부에서 수립하고 KOICA, 수출입은행에서 집행하는 이원체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유,무상원조의 비율이 비슷한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을 들 수 있음. 이 국가에서도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일본도 '99 년에 의회에 상정 예정인 원조관련 법안에는 유,무상원조를 통합하여 일명 “국제원조청”을 설립하는 조치가 진행중임.
-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의 경우 각 부처간의 원조실시 조직에 관한 의견이 불일치하며, 상호간의 관료적인 저항때문에 기존의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현재 기존의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국가의 예로는 대만을 들 수 있음. 대만은 '90 년 중반에 무상 및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합하여 현재 일원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는 대만이 '90 년대의 세계적인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속에 대만의 국제적 위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원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임.
- 대부분의 DAC 회원국이 무상원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와 원조조직 및 형태가 유사한 일본의 무,유상 원조를 통합하려는 의지, 원조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유,무상 원조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측면을 감안

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두 원조 형태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무상원조가 향후 원조의 나아갈 방향인 바 통합된 원조 정책의 수립은 외교부, 그리고 집행기관은 KOICA로 일원화 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됨.

- 그러나 현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통합된 원조형태는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두 원조 수단간의 조정 및 타 정책과 원조정책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 무상협력의 경우 현재 외교부는 정책수립, KOICA는 이의 집행으로 나누어져 있음. 특히 정책수립 분야로는 원조의 대강 및 중.장기 원조 계획의 수립, 국별 배분의 기준마련, 정책대화등이 포함 될 수 있으며, 집행 기관인 KOICA는 원조효과를 최대화 하기위해 원조관련 기본정책이 수립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관련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공여기관이 제공 가능한 비교 우위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공여 할 수 있는 인적.물적재원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원조집행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체제가 바람직함.
-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외교부는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원조정책 관련 일관성 및 조정을 실시해야 함. 반면 집행기관인 KOICA도 유상원조의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과의 정책대화를 정례화하여 유.무상간 연계를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함.

나. 원조 관리

1) 논리적틀(Logical Framework)

- DAC 회원국들이 '90 년대에 들어와 원조에 대한 효과를 고양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원조 사이클에 대한 논리적틀(Logical Framework)의 적용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선정 으로부터 평가까지 논리적인 틀을 활용하여 원조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임.
- 이는 '90 년대에 들어와 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원조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반면에 원조의 순수성에 대한 재강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제도적장치라 볼 수 있음.
- 현재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논리적틀의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예를 들면, 미국, 카나다는 이미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EU, 핀란드등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이 대부분 규정화 하고 있음.

반면에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은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내부적인 참고로 하고 있음. 이는 논리적틀의 수립 및 적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각 사업 실시시 논리적인 인과율(원인 및 결과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임.

- 논리적틀이 원조효과와 배양의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인정하는 많은 회원국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단순히 참고로만 활용하는 국가도 있음.
- 우리도 궁극적으로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논리적틀을 활용해야함. 그러나 단순히 참고로만 활용하는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활용키 위해서는 제조건이 우선 되어야 함. 첫째, DAC 회원국처럼 원조의 규모가 커서 관련 수원국에 대한 거시적 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둘째, 이를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선진원조국들이 사용하는 잘 조직화된 논리적틀을 우리에게 맞게끔 변형 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이 틀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직원의 재훈련이 필요함.

2) 신축성 고양

- 원조 정책의 신축성은 첫째, 지역 사무소의 재량권 확대, 둘째 본부 조직내의 절차의 간소화로 나타남.

가) 지역사무소의 재량권 확대(Increased discretion to the Overseas Office)

- DAC 회원국들은 '96 년에 재정한 "21 세기 전략"에 기초하여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동반자의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수원국 주재의 해외사무소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음. 이를 통해 각국은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가 지닌 현장감을 원조정책에 반영함. 정보기술의 발달은 본부 및 지역 사무소간의 정보교환 및 공유를 가능케함.
-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수집 및 집행, 감독, 평가, 정책대화등 여러가지의 역할을 책임지게 하는 등 해외 사무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허용하는 공여국도 있는 반면 지역사무소에 단순히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도의 재량권만 인정하는 공여국도 있음.
- 이와같은 재량권 강화에 반하여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은 지역사무소를 경비축소 차원에서 감축하는 공여국도 있음. 특히 캐나다의 경우 '80 년대에 분권화의 기수로써 해외 사무소를 많이 늘리고 이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지만, '90 년대에 들어와 분권화에 대한 비판 및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분권화대신 재집권화로 바꾸고 있음.

- KOICA의 경우 창설초기에 2개 지역사무소를 '94년에 들어와 15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업무의 확대 및 KOV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한 것임. 이와 같은 지역사무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은 단순히 본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음. 이는 먼저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원조사이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부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정책대화 및 사업관련분야에 대한 책임은 수원국 주재 대사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함.
- 특히 KOV의 파견국가 및 인원 증대는 관련 업무의 급격한 확대로 연결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KOICA의 지역사무소도 증대되었음. 반면에 이들의 역할 및 책임이 KOV 사업을 제외하며 아직까지 미미한 편임.
- 향후 KOICA의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ODA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에는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해외사무소설치 및 직원의 증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됨.
- 현재 원조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은 KOICA 직원이 어느 정도 지니고 있지만, 대수원국 관련업무를 총지휘하는 우리 대사관 직원의 원조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은 낮은 편임.
- 향후 원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새로 개도국에 부임하는 외교부 및 관련 부처 직원들에게 원조관련업무에 대한 교육실시가 필요함.

나) 절차의 단순화(Procedural Simplification)

- 조직이 설립되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체 조직의 법과 제도의 구축임. 반면 제도화과정에서 각종 법규 및 규정 제정은 내부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하며, 이는 조직의 비효율성에 까지 연결되고 있음. 각 조직은 이와 같은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단순화하고 있음.
- 현재 DAC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원조 관련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예외 없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원조 관련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음.
- 조직개편의 방향도 원조관련 기관을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원조 정책의 일관성 및 조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듦. 반면에 원조 관련 절차의 단순화조치로는 문서의 승인 단계 축소, 또한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으로 진행됨.

- 특히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은 부서간, 본부 및 지역사무소간의 정보수집 및 교환을 빠른 시간내에 가능케 하며, 문서의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축소케 함. 이는 궁극적으로 각 부서마다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공유케하여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 하게 만듦.
- 우리의 경우 원조실시 조직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직의 제도 준비가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원조의 효율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원조를 실시하는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하며, 특히 원조정책 수립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업무에 대한 확실한 역할분담, 집행기관에의 책임성과 재량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도 효율성의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봄.

3) 직원의 전문성 강화(Increased Professionalism of the Staff)

- 대부분의 DAC 회원국의 경우 원조업무는 외무부에 속해 있거나 산하 기관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직업 외교관이 담당하게 됨. 그러나 직업 외교관들은 직업 특성상 빈번히 교체되기 때문에 원조 업무에 대한 계속성이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반면에 원조의 전문적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개발 협력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은 높지만 해외사무소나 본부에서 근무시 원조정책 수립과정에서 역할이 미진한 형편임.
- 이와 같은 이중 구조하에서 각 원조 기관들은 점점 축소되는 원조 규모로 더 높은 효과를 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공여국들은 자체 원조조직 개편 및 담당 직원에 대한 재훈련을 강조함. 특히 직원의 재훈련은 점차 복잡화 되어가는 원조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고, 새로운 범세계적인 이슈의 등장으로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기 때문임.
- '90 년에 들어와 환경문제, 인구, 여성개발, 이민, 마약, AIDS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진행중임. 특히 이 문제들은 개도국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원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 언급한 이슈들은 그 발생 원인, 효과등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임.
- 각 선진 원조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범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키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전문직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혹은 이들로 하여금 자체 직원들의 재훈련에 투입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원조에 관한 체제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원조기관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할 것임. 특히 원조조직이나 체제가 유사한 일본을 많이 연구하고 원조기관간의 제휴를 통해 직원의 교환 및 정보공유, 공동 사업추진등 더욱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선진 원조기관들이 함께 모여 원조에 관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규범 및 지침, 권고안 제정을 담당하는 OECD/DCD 및 Development Center 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우리가 DAC 에 가입하기전 준비뿐만 아니라, 선진 원조기관들의 나아가는 방향, 그들의 원조 조직,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한국형 국제협력 모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World Bank, ADB 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관, UNDP 를 포함하는 UN 부속기관들과의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하거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조 평가 방법 및 타당성조사 체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예산 사용의 신축성

- 선진국들은 자국의 고유한 예산 운용체제를 가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가 단년도 예산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독일을 비롯한 몇 회원국들은 원조사업의 다년도 예산체제를 인정하고 있음. 반면에 일본을 비롯한 몇 개국들은 단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단년도 예산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용치 못하는 예산은 불용 처리 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원조사업의 결과보다는 투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이는 원조효과를 낮추는 원인을 제공함.
- 다년도 예산구조의 장점으로 수원국의 개발이 중.장기적인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관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수립이 가능하며,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예산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음.
- 단년도 예산구조의 장점으로 먼저 예산의 사용내역 및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정확하며, 불용된 예산의 익년이월이 가능치 않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 대한 사용 책임성 및 신속도를 유지할 수 있음.
- 원조관련 예산은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종합적 예산구조내에서 움직이고 있음. 그러므로 단년도 및 다년도 체제중 어떤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름.

- 두가지 체계중 다년도 예산체계가 단년도 체계보다는 더욱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 이는 다년도 체계가 원조업무의 성격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원조의 효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원조정책이 중.장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임. 특히 다년도 체계를 채택했을 경우 예산 불용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한 국별 원조계획 수립시 수원국의 필요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음.
-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여국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유지가 가능하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에서도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케함.

6. 원조관련 국민의 지지, 홍보, 대국민교육

- DAC 회원국들은 원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자료 및 현장을 매스컴에 공개하며,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Opinion leader 를 사업현장에 초청하여 실제로 원조를 통해 달성한 사업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이는 '90 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원조규모 및 자국민들의 원조효과에 대한 피곤현상등 원조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만회하고자 하는 조치임.
- 회원국들은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국제협력의 날이나 주간을 제정하여 그 의미를 되살리기도 함. 또한 초.중학교 교과서에 원조의 의미, 효과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여 자라나는 세쌍들에게 개발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지지자들을 만들고 있음.
- 핀란드는 언론매체 종사자들을 원조기관의 주선하에 사업 현장을 방문케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긴급재난을 당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언론 취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원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득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현재 독일이 안고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불법 이민,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발협력 역할을 부각 시킴으로써 국민들의 ODA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
- DAC 회원국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원조사업 참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원조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전체 ODA 규모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거의 10%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현재의 추세로 볼 때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들이 OD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베푸는 원조가 아닌 선진국으로부터의 받는 원조에 익숙해 있음. 특히 '97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ODA에 대한 지지는 더욱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삭감으로 반영되고 있음.

7. 원조증대의 필요성

가. 원조와 무역간의 연계를 통한 자국의 이익추구:

- 원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입장에서 살펴 보아야함. 즉 일본은 개도국의 시장개척시 다음의 3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있음. 첫째, 무상원조를 통한 기술개발과 이미지고양 유도, 둘째, 무상원조와 유상 원조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경제 인프라의 건설참여,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의 진출임. 이는 원조를 향후 자국 기업의 시장진출기반을 구축하기위한 Seed Money의 성격차원으로 인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원조를 자국의 외교정책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해 원조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는 조직도 대부분 외무부내에 위치하거나 혹은 외무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음.
- 또한 외교업무와 통상업무의 조정과 일치성을 유지하기위해 외무부내에 외교.통상업무를 함께 구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음.

(예: **Australia:** Dep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anada:** the Dept. of Foreign Affairs and Int'l Trade, **Fin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orwa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Trade,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 DAC 회원국들도 명목적인 상황에서는 원조와 무역을 연계시키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 근거로는 DAC 회원국 원조 심사 회의 (Peer Aid Review Meeting)에서 원조와 무역간의 연계 잣대인 원조의 조건성 문제가 잘 제기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음..

- 이것은 원조와 무역의 연계문제가 회원국이 자국민에게 원조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함.
- 우리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품 수출이 증가되어야 하며 무역증대에 일조를 담당해 온 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무역증대를 위해서는 시장개척도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원조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또한 DAC 회원국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1974-79년에 영국이 IMF 구제 금융을 경험한 시기에 그들의 원조액 및 원조정책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음. 즉 원조액을 대폭적으로 줄이거나 중단 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조규모를 증대하여 시장개척이나 수출확대의 계기로 삼은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함.

나. 향후 남.북한 통일 대비

- 장래에 예기되는 남.북한 통일시, 우리가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과정에 참여하여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함. 예를 들면 독일은 '90 년초 동.서독 통일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액을 더욱 확대함.
- 독일정부는 ODA 증대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소망이었던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성의 및 독일의 개도국 발전에 대한 대외적인 노력증대의 의지 재표명임을 강조함.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통일이 달성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시킴. 예를 들면 범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문제, 그리고 당시 엄청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킨 터키나 아랍국가로부터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후유증등 독일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또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함.

<표> 독일의 원조액 현황('86~'95)

(Unit: \$ Million)

년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금액	6393	5954	6182	6750	7181	7747	7040	7235	6818	6509

주) '92 년부터 DAC 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개념의 ODA(즉 동구권 국가에의 원조는 ODA 가 아니고, OA 에 속함)에 의해 ODA 액수가 줄어든 것임.

부록: DAC 의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제원칙

부록: DAC의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제원칙

1. 개도국과의 원조조정(Aid-Coordination)

가. 조정의 목표

- 이 원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신축적으로 활용되어야함. 그리고 이 원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실시해야 하는 개도국에게 적용되어야 함. DAC 회원국은 원조정책과 우선 순위조정의 모든 책임과 원조조정 업무는 개도국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
- 선진국의 협력으로 개도국이 투자와 지출을 위한 정책의 향상과 자세한 평가력의 향상을 도와야함
- 개도국은 그들의 자체 및 외적자원의 효율적이고 조정된 사용을 위해 잘 고안된 정책과 자세하게 평가된 투자 및 지출 프로그램이 요구됨
- DAC 회원국은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체계화에 있어서 World Bank/IMF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들은 또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형평과 소득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교육, 보건, 인구 및 환경과 같은 주제가 예산 배분 및 전략수립에 있어서 고려되기를 원함.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민간자본이 개도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만드는데 일조를 담당해야함을 의미.
- DAC 회원국은 선진원조기관의 역할이 개도국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조 정책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고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분석력과 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제공함을 인지. 또한 회원국들은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정책고안능력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다자간 원조기구들이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양자간 기구도 특히 그들이 특별한 경험을 가진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함.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의 중요성을 두고 추진해야함.
- 회원국들은 자세하게 평가되고 생산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가 이 원리의 계속 실시의 필요성을 인지. 이 프로그램이 국제재정기관의 충고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조배분의 소중한 기초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의 정기적 심사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교환과 진행사항의 점검기회를 제공. 이것은 또한 원조조정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함

- 회원국들은 현재 정책향상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에게 이에 필요한 적당한 재정적 도움의 중요성을 인지함. 이것은 필요한 분야의 도입을 위한 재정적수요를 위해 신속히 제공되는 기금을 요구함. 공여국들이 개도국에게 중.장기자금 제공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그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가속화함.
- 기존의 관리 능력의 향상과 재활은 바로 앞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시보다는 더욱 우선순위를 부여해야함. 회원국들은 이 프로그램의 경상비와 정비에 필요한 것들의 실질적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해야함.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개도국의 자조능력을 향한 진일보에 대한 합의와 함께 같이해야함.
- 회원국들은 개도국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분야별 프로그램의 협조옹자시 많은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특별한 장점이 존재함을 인지. 이와같은 경우 양자간기구나 다자간기구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에 의한 평가작업이 주도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행정적인 부담이 경감됨.
- 수출신용은 특별한 경우에는 최빈국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때에는 반드시 원조의 목적과 원칙이 지켜져야함.
- 외부적으로 갇아야 하는 외채에 대한 의무는 개도국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침. 파리클럽이 주도하는 외채 경감에 있어서 개도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과 요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함.

나.원조조정의 향상된 기획을 위한 후속 조치들

- 회원국들은 진정한 의견일치에 기초하여 작동 가능한 결론을 도출 하기 위한 국제적 원조조정노력에 개도국, 다자간 원조기구 및 다른 원조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회원국은 개도국과 국제기구간의 밀접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함. 그러나 양기관간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에 회원국들과의 협의 및 조정과정의 필요성을 인지함.
- 공여국간 그리고 공여국 및 개도국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솔직한 정보교환이 성공적인 원조조정이나 효율적인 원조집행의 필수적임을 인지

다. 상담그룹과 라운드 테이블(Consultative Groups and Round Tables:CGRT)

- 회원국들은 CGRT 의 최근의 향상을 치하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원조기관이 다음의 방향으로 추구하기를 원함.
- 가능한 개도국그룹을 이용하여 CGRT 전에 상담회의에 양자간 원조기관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함.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회의에의 참석은 개도국에 대한 진정한 발전계획과 사업을 도출케 하기 때문임.
- 핵심 사업이나 문제점에 관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달성하기 위해 CG 의 형태를 수정함. 이에는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개도국의 발전분야와 투자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신중한 검토실시,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위한 원조의 의미에 관한 토론 및 개도국의 무역추세 및 외채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개도국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결정하는 요소를 고려함.
- 재정적지원과 함께 중요한 사업으로 기술원조를 강조하며 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기술원조에 관심을 높임.
- CGRT 에서 논의된 결론을 기록하고 개론(Summary)을 좀더 구체적이고 행동 지양적으로 하며, 그리고 개도국의 조정에 참여하는 그룹을 포함한 이에 관심을 가진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
- CGRT 에서 도출되는 행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실천하며, 특히 분야 및 개도국 내부에서의 자체 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정책개혁의지의 천명과 원조제공에 대한 공여국의 명확한 의도가 나타나야 함.
- 회원국들은 특히 UNDP 가 최근에 주도한 Round Table 의 강화, 그리고 좀더 효율적인 조정역할을 위한 UNDP 의 능력고양에 관한 진행에 고무됨. 여기에는 개도국이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이를 담당하는 UNDP 직원의 강화, 그리고 개도국 및 참석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접근법사용, 그리고 향상된 분석 및 개도국자체의 향후 조치, World Bank 와의 좀더 가까운 협력을 통한 RT 회의의 준비 및 조직을 발전시킴, 그리고 이 회의에 개도국 및 공여국의 적절한 인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 회의에서 UNDP 에 의한 회의 주도를 주요분야로함.
- 또한 RT 의 두번째단계인 당사자급의 회의를 강화하여 개도국이 자신들의 발전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라. 지방별,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

- 회원국들은 개도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단체간의 강력한 연계를 설치하기 위해 또한 이들간의 조정력을 강화할 필요성의 인지. 중앙조정장치는

지방 및 분야간의 조정을 지방/분야별로 인지되는 이슈를 확인함에 있음. 정책대화는 지방 및 분야별 원조조정의 내재된 요소임. 개도국의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 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함. 그러나 분야별 원조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련된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기획담당직원의 참여가 중요함.

- 최근에 수원국내에서 원조조정의 확대가 이뤄짐. 이를 통해 정보교환, 중복프로젝트의 회피, 그리고 프로젝트에의 공동참여가 이루어짐. 그러나 자세히 심사되고 검토된 투자사업 그리고 분야별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실시해야함. 회원국은 수원국이 주도하는 조정기구의 설립을 환영함. 그리고 이와 같은 수원국내의 조정기구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함.
- 회원국들은 아주 자세히 검토된 투자 및 지출 사업에의 지지와 준비를 포함한 향상된 분야별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효율성을 고양하기위해 분야별 원조의 나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 이를 달성하기위한 도구로 협조융자장치의 활용임.
- 회원국들은 지역개발은행이 정책대화와 개혁과정, 특히 분야별로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이 은행들이 UNDP 나 World Bank 와의 밀접한 협력이나 거시적 경제정책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아프리카에서 CILSS/Club du Sahel 과 SADCC 와의 틀에서 지역별 원조조정이 국별조정 과정에의 중요한 추가분임.

마. 조직별 그리고 직원별

-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행정능력의 과부하를 피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지함. 원조의 행정을 유연하게 하는 행동은 쉽지않지만 회원국들은 수원국과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된 여러 보고서 및 연구자료를 기초로하여 수원국의 원조수행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의 기회를 찾고자 함. 이것은 의회 및 행정부의 절차의 수정을 포함할 수도 있음.
- 회원국은 이 과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책의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지함. 또한 수원국에서 정책대화 및 원조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여국 원조기관직원의 참여가 필요. 이는 원조기관의 현지 직원들에 의해 행하여짐. 이를 위해 원조기관들은 현지에 자체 직원들의 증원, 직원들의 재훈련 및 직원충원 그리고 민간기관의 전문성의 효율적인 활용도 필요함을 의미.
- 회원국들은 수원국이 스스로 효율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고안 과 실시 및 그들의 발전과정의 관리를 위한 수원국의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지함. 능력있는 중앙정부기관의 존재는 효율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임. 또한 이를 위해 광범위한 제도발전노력이 정부 및 분야 그리고 지방단체별로 요구됨. 민간분야의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제도 발전을 위해 민간분야의 역할이 중요함.

바. 실시 및 후속조치

-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정한 원칙을 실시하기위해 자체의 조직내에서 적절한 행동을 실시해야 함.

2. 프로젝트 심사에 관한 원칙(DAC Principles for Project Appraisal)

가. 개요: 프로젝트 선택과 고안의 중요성

- 개도국에서 좀더 나은 투자관리와 자원활용이 그들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기본적인 것임. 프로젝트의 선택, 좀더 명확한 그리고 실질적인 목표설정, 고안 및 준비에 많은 노력경주, 고안 및 실시시 영향권에 있는 그룹의 완전한 참여, 그리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고양시킴. 공여국은 프로젝트선택 및 준비시 개도국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성과 개발효과에 관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함.

나. 원칙의 범위

- 다음에 열거한 원칙은 우선 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함. 회원국들은 이 원칙을 향후에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수단별원조에 적용가능. 모든 종류의 원조는 일관성있는 선택기준과 높은 수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중요. 그러나 원조의 적시성은 특히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

다. 투명성

- 프로젝트가 평가되는 기준과 표준, 그리고 공여국에서 적용하는 승인 과정과 정보요구는 명확히 서술되어야함.
- 지금까지 이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원조기관들은 이를 수원국과 다른 회원국들에게 발표하기를 바랍.

라. 공여국-수원국과의 협조관계(Recipient-Donor Partnership)

1) 수원국의 심사 및 실시능력고양

- 프로젝트의 재정에 관한 결정은 공여국과 수원국이 함께 하지만, 프로젝트 확인, 고안, 그리고 실시에 관한 책임은 수원국에 있음. 그러나 프로젝트 심사, 고안을 위한 제도구축, 그리고 예산, 회계를 포함하는 관리에 관한 수원국의 능력강화는 기술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함.

2) 필수적인 요구사항과 가정에 관한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의견일치

- 프로젝트심사 와 실시에 있어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기여 및 직무는 완전히 알려지고 합의되어야함. 양측간의 상이점은 프로젝트의 실시 중간보다는 시작단계에서 해결되어야함. 또한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과 과정은 실질적이고, 완전히 알려져야 하고, 그리고 수원국과 의견이 일치되어야함.
- 양측은 또한 모든 주요행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간과 필요한 구체적 단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함. 예를 들면, 자문, 훈련, 충원, 조달, 법적사항, 제도변화, 공여국의 과정상의 필수사항등임. 프로젝트의 시간적인 일정은 실질적이어야함. 주요 경로계획(Critical Path Programming)의 활용이 유리함.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프로젝트 고안자들은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3) 타당성조사를 위한 일치된 기준표(Term of Reference)

- 양측은 서로에게 중요한 사항이 인지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위한 분명한 기준표를 준비해야 함. 이는 이 원리에서 반영된 고안과 지속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함. 타당성조사는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함.

마. 프로젝트 확인(Project Identification)

1) 최초의 프로젝트확인(확인)의 중요성

- 최초의 프로젝트확인절차는 중요함. 경험적으로 보면 주요한 프로젝트 준비가 시작되면 프로젝트의 거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최종결정이 프로젝트심사와 준비단계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프로젝트의 확인

비망록의 활용이 관련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과정은 좀더 자세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기위한 목적임

2) 목표의 구체화

- 프로젝트의 목표에 관한 구체화는 효율적인 심사와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그리고 목표의 명확한 구체화는 뒤따르는 평가에도 필수적임.

3) 분야별 분석과 조정의 기여

- 지금까지의 경험은 정부의 분야별 목표를 설정한 분야별 프로그램과 전략의 유효성이 분야별정책과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그리고 공여국이 지원가능한 분야를 확인시켜줌. 더욱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를 주어진 분야와 연결시킴으로서 제도 구축시 경험을 활용케 하는 것임.
- 수원국정부의 분야별전략의 틀안에서 양측의 조정은 정보와 경험을 교환케하고, 프로젝트의 중복을 피하며, 양측의 협조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그리고 분야별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함.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관한 타 공여국의 사업과 계획은 가능한 한 프로젝트의 자료취합과정에 반드시 알려져야함.
- 프로젝트 최초의 정책은 잘 고안된 분야별 프로그램 및 전략과 일치해야함. 이때는 PIPs(Public Investment Programmes)와 PEPs(Public Expenditure Programmes)가 중요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잘 고안된 수원국의 분야별 전략과 투자/지출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프로젝트 정책과 고안과정에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함. 이때에는 공여국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분야별 틀속에서 프로젝트를 조화시키는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함. 특히 프로젝트 심사시 과도한 수입보호, 수출관련 세금, 행정비용(이자율포함), 그리고 비효율적인 정부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주요 가격 왜곡현상이 고려되어야 함. 단기적으로 최소의 이득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수원국에게 도움이 되지 못함.

4) 민간분야 관련 프로젝트

- 양측은 관련 프로젝트의 수행이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중 어떤 단체가 더욱 효과적인지 고려해야함. 공여국이 민간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는 이들이 수원국의 광범위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프로그램과 일치해야함.

5) 주요한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의 경우

- 관련 프로젝트가 수원국의 경제, 재정, 사회 및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면 관련 프로젝트가 심각한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함. 관련 프로젝트는 이의 분석에 기초한 경제적 자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을 야기함.

6) 논리적인 틀 (Logical Framework)

- 이 틀은 프로젝트의 체계적 분석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고안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임. 이 틀은 우선 프로젝트의 계획도구로 또한 후속의 평가시에도 사용됨. 이 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가설의 명확성과 분석인데 이것은 프로젝트의 고안가 평가에 주요한 기능을 함. 가설에 대한 분석은 이 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 있음. 이 틀은 프로젝트의 확인과 같은 초기부터 사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필요하면 이의 준비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목표를 수정하게 함.

바. 심사: 일반적 고려(Appraisal: General Considerations)

1) 선택과 고안시 심사의 중요성

- 심사의 주요한 목적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합리적 프로젝트의 선택을 가능케 하고, 좋은 프로젝트의 고안으로 기여케 하는 것임.
- 이와 같은 두가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프로젝트 심사과정과 고안 과정이 분명하게 분리될 수 없음. 기술적인 전문가가 프로젝트 고안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에 열거한 여러 형태의 심사가 프로젝트고안의 한 분야임. 프로젝트 고안시 대안의 고려는 고안과 심사의 상호작용의 한 표본임. 결정단계에서, 심사는 관련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적합성,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장점이 많은 대안의 선택, 그리고 실행의 준비를 가능케 함. 다음은 심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임.

-기술적(Technical)

-재정적(Financial)

-경제적(Economic)

-제도적(Institutional)

-사회/분배적(Social/Distributional)

-환경적(Environmental)

- 지금까지 언급한 형태의 중요성은 프로젝트별로 상이함. 그리고 언급 순서는 분석의 여러 형태에 주어진 무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다음에 언급한 원칙은 계산이 가능한 경제적이익과 함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고안에서 부닥치는 문제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있음.

2) 지속성의 중심개념

- 프로젝트의 지속성은 모든 형태의 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함. 이것은 프로젝트를 판단하는 아주 유용한 일반 기준임. 프로젝트가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가 종료된 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공여하게 됨을 의미. 다음은 지속성에 필요한 조건임.

- 순기능적인 정책환경. 필요한 정책변화는 실행되기 전에 합의되어야 함.
-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
- 수원국의 관리 및 기술능력에 일치하는 프로젝트 고안
- 경제적 적합성 및 지속성
- 최초비용과 경상비의 충원
- 여성을 포함하는 목표그룹과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 수원국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조건에 적합한 기술의 선택
- 실현 가능한 일정표
- 적절한 유지 및 지지체제, 그리고 외부의 원조가 종료된 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 수원국의 사회-문화적환경과의 양립성
- 환경적인 지속성

- 위에 언급한 사항들이 프로젝트의 상세한 부분 및 이 사업의 환경 그리고 프로젝트의 고안 및 실행에 있어서 신축성의 필요, 계속적인 발전과정으로 야기되는 관리, 기술 그리고 유지능력의 기대되는 향상에 적용되어야 함.

사. 기술적인 심사 (Technical Appraisal)

- 기술적인 타당성조사는 다른 형태의 심사의 기초임. 기술적인 전문가가 이 사업이 실시되는 수원국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과 표준을 사용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함. 기술적인 심사는 수원국내 생산능력의 활용가능성, 잘 훈련된 직원의 소유, 재료, 그리고 다른 투입,

또한 이것이 의도하는 시장에서의 산출의 적합성 및 수원국내의 기관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등을 고려해야 함.

아. 재정적인 심사(Financial Appraisal)

1) 재정분석

- 재정적인 적합성을 나타내기 위해 기대되는 수입의 일정표와 자본 및 소비에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는 아주 세심한 재정적인 분석과 계획이 요구됨.
- 재정분석은 우선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실체에 관련되어야 함. 또한 계획된 사업의 계속성의 재정적의미를 포함하여 이 사업이 수원국의 공공재정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2) 적절한 개념(Appropriate Terms)

- 재정적원조에 있어서 양허성개념은 사업의 재정적 성격보다는 개발을 위한 적절한 외환자금의 동원능력에 있어서 수원국의 한계성과 경제적 상황과 관련됨. 최종사용자의 개념정리시 자원활당과 수입배분에서의 왜곡된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필요. 두 단계의 재정절차는 이와 같은 왜곡을 피하는 유용한 도구임. 예를 들면 프로젝트는 자국내의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고 양허성 요소는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함. 이것은 특히 수입을 도출하는 사업 즉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요함. 프로젝트의 심사는 사회적이거나 혹은 이제 시작하는 산업기반에서의 최종사용자의 개념에서 양허성의 개념을 전부 혹은 일부를 정당화하게 하기 때문임.

3) 재정적인 지속성

- 비용분담을 사용자분담으로 하는 것은 수원국에 계속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지속성의 유지와 재정적인 분담을 해결하는 방안임. 그러나 사용자부담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에는 재정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제공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관한 원칙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원조조정의 주요한 주제임.
-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자체 조달되기 힘들 경우, 이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이와 같은 지원이 수원국정부의 공공재정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가끔 프로젝트에의 수원국정부의 재정적지원에 관한 것이 과장된 면이 있었음.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면에서

그리고 이로 인한 수원국 정부의 지원능력을 고려해야함. 그리고 이를 위해 공여국 및 수원국정부의 재정 담당자들간의 조정이 필요함.

4) Local cost 및 경상비에 대한 지원

- 어떤 경우에는 수원국정부는 자신들의 예산으로는 **Local cost** 및 경상비를 지원할 수 없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여국들이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이와 같은 경비를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때에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관한 명확한 일정과 형식이 합의되어야 하며, 또한 경상경비의 종료단계에 대한 합의도 포함.
- **Local cost** 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공여국의 신축성은 프로젝트의 고안이 **local cost** 재정의 한계때문에 수입지향적 기술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음.

자. 경제심사 (Economic Appraisal)

1) 계량화된 경제적이득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제적심사

- 경제적 이득과 비용의 계량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에는 체계적인 비용/이익분석이 행하여져야 함. 여기에는 산업, 농업, 전력, 교통, 통신과 같은 시장화 산출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의미. 그러나 다른 프로젝트, 예를 들면 도로건설, 상수도, 병원, 대학연구소와 같은 프로젝트에는 계량화가 힘들지만 가능한 편익분석을 하여야 함. 특히 관련 사업이 수원국에 주요 잠재적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는 더욱 그렇게 실시해야 함.
- 기본적으로 두개의 서로 다른 경제심사적 접근법이 있음. 그러나 여기에도 같은 가설을 사용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첫번째 접근법은 실제가격과 비용과는 아주 다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그림자가격(Shadow Prices)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방안(Effects Method)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국가회계를 내에서 실시 사업으로 인한 모든 경제주체의 소득에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임.
- 프로젝트의 경제적수익이 근본적인 심사기준의 하나임. 그러므로 자원이 부족한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희소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이득이 각 대안의 선택에 주요한 요소가 됨. 최소한의 경제적수익은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변함. 최종의 선택은 사회/분배와 환경고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심사의 다른 요소에도 적절한 무게를 실어 주어야함.
- 프로젝트가 경제심사에 통과되고, 실제적요소와 생산가격에 기초한 재정적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프로젝트에의 재정/예산과의

관련성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

2) 경제적심사시 공여국과 수원국 양측에 적용하는 기본가정과 표준에의 투명성 및 일관성에 중요한 의미를 둠

- 회원국들은 양측의 중앙 재정관련기관, 국제원조조정기구와의 협조로 프로젝트심사에 적용되는 기본가정과 표준에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함.
- Sensitivity 분석은 개별프로젝트에 관한 상이한 가정하에서 관련프로젝트의 역동성을 실험하는 중요한 도구임. 분석초기에 적용하면 이 분석기법은 관련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값비싼 자료채집과 분석이 필요치 않는 프로젝트를 확인시켜줌. 이의 유용성은 경제적분석에 국한되지않고, 관련 프로젝트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해 필요한 기술분석 및 다른 분석에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함.
- 위험분석은 이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요한 측정변화에의 가능성을 체크하는 sensitivity 분석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음. “Scenario testing”은 여러 변수의 동시다발의 가능성의 서로 다른 융합을 체크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임. 이 접근법은 투입과 산출물의 가격이 아주 크게 변화거나 주요한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함.

3) 경제적이득이 계량화되지않는 프로젝트에의 비용효과분석 활용

- 경제적 수익율이 계산되지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모든 유효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수원국에게 희소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기 위해 기대되는 효과와 비용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함. 이와 같은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하기위해 관련 사업의 실시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 혜택자당 상대적 비용, 필요한 서비스의 단가비용, 필요한 서비스와 이득의 표준 및 질적인 측면등을 들 수 있음.
- 이 분석법은 다른 측면 즉 목표와 혜택 수원자에 대한 명확한 세분, 논리틀, 재정적 지속성, 제도적평가와 유지, 그리고 사회/분배에의 영향에도 적용할 수 있음.

차. 제도적심사(Institutional Assessment)

- 관련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관리적인 측면도 잘 고려해야 함. 이것은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의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의미. 또한 관련 사업의 실시되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심사도 포함됨.
- 이 심사는 수원국의 실시기관에 필요한 기술의 성격, 형태, 그리고 조직의 능력 및 자극제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함. 껌은 확인되어야 하고, 실행을 강화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이 심사는 프로젝트의 고안시 고려될 수 있도록 초기에 행해져야 함.
- 이 심사에는 기관의 예산, 회계, 기금의 통제, 그리고 기획 과정시 고려되는 정도를 포함하는 재정관리능력의 심사도 포함. 특히 자금통제 능력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프로젝트 고안을 통해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동안에의 기관의 재정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회계와 재정관리능력의 유지능력에 관한 실사를 제공함. 이 심사는 기관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관의 재정관리 및 회계능력을 고양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실행기관이나 다른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원조의 기간과 자체기관과 자문관이 제공 가능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새로운 직원이 충원되었거나 훈련받았을 때, 그리고 새로운 체제와 시행규칙이 조직에 도입되었을 때, 전체조직이 새롭게 탄생되었을 때, 오랜기간 동안의 지원이 필요함. 어떤 경우에는 잘 운영되는 조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새로운 실행조직의 능력강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있음. 가능한 한 기술 협력은 수원국의 기관과 자문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함. 왜냐 하면 그들이 수원국의 사정과 한계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외국에서 기술원조가 제공될 시에는 첫째, 이 협력이 아주 유효하게 사용되고 더 이상 필요성이 없을 때는 종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째, 기관의 제도구축에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
- 선진원조기관들은 특히 프로젝트고안을 단순화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의 실시일정표의 작성, 공동제도 평가실시, 그리고 공동체단체 와 NGO 를 통한 기획 및 실시에 있어서 능력있는 중간단체를 활용함에 의해 수원국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야 함.

카. 효율적인 유지제공(Provision for Effective Maintenance)

- 프로젝트고안은 실제적인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함. 직원 충원이나 유지 목적의 운영자금은 장기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유지의 중요성과 수단을 잘 알고 있어야 함. 유지를 위한 직원훈련은 프로젝트 관리의 계속되는 기능이 되어야 함. 특히 프로젝트는 유지기술자나

프로젝트의 혜택을 위해 예방유지를 다루는 정보관련건을 포함함. 훈련은 잘 기획되어야 하고, 또한 수원국의 유지담당직원이 이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어야함. 훈련은 이를 위한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표에도 일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선택과 고안은 프로젝트의 소유자의 유지 및 운영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유지책임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처음부터 제공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종료후 이에 관련된 기구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수단과 기술능력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국정부의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와의 이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어야 함. 프로젝트실시의 기간은 투자기간의 완료를 위해 좀더 실현 가능한 기간을 허락할 정도로 연장할 수도 있음.

다. 목표대상그룹의 확인과 참여 그리고 사회 및 배분분석(Identification and Involvement of Target Groups and Social and Distribution Analysis)

1) 비용과 편익분배

- 목표대상그룹은 이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의도됨. 그리고 실행시 주요기관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자세하게 분류되어야 함.
- 의도된 목표대상그룹에 대한 초기의 분류는 이 프로젝트의 배분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어야 함. 가능한 한 배분분석은 여러 관련그룹에의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함.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의도된 혜택자와 참여자의 필요와 능력과 양립됨을 확인해줌. 이 분석은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혜택을 받는 그룹이나 개인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 이 분석은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나 최대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분석해야함.
- 목표대상그룹의 개념은 시장화된 산출물이나 전체경제에 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한된 적용성을 가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약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케하는 것이 요구됨.

2) 사회-문화적분석

- 사회문화적 조건, 구조 및 전통은 성공적인 프로젝트실시에의 가능한 제약점을 확인하기위해서 분석 필요성이 존재함. 여기에는 지대 및 상수 관련사항, 재거주, 지방구조형태등임. 이 분석은 평가 및 영향분석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와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함.

- 여성들의 개발 프로젝트에의 참여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함.
현재까지 개발 행위는 대부분 여성을 정책결정자 혹은 생산자, 혜택자의 개념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여성들의 임금이 가족의 생활수준의 고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심사단계 뿐만 아니라 최초의 프로젝트 스크린 단계에서 여성이슈가 고려되어야 함. 노동분배, 자원에의 접근 및 활용, 정책결정과정, 수입과 혜택의 분배, 시간활당, 여성의 법적신분, 그리고 이와 같은 요소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주는 영향에 관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함.

3) 인구분석

- 여러종류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상이한 인구층과 이민율등을 포함한 인구관련 정확한 자료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특히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때는 인구경향, 지리적분산등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4) 수원국 지역기관과 목표대상그룹의 참여 및 동기부여

- 양측은 국별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원조에 의한 프로젝트의 고안과 실행에 있어서 수원국 지역의 능력있는 현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야함.
-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그리고 실행과정에 수원국 실시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프로젝트가 실제적인 필요성과 환경에 맞추어 졌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수원국의 지역기관이나 공통체를 통해 마지막 수원자 와 수요자의 활발한 참여는 프로젝트의 성공과 관련 지역의 힘을 동원케 하는데 필수적임.

파.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 환경요소는 프로젝트의 선택과 고안과정에 고려되어야 함. 특히 까다로운 프로젝트는 85년에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에 관한 권고서에 잘 정의되어 있음. 프로젝트의 최초심사는 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필요하다면 필요한 개념과 방법에 관한 것을 포함함. 이 평가는 프로젝트의 고안이나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위해 초기에 실행되어야 함.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요되는 노력의 감소로 혜택의 증가를 가져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양측의 밀접한 협동으로 행하여지는 환경평가는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임. 또한 평가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중이나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의가 되어야 함.

- 평가는 또한 프로젝트로 인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함. 여러 종류의 효과분석과 또한 시간상 효과분석에도 관심을 두어야함. 이 평가에는 또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의 고안이나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야 함. 환경평가는 프로젝트의 실시중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한 감시과정으로써 전 프로젝트의 사이클에 계속되어야 함. 또한 수원국 관련기관의 환경관련조치의 시행을 위한 능력배양의 필요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함.
- 가능하다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이 화폐개념으로 표시되고 또한 경제분석에 포함되어야 함. 환경상의 비용/편익이 생산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장기적인 환경지속성, 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현존함.

하. 감시, 평가 및 기존의 경험으로부터의 환류를 위한 규정(Provision for Monitoring, Evaluation and Feedback from Earlier Experience)

1) 감시

- 효율적인 현장감시와 실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열거 규정은 프로젝트의 고안단계에 수립되어야 함.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됨.
 -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능률성, 효과성, 영향, 지속성과 프로젝트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정과정을 소개하기위해 프로젝트의 실행의 효과와 영향을 체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체제의 구축
 - 계속되는 감시와 영향평가를 위한 프로젝트의 향상과 효과를 나타내는 계량화된 지침의 수립
 - 프로젝트 고안과정에 정보체제와 감시행위를 위한 기금의 제공과 책임의 분담을 포함
 - 계속 진행중인 효과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 수집체제구축

2) 감사와 회계

- 회계장부와 기록이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실행에 일치하여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계장부와 기록을 만들고 유지하기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3)평가

- 광범위한 개념의 평가, 적시성, 그리고 필요한 기금의 제공과 책임의 분포를 포함하는 평가계획이 프로젝트고안시 수립되어야 함. 초기부터 평가가 실시되는 목표와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성격과 중요성은 자료취합의 정도와 구체성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에의 합법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

4) 기존경험으로부터의 환류

- 프로젝트의 심사와 고안과정에 체계적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하는 과거 행위로부터 배우는 경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다음은 효과적인 환류를 위한 방안임.
 - 과거 프로젝트로부터의 평가시 관찰된 사항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선택이나 고안과 같은 초기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진행중인 평가시 관찰된 사항은 이것들이 프로젝트의 관리과정에 빠르게 반영되면 될수록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제공함.
 -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금을 위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적절한 관찰 사항이 고려된경우에 평가의 관찰사항은 공식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무시되지않음.
 - 고위급으로부터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확실한 언급은 이의 환류과정의 제도화의 가장 중심요소임.
 - 경험상 교훈이 실제 담당자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체제구축의 고안 필요성이 있음. 인적 그리고 재정적인 배포를 위한 자원이 필수적인 요소임.
 -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최근 문제되는 이슈에 적절한 교훈을 줄 수 있는 형태와 우수한 내용을 보유한 상황에서 정책결정시 결정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
 - 다른 공여국과 수원국의 적절한 경험과 평가결과의 사용이 필요.

가. 협조융자와 조건부원조 경우의 특별한 고려사항들(Special Considerations in the Case of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id)

- 회원국들은 50%이하의 증여율을 가진 부분조건부원조나 협조융자나 조건부원조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개발우선순위의 검토시 87 년에 채택된 원칙에 있는 것처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수원국의 중앙재정 및 기획담당기관에 의해 이미 승인된 투자 및 공공재정 프로그램의 부분이어야 함.
 - 이미 존재하는 국제적 원조조정에서 검토나 혹은 일반적인 추인을 한 경우
 - 국제 개발재정기구와의 협조유자의 경우
 - 이미 국제개발기구나 DAC 회원국으로부터 낮은 개발우선순위 때문에 거절되었거나 고려되는 증거가 있는 프로젝트의 심사에는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함.
- 능률적인 구매는 프로젝트의 가격과 뒤따르는 운용 그리고 유지면에서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 조달이 조건부일 때, 이것은 공여국이 능력있고 효율적인 구매품의 선택등 신축적인 운영이 요구됨. 또한 효율적인 가격 및 품질 통제가 있어야 하고, 특히 수원국에서의 조달이나 다른 제 3 세계에서 구매가 필수적일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해야 함.

나. 프로젝트 승인(Project Approval)

- 프로젝트 선택이나 고안에 관한 최종의 결정은 정책결정 레벨에서의 판단사항이지만, 정책 결정자들에게 현재 고려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것 즉 기대되는 비용과 효과 그리고 의미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공되어야함. 최종승인은 모든 것이 고려된 후 결정되어야 함.
- 각 기관들은 정책결정 권한의 분산화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승인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프로젝트의 준비에 필요한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선택을 위한 정치적결정에는 아주 다른 행정구분이 있음. 이와 같은 행정적인 구분이 권한의 집중화 및 분권화의 구도에서 명확히 되어야 함.

다. 공여국의 조직적인 측면(Donor Organizational Aspects)

- 원조기관들은 프로젝트에 관한 심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을 보유해야 함. 그리고 이들이 외부에 용역을 준 심사자료를 잘 감독할 수 있어야함. 외부전문가로 부터의 직무는 참고개념에서 세분화 되어야하고 그리고 명확히 정의된 심사기준속에서 세분화되어야 함.
- 실제 업무집행 직원들은 최대한 심사규정과 표준을 적용하려고 노력

- 해야하고, 주어진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함. 원조기관들은 업무수행 직원들의 참고사항으로 DAC 이 정한 심사규정을 사용함이 가능함.
- 현장과의 밀접한 접촉은 효율적인 심사업무를 위해 필요. 직원의 적절한 해외사무소 배치는 바람직함.

라. 수원국의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국 요구사항과의 조화를 달성(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Recipients and Harmonization of Donor Requirements)

- 수원국의 과도한 행정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함. 원조의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는 쉽지 않지만 수원국이 따라야 하는 요구사항을 조화시키거나 단순화하는 기회는 지금까지 연구된 보고서와 자료를 잘 활용하여 추구되어야함. 기획과정의 사려깊은 고려를 통해 좀더 적절한 프로젝트의 기회과 불필요한 연구 및 자료 취합을 피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선택, 실시, 회계 및 평가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나 보고서는 수원국의 자체의 행정실시와 요구사항과 가능한 한 관련되어야 함. 수원국의 행정이 효율적인 프로젝트 준비와 선택의 강화가 요구되면, 개도국의 정보취합능력과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측의 합동노력이 행하여져야 함. 공여국은 특수한 정보에의 요구가 수원국에 가해질 때의 그들의 부담을 알아야 하고, 그들 자신의 행정기구를 통해 그들 자신의 특별한 필요를 맞추도록해야 함.
- 과정의 단순화의 한 방법으로 분야원조의 확대나 효율적인 과정의 채택이 요구됨. 이를 통해 특히 중소규모의 프로젝트와 같은 특별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그룹화되는 것이 가능함. 이와 같은 절차는 승인과정, 프로젝트관련 보고서의 정도와 세분화 및 조달방법등에 적용가능 함. 또한 협조용자 원조가 조화와 업무분담에 의해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지는지에 관해 다른 공여국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자료취합을 포함한 프로젝트 준비에의 철저함이 실시의 뒤따르는 속도와 효율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당화되더라도 수원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분량과 목표의 정확성 및 비용추산에 관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됨. 심사 시 업무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여국이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활용이 고려되어야함.

3. 기술협력에의 새로운 정향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New Orientations in Technical Cooperation)

가. 변화의 필요성(The Need for Change)

- 기술협력은 개도국 주민의 기술, 지식, 기술적노하우, 생산의 태도의 수준을 향상을 통해 인적자원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포함함. 기술협력의 중요한 목표는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발전에 있음. 여기에는 지속적발전에 필수적인 여러 제도의 향상된 기능도모와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정부부처, 지방행정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병원, 학교에서의 경제나 사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서 가능함. 인적자원의 개발은 제도구축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주요한 정부기관의 발전된 관리와 향상된 정책분석을 위한 능력배양은 특히 주요함.
- 기술협력의 주요 도구는 훈련에의 접근, 국내.외 전문가 제공, 정책, 그리고 기술적자문, 조사와 연구준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의 기여등이 있음.
- 기술협력의 메카니즘은 공적원조의 주여한 도구의 하나로써 30년 이상 사용되어왔음. 이는 개도국의 여러 기관의 능력강화와 수원국정부의 담당자들을 훈련시킴과 같은 주요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함. 기술협력을 통한 양측의 문화교류는 관계된 사회를 부유하게 하는 반면 매우 다른 관점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킴.
- 동시에 많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사용되어온 도구는 그 자체가 문제점으로 바뀌었음. 여러 실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기술협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 조건에 기인함. 기술협력은 정책이나 수원국의 수원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됨. 그러므로 기술협력이 이들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짐. 이와 같은 내재적인 어려움외에 부적절한 기획과 관리, 세밀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에 대한 개념부족, 프로젝트 실시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나친 강조, 국외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반대로 국내전문가에 대한 낮은 의존, 공여국간의 사업중복과 경쟁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경우가 많았음.
- 더욱이 비용지출의 규모와 사업에 관여한 외부전문가의 숫자는 수원국의 사회 및 경제체제에 심대한 압박을 행사함. 7개의 아프리카국가에는 공여국 원조기관에서 지원한 외부전문가에의 임금은 그 국가전체의 공무원보수보다 더 높았음. 외부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업체의 기득권을 만들었음. 이 결과 기술협력은 공급의존 경향을 띄게 되었고, 반면에 수원국의 역할은 수동적으로 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에 대한 필요성은 유능한 인적자원과 효율적인 기관이 부족한 개도국에게는 아주 높았음. 90년에 개발장관과 원조기관장들은 개발협력의 정책성명서에서 현재의 기술협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였음. 이 성명서에서 그들은 기술협력의 성격과 품질은 개도국의 장기적인 제도구축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화해야 한다고 주창하였음.
- 다음에 열거한 원칙들은 개도국의 장기적인 개발문제를 풀기위해 개도국을 효율적으로 돕고자 하는 희망에서 선진원조기관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기술되었음.
 - 기술협력의 전략적목표는 단기적 기술협력의 성과에 있기보다는 장기적인 제도구축에 두어야 함.
 - 기술협력의 기획, 고안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개도국의 중심역할을 강조함.
 - 분야별목표와 정책에의 조정에 대한 지지 그리고 특별히 프로젝트별 접근법보다는 프로그램원조의 사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원조의 향상된 기획에 중요성을 부여함.
 - 수원국내 NGO의 참여를 포함하는 참여접근법을 통해 의도된 혜택자들이 기술협력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강조함.
 - 특별히 정책분석과 개발관리분야에서 장기적인 제도구축에의 지속적 발전과 자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 민간분야의 기술협력에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고려함
 - 수원국내의 전문성과 기존 구조의 좀더 많은 활용에 인식을 같이함.
 - 투입보다는 달성한 결과의 개념에서 목표를 설정함.
 - 기술협력에 관한 비용과 비용효과분석에 많은 강조를 함.
- 이 원칙들은 개도국의 기술협력에 적용함. 특히 외부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구축을 요구하는 나라에는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함. 그리고 제도적으로 발전한 선발개도국에게도 아직 인적자원개발에의 필요성이 높으며, 그리고 특수분야에 기술능력을 이전하는 필요성을 인지함.

나. 기술협력원칙: 수원국의 중심역할과 파트너십개념(Technical Cooperation Principles: The Central Rol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Partnership Concept)

- 수원국이 기술협력과정에 참여해야 함. 그들은 단순히 공여국으로 부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성을 정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해야 함. 기술협력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수원국, 혜택수혜자, 그리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의 지속성과 자족을 향상시키는 기초이고 이와 같은 것은 공여국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함.
- 기술협력은 최소한의 개입원칙을 유지해야 함. 이것은 국내의 대안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을 의미.
- 제도적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전통의 기술협력이 제공한 양측간의 열등관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대신에 양측간의 진정한 협조 자정신이 형성되어야 함.
- 기술협력시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함. 기술협력 고안자는 관련한 사회-문화, 경제, 정치 및 제도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함. 유능하고 감각있는 전문가와 적절한 기술의 선택은 기술협력의 효율성에 긴요한 역할을 함.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환경을 평가하기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확인하기위한 연구가 필요함.

다. 참여 개발

- 기술협력을 비롯한 각종 개발원조관련 프로젝트의 확인, 기획, 실시,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혜택수혜자의 참여는 공여국이 사업을 종료한 후 이 사업의 책임과 지속성 및 완전한 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기술협력프로젝트의 고안시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가 요구됨. 이것은 효율성측면만 아니라 수혜의 동등한 접근을 위해선도 필수적임. 공여 원조기관은 이를 이용하는 관리기법을 사용해야함. 가능한한 기술 협력 고안시 이로 인한 사용자 및 수혜자들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세부적인 법규가 마련되어야 함.
- 기술협력은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민주화과정 지지에 적합해야함. 선하고, 열린 그리고 책임있는 정부의 향상, 법률제도의 강화, 법치 및 재정회계를 이용하여 제도화를 강화함으로써 인해 부패해소는 전통의 기술협력의 범위에서 벗어나 자문 그리고 훈련의 확대에 많이

의존함. 민주사회의 근간인 인권향상조직은 고무되어야 함. 기술협력 관련 인적자원은 인권과 일치되지 않는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

- 기술협력의 기획자, 실행자 그리고 혜택자로서 여성의 완전한 포함은 지속적 참여적발전의 달성하는데 긴요하고 모든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빈곤층들이 교육, 훈련, 기초보건의 접근 그리고 영농민과 사업가들에게 대부 및 자문과 같은 기초적인 서비스에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기술협력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을 통한 비용분담에 관한 광범위한 참여는 수혜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지속성을 용이하게 함.
- 좀더 많은 분권화에 대한 진행은 기술협력으로 하여금 지방 개발은행, 전문가집단 그리고 무역조합과 같은 민간단체, 그리고 지방정부, 및 시도단위조직의 강화를 돕는데 새로운 역할을 하게 함을 의미.

라.제도발전

- 지속적, 동등하고, 자체발전의 향상은 그 국가의 제도적 그리고 조직의 능력의 힘과 질적이 측면에 많이 의존함.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한 기여는 개발협력의 전반적인, 그리고 특히 기술협력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 인적자원개발은 제도발전의 필수적임. 원조는 이것이 기능하는 수원국의 제도의 장기적측면에서의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한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효율적인 제도구축은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의 장기적 다짐이 요구됨. 이것은 또한 분야별목표와 요구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맥락에서 기획되어야 함. 그러므로 기술협력의 선호도는 기술협력의 자체 연속성에 유도되어 단순한 기술상의 겉을 채우기보다는 관련 국가의 장기적인 능력배양에 두어야 함.
- 기술협력은 그것이 공공기관이든지 민간기관이든지에 상관없이 기존의 제도와 능력위에 구축되어야 하고, 원조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그 비슷한 기능의 조직의 발전은 피해야 함.
- 기술협력을 통해 능력배양을 해야 하는 기관의 선택은 관련 국가의 다양한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기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기관의 종류는 모든 분야를 포함해야 함. 즉 공공분야 관련기관, 재정기관, 법적, 교육기관, 사업체, 지방단체 및 봉사기관등을 의미. 이 모든 기관들이 각종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개인적인 에너지가 축적되어 사회 전체분야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 중앙,

그리고 지방 및 분야별 수준의 정책결정 및 자원관리 능력의 배양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고안과 시행은 효율적인 제도에 의존함. 이것이 기술협력의 주요한 한 부분임. 지방 기관은 위에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교우위를 줄수 있을 때만 기술협력이 실시되어야 함.

마. 정부와 시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향상된 기능

- 능력있는 공무원과 공공관리는 발전의 필수적임. 이것이 기술협력의 제도구축, 기획 및 훈련의 핵심을 구성함.
- 자질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부족이 개도국 공무원들의 비효율적인 서비스로 유도하는 가장 핵심 문제점임. 공여국은 개도국 공무원의 임금을 매꾸어주기보다는 개도국이 자체 공공서비스분야의 개혁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공여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개도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수반될 때 효과적임.
- 공공서비스 개혁이나 보수문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한 면인 안정과 구조조정노력의 한 부분인 공공비용 지출의 강한 억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내포함.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공공분야 개혁에는 아주 세심한 우선순위 조정을 요구. 이를 위해 효율적인 개도국 발전전략,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에 기초한 조정된 여러 원조기관들의 합동지원전략이 개별적인 원조기관에 의한 지원보다 우수함.
- 원칙적으로 봉급지원 실시는 피해야 함. 이것은 임금왜곡을 심화시키고, 옅은 수원국의 행정기술에의 공여국의 경쟁을 강화시킴. 예외적으로 양측이 상호 이와같은 실시가 불가피하다도 의견일치시, 봉급지원 및 프린지혜택은 지원될 수있음. 그러나 이때에도 이 실시는 시간적인 기간이 명백하고, 뒤따르는 규정이 투명하며, 양측이 의견 일치하는 중앙행정 기관을 통해 공여국의 실시가 조화되어야 함. 개혁조치는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상호 약속의 일부분이 되어야 함. 예외적인 경우는 공공서비스 개혁과정의 완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함.

바. 종합 프로그램 접근법

- 기술협력의 기획, 선택, 그리고 고안은 프로젝트별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프로그램원조는 분야별, 주제별, 다기능적, 그리고 다수의 공여국 합동형식에 기초해야 함. 기술협력을 기획시, 지방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함.

- 90 년 개발협력의 정책성명에서 회원국의 개발협력장관과 원조기관의 장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원칙을 표명함. 즉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원조사업을 분야별 프로그램,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조정된 지원의 맥락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임. 이 원칙은 특히 기술협력에 적용하게 함. 기술협력은 개별적 접근법에 의해 피해를 보고있음.
- 기술협력은 거시적, 분야 그리고 소분야별 전략, 그리고 개도국의 자체 발전프로그램과 밀접히 관련됨. 이것은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공여국 의존방식의 기술협력을 피하고, 그리고 수원국 자체지원비용을 적절하게 허용하기위해 지원개도국의 기획과 예산속에 포함되어야 함.
- 공여국과 국제기구들은 그들 자체의 기술협력 제안서를 제공하는데 역제력을 가져야함. 그들은 기술협력시 수원국 자체 투자사업의 일부분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위한 원칙을 적용해야 함.
- 국가전체 및 하부분야 전략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양측은 개별 사업의 효율적인 심사, 실시, 감독,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활용되는 기술협력의 목표를 세분화해야 함. 목표는 명확히 정의되어야하고, 발전되어야 하는 제도구축의 개념으로 명확화 되어야하며, 투입의 개념보다는 성공적인 산출의 개념에서 정의되어야 함.
- NaTCAPs(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Assessments and Programmes)와 같은 과정은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기술협력이 필요로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프로그램화 및 수원국의 기술협력에 대한 주인의식을 신장시켜줌. UNDP 의 역할이 이와 같은 방법론을 도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있지만 기술협력의 목표와 필요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의견일치를 위해 공여국과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몫임. 수원국의 모든 원조활동에 대한 그리고 기술협력에 관한 중앙정보체계의 구축은 이의 목표에 기여함. 그러므로 모든 공여국들은 정책들의 형성 및 정책들이 채택되었을 때 여기에 포함된 원칙을 고수하기위해 수원국이 요구하는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해야 함. 그러나 수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위한 노력도 가해져야함.
- 제도 및 조직발전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잘 정립된 청사진 그리고 단기적인 사업의 목표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어야함. 공여국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관여해야 함. 이와 같은 종합적인 청사진은 기술협력과 자본지원의 종합기획이 요구됨.
- 기술협력의 효율성과 지속성은 적절한 기구와 부품의 공급, 백업 서비스 그리고 병참관련 사항들이 기획과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향상될 수 있음.

사.비용과 비용/효과에 대한 높은 관심

- 양측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모든 대안의 비용을 잘 알 필요가 있음. 비용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임.
- 일반적으로 기술협력은 증여의 형태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 아님. 이는 이 협력을 지탱하기 위한 후속비용과 관련 지역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며 이것은 비용이 꽤 소요됨 어떤 개발행위는 맨 처음 수원국이 경상비를 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측의 의무에 대한 의견일치의 유무, 그리고 수원국 정부 예산내에 관련 비용의 포함여부에 달려있음. 재정당국은 진행중인 사업에 비용의 관련 사항, 운영 및 유지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함. 그리고 여기에 향후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에 의견 일치해야함.
- 모든 기술협력관련 사업에 있어서 관련 수원국에 주어진 비용이 관련 수원국의 예산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안에 있고, 그리고 관련 기관의 예산에 있도록 조정을 위한 접근법이 필요함.
- 비용/효과분석에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함. 기술협력을 위한 계량적인 비용/효과비율이 세워지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함. 이 비율은 매우 높을 수 있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가장 기초차원에서 매우 고비용의 외부 전문가에 많이 의존할 때 이 비율은 투입과 산출의 측면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질 수 있음.
- 프로젝트심사에 관한 DAC 원칙은 기술협력에 유용한 비용/효과분석에 관한 추천을 포함함.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음. 즉 기술협력의 경제적 회귀의 의미를 계산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 모든 관련 요소가 비용 및 효과의 측면에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고려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또한 수원국에 이용가능한 회귀자원이 관련 프로젝트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대효과와 비용에 관한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함. 비용/효과 분석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음.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확인시켜주는 사업 때문에 혜택자의 수, 혜택자 일인당 상대적인 비용,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단가, 서비스와 이로 인한 혜택의 표준 및 질적인 측면을 말함.

아. 민간분야의 필요성을 인지

- 좀더 나은 경제성장과 광범위한 경제.사회발전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동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함. 이와 같은 근본태도에 대한 변화는

기술협력 고안시 크게 인지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분야는 효율적인 공공분야의 도움없이 비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술협력의 배분에 있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와의 비대칭성을 종결하려는 데에 새로운 정향이 주어져야함. 공공분야에의 지원은 민간분야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교육과 훈련은 민간분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

- 민간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협력은 거시적 그리고 분야별 모두에 경제정책개혁을 위한 제도발전과 정책자문을 포함함. 여기에는 공공분야와 외국과의 무역에의 탈규제, 민영화를 포함하는 공공분야의 재활을 위한 조언, 그리고 관리자, 회계담당자, 기술자, 엔지니어 그리고 직업훈련 담당자들에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포함됨. 그리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도구로써 공사의 설립에 있어서 공여국의 민간기업의 경험을 이전하는데 주안점이 주어져야 함. 또한 이와 같은 지원하기 위한 법적장치와 적절한 대부서비스기관의 설립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공여국의 민간기관과 수원국의 민간 담당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전문가의 상호방문 및 합동사업실시를 포함함.
- 상당한 수준의 기술협력이 민간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될 때, 경쟁적인 왜곡을 피해야 함. 프로젝트심사에 관한 DAC 원칙은 적절한 개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자. 향상된 조정

- 90 년대에 개발협력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향상된 원조조정에의 지지를 재확인함. 특히 수원국 원조조정에서 원조기관의 현장 근무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실시. 그리고 좀더 큰 규모의 분야별 프로그램, 정책과 목표,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수원국자체의 능력배양에 대한 지원등이 포함됨.
- 수원국 정부는 기술협력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기위해서 관련 중앙 정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음. 개별 개도국의 국가정책 및 분야별 프로그램이 조정이 기초를 제공. 수원국 정부내의 조정노력은 적절한 관련 부처나 혹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에 의해 인도되어야함. 그러므로 개도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혹은 이 역할을 집단을 지원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조정은 양자간 기관이상을 포함해야 함. 즉 기술협력의 조정시 NGO 나 민간기관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이 노력에 동참하게 하는 것에 많은

주안점이 주어져야 함.

- 관련 수원국에게 매우 큰 규모의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공여국으로부터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UNDP & World Bank 는 현장에서의 기술협력 실시에 있어서 조정과 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World bank Consultative Group 과 UNDP Round Table 은 일반적인 의제로 기술협력에 관련된 이슈를 포함시켜야 함.
- 공여국에 의한 기술협력에의 약속은 다른 공여국이 제공하는 내용과 이용가능한 공동활용 수원국 전문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에 기초해야 함. 양측은 기술협력의 정책, 절차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이용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접근 가능해야 함. 향상된 공여국간의 조정은 중앙조직과 수원국에서 평가서 및 다른 보고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프로그램, 고안, 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포함함.
- 공여국은 외부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임무나 조건의 흐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수원국이 맞이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함. 공여국들은 그들의 임무의 숫자를 줄이거나 합동임무의 가능성을 추구하기위해 공여국간의 협의를 해야 함. 향상된 조정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공여국이 요구하는 규칙을 잘 지키게하며 그리고 공여국 중심의 기술원조를 경감시키게함.

가. 기술협력 도구와 모달리티(Technical Cooperation instruments and Modality)

1) 향상된 훈련의 우선순위

- 훈련은 인적자원의 발전과 제도발전의 핵심임. 그러므로 자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어떤 수준에서든지 교육과 훈련에의 필요성이 있음. 기본적인 관점과 자원배분이 기초교육과 직업향상에 주어져야 함. 훈련은 교육제도와 정책분석, 경제적관리 및 민간분야의 발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민간분야는 그 자체가 특별한 훈련필요성을 만족해야 함.
- 공여국은 훈련과 교육행위가 분야별 필요와 경제적현실과 잘 연결된 국가훈련 전략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정부, 민간분야 그리고 NGO 들은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국가전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목표의 설정에 함께 참여해야함. 양측의 기존의 훈련시설과 능력이 필요성과 관련하여 세밀히 평가되어야 함.
- 인적자원개발은 광범위한 목표이며, 아주 협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정의

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훈련의 우선순위와 전략을 결정하는데 우선순위가 개개인의 이해보다는 국가전체의 필요성에 주어져야 함. 훈련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경험이 최대한 활용되도록하고 어느 기간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분야에 남아 있을수 있도록 모든 노력이 가해져야 함.

- 지속성, 자족, 그리고 비용/효과 측면에서 기술협력은 가능한 한 직접적인 훈련보다는 개도국의 훈련능력의 강화와 훈련생의 훈련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 수원국의 기존의 훈련시설의 강화가 새로운시설의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함. 훈련의 질적인 면은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와 훈련교재의 공급에 의해 향상될 수있음. 훈련기관들은 합의된 기초위에서 수원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경상비를 위한 명확히 정의된 예산이 계산된 장기적 재정계획을 고안해야 함.
- 양측은 수원국과 이의 지방에서의 훈련에 특별한 강조를 두어야 함. 수원국에서의 훈련은 공여국에서의 훈련보다 비용도 적게들고, 그리고 수원국의 필요성을 잘 반영함. 이는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사람의 이전을 방지함.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에서의 훈련이 인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때, 선택된 훈련기관은 성과와 비용/효과면에서 신뢰성을 가져야 함.
- 그러나 수원국의 기술능력 강화시 수원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대학수준의 특수훈련과 같은 것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공여국에서의 훈련이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일수도 있음. 또한 외국에서의 훈련은 국제적인 이해 및 협력을 고양시키게 하며 정책결정자나 미래 지도자로 하여금 다른 개념의 발전에 관한 관점을 제공할 수있음. 동창모임이나 연결이 훈련의 지속성 및 효과를 고양시킬 수 있음.
- 전문성과 사업적인 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모든 훈련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고양시켜야 함. 공여국들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함. 동등한 접근 및 참여라는 장기적목표에서 여성은 훈련포창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 수원국내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사, 산업 및 상업적인 회사, 통신으로 하는 훈련, 현장훈련과 같은 비정기적인 훈련접근법은 상당한 수준의 잠재력을 제공함. 라디오, 텔레비전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피훈련대상에게 훈련을 시키는 유용한 도구임. 내부의 훈련은 기존의 직원의 기술의 유지와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위해 확대되어야 함.
- 장학금과 각종 보조금은 개발필요를 만족하기위해 아주 신중하게 목표화 되어야 함. 수원국자체나 다른 개도국에서의 연구는 적절한 훈련시설이 활용가능한 한 사용되어야 함. 외국에서의 낮은 수준의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함.

2) 외부전문가의 역할과 전문가와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

- 외부전문가의 공급(전문가, 자문관, 그리고 자원봉사자)은 기술협력의 주요한 도구임. 기술협력의 성공은 전문가의 지식 및 경험의 전수능력과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기위해 도움을 주는데 많이 의존함. 그러나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 까지 외부전문가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자족을 달성하는 목표에 반할 수 있고, 소비형태의 원조침투 및 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함.
- “상대방과 전문가” 관계의 재검토는 서로가 기능과 책임을 소유하고, 또한 양측이 상호 동등하다는 진정한 파트너쉽의 구축에 목표를 두어야 함. 자문가와 수원국의 상대자간의 진정한 파트너쉽은 외부전문가가 기술지식을 공유하고, 동시에 그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원국의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적맥락을 배움에 의해 양측이 상호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함. 외부전문가의 업무에 대한 역할, 직무 및 기간은 관련기관에서 정의한 수원국의 필요에 적응해야 함. 상대방에 대한 훈련은 적절한 강조점을 갖게 되어 가장 짧은 시간동안 훈련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양도받을 수 있어야함.
- 수원국내의 기관구축의 기술협력의 목표에서 볼 때, 프로젝트 건축이나 운용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예외적이어야 함. 외부전문가의 활용은 수원국 담당자가 이일을 맡을때까지 가장 짧은 기간은 허용될 수있음. 또한 아주 값지고 복잡한 기구의 운용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면 이같은 조치는 개도국에게도 도움이 됨.
- 운용적인 측면보다는 자문제공의 역할로 장기적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고 수원국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의 훈련종료후 관련기관에의 후속방문을 포함한 짧은 기간의 전문가의 활용에 많은 강조점이 주어져야 함. 이 접근법의 잇점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이 수원국 담당직원에 있다는 점이고, 외부전문가는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것임. 이것은 또한 외부전문가의 장기체류에 따른 병참업무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기술협력담당 전문가의 성과는 좀더 신중한 모집,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좀더 나은 설명, 강한 기술적지식 그리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을 때 향상될 수있음. 공여국은 전문가를 선택할 때 그의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 전달 능력과 경험을 고려해야 함. 결과에 대한 좀더 빠른 기대 때문에

기술개발의 과정을 좁히게 해서는 안됨.

- 공여국 전문가나 직원들을 위한 수원국에서의 합동 내부훈련이 고려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수원국의 상대방을 알게 되어 원조 절차와 조정이 원활히 될 수도 있음.
- 수원국과 합동으로 만들어진 기준표(Terms of Reference)에는 이의 목표, 담당협력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시를 위한 시간표를 수립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장기적인 과제의 경우에는 양측은 정기적으로 이 참고사항을 검토해야 함. 계약만료시 외부전문가의 재임에 대한 문제점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기술협력담당자의 선발에 있어서 여성자원의 활용이 중요. 기술협력의 각 분야에의 많은 여성전문가의 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적게 활용되고 있음. 여성전문가의 증대된 활용은 여성과 여성그룹이 프로젝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줌
- 약간의 회원국가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 “Large term”에 관한 유보적 입장이 표명됨.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되지않는 한 “large term”(10-20)명의 전문가집단)는 수원국의 전문성개발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3) 수원국 자체 전문가 및 제 3 국 전문가의 활용

- 회원국들은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 한 그리고 수원국내의 관련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국 자체 전문가나 기관 그리고 자문가의 활용이 요구됨. 이들에 대한 비용은 외부전문가보다 일반적으로 낮음. 수원국자체 전문가의 활용은 활용 가능한 전문가에 대한 정보, 전문가충원에서의 신축성, 그리고 증가된 기술협력에의 공여국의 비조건부원조, 그리고 현장직원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 완전한 수원국 자체 전문가의 활용은 수원국 부담 비용이나 다른 적절한 지원에 관한 신축적인 공여국의 태도를 요구함.
- 공여국의 자문회사를 통한 수원국의 자문회사의 활용과 수원국과 공여국 자문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이 촉진되어야 함. 공여국은 이를 위해 첫째 수원국 자문관을 훈련시키는데 지원해야 하고, 둘째, 공여국과 수원국의 자문회사 사이의 상호접촉을 촉진하며, 셋째, 수원국 정부가 자국의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넷째, 수원국의 새로 설립된 자문회사가 국제시장에 알려지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함.
- 공여국은 기술협력을 담당하기위해 다른 개도국으로부터 자국전문가를

충원할 준비를 해야함.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수원국에게 확대된 재정적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TCDC는 인재유출을 조장하지 않는 한 촉진되어야함. 이와 같은 위험은 지역간의 협력을 높임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음.

4) 조직훈련

- 상호합의는 제도발전과 기술전수를 위해 유용한 것으로 판명됨. 양측은 중앙 및 지방간의 합의, 그리고 상업적목적의 조직과 NGO 간의 이와 같은 합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이의 효과는 목표와 직무와의 적절한 조화, 상호신뢰, 실현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의 적시성, 공통의 장기적인 약속, 수원국의 환경에의 적응에 대한 공여국 기관의 의지, 그리고 직원 및 재원의 활용가능성에 의존함. 적절한 관심이 이와 같은 합의를 감시하는데 주어져야 함.

5) NGO 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 NGO 는 그들이 빈민과의 접촉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수원국의 적극적자세 및 참여개발의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가장 낮은 수준의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조직이라 증명됨.
- 수원국정부는 자국의 NGO 와 함께 프로젝트 확인, 준비 및 실시에 있어서 협동하는 것에 권장되어야 함. 공여국은 이 같은 그룹이 활용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체의 전문적기술과 훈련을 고양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제도적 강화 와 향상된 관리능력배양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함. 또한 공여국은 NGO 와 수원국정부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켜야 하고, 내부의 심의조직과 국제네트워크에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양자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과 UN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모든 다른 기술협력담당자에게 있어서 능력있는 인적자원이 충원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의 자원봉사자는 대개 경험이 많고 동기가 부여된 전문가임. 그들은 특히 수원국과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유용함이 증명됨.그들이 다시 복귀시, 그들은 남-북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함.
- 자원봉사자들은 능력있는 담당자와 대치될 수없음. 개별적인 직무묘사는 수원국의 필요와 특별한 재능에 응답하는 기능과 동력자들과의 대화, 수원국의 적극적자체노력, 자족, 그리고 적응이나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자원봉사자의 이력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해야 함. 양측은 수원국의 종합계획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나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됨.

- 자원봉사자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에 적절한 비용으로 그들이 은퇴했는지에 상관없이 고위전문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특히 민간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욱 개발되어야함

나. 감시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 기술협력은 관리자나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 효과적인 실시 및 공공 책임을 위한 모든 정보가 주어지기위해 체계적인 감시기능과 평가기능이 요구됨. 개도국은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중심역할을 수행해야 함. 공여국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의 제도적 능력배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모든 기술협력 활동에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적절한 평가방법을 고안하거나 그리고 기술협력관련 자료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가해져야 함. 이를 위해 수원국에 가해지는 비용은 아주 자세히 계산되어야 함.
- 회원국은 기술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평가원칙을 개발함. 회원국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기술협력을 위한 적절한 평가방법의 원칙을 보완하기위해 다 함께 협력하고 있음. 현재 회원국과 국제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이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이전된 기술이 잘 확산되고 뿌리를 내렸는지, 혹은 기술협력의 지속성이 인적자원개발에 기초한 제도발전에 기여했는지에 관한 기술협력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통의 질문서를 사용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함. 또한 그들은 기술협력, 특히 제도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의 비용/효과를 측정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현재까지 기술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측정으로는 효율적인 제도구축과 법적장치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존이 궁극적으로는 감소되었는지에 관한 범위의 측정임.

4. 프로그램 원조의 원칙(Principle for Programming Assistance)

가. 도입 및 개요(Introduction and Summary)

- DAC 은 원조의 프로그램이나 관리등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일련의 정책 원칙을 제안함.. 다음의 원칙은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주요노력의 관점에서 경제협력의 주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원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이 원칙들은 양측이 프로그램원조 제공시 주의를 요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음.

1) 프로그램의 형태와 목표

- 프로그램원조는 일반적인 개발목적으로 수원국에게 제공되는 모든 기여를 말함. 여기에는 국제수지지원, 특별한 프로젝트활동에 연계되지 않은 일반예산지원 및 상품지원이 포함됨.
- 프로그램원조의 광범위한 접근법은 개도국의 거시적 그리고 분야별 수준에서 잘 정의된 정책목표 및 프로그램을 지지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다른 원조수단의 활용을 포함함. 상호 관련된 프로젝트원조의 패키지들을 포함한 공여국의 분야별지원 사업중에서 기술협력, 분야별 투자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원조는 원조제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회원국들은 좀더 거시적인 분야별 프로그램, 목표 그리고 정책을 위한 조정 맥락에서 원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봄.
- 프로그램원조는 공여국이 거시경제의 요구와 개별경제와 사회분야(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요구 관계에서 향상된 개발에 필수적인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조장하고자 그 사용이 증대되고 있음. 프로그램원조는 또한 적절한 환경에서 개도국의 확대된 일반적인 경제지원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음. 적절한 책임을 보장하고, 자족과 자립에의 유도를 유지하며, 그리고 비적절한 정책에의 지원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원조의 지원과 이에 의한 결과사이의 명확한 연계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립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
- 모든 종류의 원조가 정책향상에 관계되지만 특히 정책관련 프로그램 원조는 정책변화를 조장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임. 모든 프로그램원조는 명목상 그리고 실제상으로 경제 및 개발정책과 관련됨. 그러나 프로그램원조가 세부적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에 관련된 정도는 다름. 여기에는 World Bank 나 IMF 와 연계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원조로부터

특별히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이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지원 프로그램등 다양한 종류가 있음.

나. 기본원칙

- 다음에 정한 프로그램원조의 원칙들은 다음의 필수적인 요소와 합쳐짐.
- 경험을 통한 교훈 그리고 연계된 광범위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정책의 관심을 합침에 의해 프로그램원조는 계속적인 주요한 역할을 보유함.
- 프로그램원조와 기술협력이나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에의 재정 지원과 같은 다른 원조형태는 보완적임. 이 모든 수단은 그들 자체의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음. 이 수단들은 개별국가의 상황과 필요성에 적응해야 하며, 그리고 조정되고 상호 강화의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
- 개도국은 스스로 그들의 개발프로그램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경제 및 국민들에게의 영향에 궁극적인 책임을 짐.
- 정책형성, 기획,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원조의 확장은 함께 나아가야 함.
- 정책관련 프로그램의 원조의 경우 합의된 정책의 고수를 포함한 프로그램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적절한 안전책과 감시체제는 향상된 경제적 성과와 양측의 이익추구에 필수적임.
- 프로그램원조는 수원국과 양자간 원조기구 그리고 적합한 다자간기구간의 강력한 조정을 요구함.
-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부분인 정책대화는 강력한 다자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 양자간 정책대화는 국제적인 원조조정 체계에서 검토된 것처럼 수원국 정책들의 경향과 우선순위와 일치하여야 함. 경제적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의 주요한 요소는 다음을 포함함
 - 시장경제정책과 생산적인 민간분야의 조장
 - 무역과 환율체제 및 정책의 자유화 와 합리화
 - 건전한 재정, 금융정책 그리고 재정관리와 세금제도의 향상
 - 공공투자 및 보건, 교육분야 같은 핵심 공공서비스 분야 운영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향상
- 분야별지원에의 프로그램원조는 다음에 열거한 전략적인 정책관심사항과 목표의 진행에 기여함
 - 모든 경제, 사회 및 정치차원에서 참여적개발을 촉진
 - 개발원조의 사회영향을 향상시킴
 -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강화
 -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강화

- 환경적인 지속성에 기여
- 역동적인 민간분야의 개발을 조장
- 지역간의 협력과 경제적통합을 지원

- 원조의 기본적인 장기적 목표는 개도국의 행정적이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자립을 강화시키는 것임. 개도국이 자체의 기본 정책환경과 그들의 행정능력의 강화에 전진을 달성했을 때, 실시과정에서 공여국의 관여를 줄일 수 있으며, 그리고 원조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위한 개도국 자체의 기관과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의 증대를 달성할 수있음.
- 과거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음. 즉 수원국의 정책 및 행정환경이 부적절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않다는 것임. 물론 긴급원조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가피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때에도 정책개혁과 체도구축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선결과 민주화, 동원, 그리고 과다한 군비지출억제노력을 포함하는 향상된 자원활용에 대한 진전을 포함한 개도국의 자체 발전노력이 개도국사이에 프로그램원조의 배분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
- 다른 정부간 원조처를 프로그램원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심각한 침해상황에는 부적절함.

다. 개도국의 중심역할(The Central Role of Developing Countries)

1) 프로그램 고안과 실시에 있어서 개도국의 책임

- 개도국 스스로가 그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책임을 져야 함. 이 원칙은 주요한 정책개혁조치와 관련되고 그리고 경제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원조에도 특히 적용됨. 개도국은 그들 자체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것은 국제적인 조정행위의 기초는 정책 및 프로그램 성명서, 그리고 국제원조조정체제를 책임지고있는 개도국의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함.

2) 능력배양의 결정적인 역할

- 개도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좀더 확고한 노력이 요구됨. 정책,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을 위한 능력배양 그리고 실질적인 수준의 프로그램원조의 확대는 같이 나아가야 함. 이것은 능력있는 국제기구나

양자간 원조기관을 통한 강화된 기술협력과 자문역할을 요구함. 회원국들은 기술협력의 새로운 정향의 원칙을 채택하였음. 여기에는 핵심적인 경제 담당부처를 포함한 개도국행정의 능력배양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음.

라. 효율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The Central Importance of Support for Effective Policies)

- 효율적인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수적임. 많은 개도국이 자체의 지출시 우선순위에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통해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이 과정은 완결될 수 없으며 계속 진행성의 성격을 가짐. 프로그램원조, 특히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는 요구되는 변화로부터 과도기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좋은 정책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도구임.
- 구조조정프로그램은 외부와 내부상환의 불균형을 수정하기위한 단기적인 안정노력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 이것은 또한 사회조건, 고용기회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분야적수준에서 기본적인 구조정책개혁까지도 다루고 있음. 그러므로 구조조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과 노력사이에 구분이 없으며, 또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분도 없음. 오히려 구조조정의 목표는 간접자본과 생산능력에 대한 주요한 새로운 투자와 같은 지속적 경제.사회발전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경제조건과 정책환경을 이룩하는데 있음.
- 대규모의 거시적경제에 대한 프로그램원조와 같은 것은 특히 모호한 부분의 원조이기 때문에 공여국은 수원국에게 그들의 종합적인 자원 및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는 개발목표와 일치해야 하고, 또한 값지고 품위있는 프로젝트나 대규모의 군비지출에 신경을 써야 함. 자세히 심사되고 우선순위화된 공공지출 프로그램은 이점에 있어서 근본임. 이들은 또한 프로그램원조와 프로젝트원조와의 연계를 제공함.
- 양측의 프로그램원조를 위한 정책대화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표, 명확히 확인된 구조적인 조치와 함께 요구되는 실행, 그리고 수원국의 정책 및 공여국에서의 기여에 관한 의견일치를 찾기 위함.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감시를 돕기위해 필수적인 정책단계에의 지표와 표징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함.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준비에 있어서 신축성과 선택성에 관한 필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 효율적인 정책의 구체화에는 개별국가의 상황 즉 정치, 사회, 경제상황과 연결되어야 함. 정책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장기적인 개발목표와 일치해야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될 수 있음.

- 국가자원의 좀더 확대되고 생산적인 사용에 기여하는 시장가격을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 및 유도체제
 - 광범위한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전략적요소로써 생산적인 민간분야의 확대를 위한 조건의 창조
 - 성장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로써 물질적이고 인적자본이 생산적인 투자에의 활용 과 국내저축을 촉진하는 정책과 제도구축
 - 외부적인 경쟁을 부추기기위해 자원배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위해 무역구조와 환율정책의 자유화
 - 비지속적인 재정 및 외부적인 불균형, 결과적인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한 비용 및 임금왜곡을 피하는 경제, 재정정책
 - 보건, 교육,예산제도의 합리성, 공공분야의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이의 민영화와 같은 핵심투자분야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의 선택과 감시의 향상된 체제에의 재정관리의 향상
 -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능률성, 접근성 그리고 지속성의 향상
 - 국가의 지속적인 자원동원능력에 맞게끔 적절한 교육, 기초보건, 그리고 다른 필수적인 서비스 및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기위한 세입을 유지하면서 근무, 저축, 투자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도책사이에 어려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세금제도
- 민간기업 발전에의 적절한 재정지원은 정부간에 움직이는 원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임. 프로그램원조는 국내저축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민간분야에의 투자로의 배분이나 동원을 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률적이고 역동적인 재정시장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이점에 있어서 감시 및 감독기능의 강화를 포함한 은행 및 재정분야의 개혁과 재정중계기관의 제도적능력의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가장 근본적임.
- 아주 크게 구분되는 개도국 지역에는 강한 경제적 통합이 향상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원조는 지역적분산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적절하다도 판단시 지역적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함. 그러므로 프로그램원조는 지역적 경제에의 영향에의 평가를 포함해야 하고, 긍정적인 지역경제환경을 조장하는 지역협력과 지역 인프라의 개발에의 지원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를 찾아야 함. 이것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개도국으로 하여금 경쟁력이 있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좀더 강하고 좀더 합리적인 경제구조의 창조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다자간무역정책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향한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어야 함.

다. 참여적개발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원조의 역할(The Role of Programming Assistance in Promoting Participatory Development)

- 프로그램원조는 수원국에게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실시해 있어서는 수원국에게 많이 의존함. 선한정치와 재정책임과 같은 참여적개발은 이와 같은 원조에 특별히 의미를 지니며, 이와 같은 요소가 정책대화와 정책의 고안시 고려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수원국들과 다음의 분야에서 참여적개발을 달성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 빈곤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수원국민을 위한 교육, 훈련, 보건 및 가족 계획,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위한 선택, 행정과 재정적지원에 더 많은 참여등과 같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둠.
 - 중앙 및 지방수준에서 부패의 유인책 및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민주화, 선정으로 인도하는 제도, 정책 및 실시를 강화하는 개도국을 돕는 것.
 - 개인, 공동체에 의한 이너서티브, 민간기업 및 시장체제의 역할강화, 그리고 생산자본에의 폭 넓은 접근을 용이하게 함.
 - 원조의 혜택자와 그리고 원조에 의한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과의 접촉
 - 여성들이 정책결정자, 담당자 그리고 기초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
 -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법적제도를 포함한 인권의 고양. 이는 특별히 양자간 원조기관이 잘 수행해야 할 분야임.

바. 프로그램원조의 신중한 준비의 필요성(The Need for Careful Preparation of Programme Assistance)

- 프로그램원조는 신중한 준비를 필요로 함. 이와 같은 신중한 준비가 없이는 이 원조는 비지속적인 공적, 사적소비를 조장하며, 또한 장기적인 개발과 자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비적절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음. 프로그램원조예의 가용한 자원은 제한되어있고, 공여국들은 자국민들에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수원국, 공여국 및 다자간 개발기구사이에 대화에 기초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요구점이 접근법은 다를지라도, 프로그램

원조와 프로젝트원조는 그들이 준비되는 노력면에서는 차이점이 없음. 프로그램원조는 프로젝트원조만큼 관리능력이 요구됨. 그러나 다른 분석과 교섭을 위한 기술이 요구됨. 과거에 프로젝트의 재정지원을 강조한 원조기관들은 프로그램원조의 고안을 위한 적절한 경험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1) 목표와 책임의 명확한 세분화

- 프로그램원조로 인해 이룩해야 할 목표의 명확한 세분화는 성공적인 실행과 뒤따르는 평가에 필수적임. 정책개혁과 지출에의 새로운 방향 정립은 신중히 정의되어야 함. 관련 수원국의 세부적인 상황과 관계된 핵심목표의 확인은 비세부적인 많은 목표를 가진 사업에 비해 더욱 성공적인 실시를 달성할 수 있음.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목표는 대개 다목표임. 기타의 양자간의 목표는 보완적이고 일치성을 가져야 함.
- 프로그램심사와 실시에 대한 양측의 기여와 책무는 완전히 명확히 기술되고 그리고 합의가 되어야 함. 양측의 상이점은 프로그램이 실시중 보다는 출발하기 전 해결되어야 함.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외부조건과 가정은 수원국과 실현 가능성있게 완전히 명확히 의견일치 되어야 함.

2) 사회 및 성(Gender)의 영향 관련사항

- 사회적, 정치적 위험성은 프로그램 고안시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이와 같은 위험성을 제거하기위한 특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이것이 필수적인 경제개혁을 연기하는 합리화가 안되어야 함. 반면에 이것은 구조조정 노력과 관련 정책개혁노력은 분배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야함. 이를 위한 주요한 도구는 공공지출검토임. 이는 공공지출이 사회목표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도시에의 편견을 피했는지, 군비나 다른 비생산부문에의 지출을 최소화했는지를 알게 함. IMF 와 World Bank 는 이와 같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음. 사회적 프로그램의 목표변경은 길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많은 개도국에서 그와 같은 노력이 실제로 교육분야, 보건분야에서 빈곤층에 대한 편견을 경감시키고, 또한 실업자들을 특별 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시켰음. 적응과 개혁노력에 맞는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안정망 구축과 같은 프로그램의 강조는 양측에서 요구됨.

- 프로그램원조에 관한 사회영향분석은 남성, 그리고 여성에의 효과에 대한 고려를 포함함.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각 나라마다 한계와 기회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기초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필요함. 프로그램으로 인한 혜택의 동등한 분배를 촉진하기위해 관련 지역그룹 과 제도의 멤버쉽,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구조가 밝혀져야 함. 성에 기초한 한계 성과 기회는 나타낼 수 있음.

3) 환경에의 영향 관련사항

- 프로그램원조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감시하기위한 특별한 기구가 만들어져야 함. 여기에는 “국별 환경조사와 전략”의 기초와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좋은 실천”에 기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함.
- 프로그램원조는 환경친화정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 환경친화정책의 좋은 실례로는 사용자 비용 지불원칙, 전기에 대한 가격보조금의 축소나 제거, 석유 관련 제품, 비료 및 해충, 안전한 토지권의 제공, 자연자원, 특히 산림의 합리적이용을 촉진하는 토지 소작제도와 같은 것임.

4) 제도적 평가

- 프로그램원조를 고안할 때 공여국들은 통치차원을 비롯한 수원국에의 관리적의미를 고려해야 함.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실시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함.제도적 평가는 예산, 회계 그리고 기금의 통제에 관련된 실시기관의 재정관리능력에 대한 조사도 포함됨.
- 제도적 평가를 통해 갭이 파악된 곳에는 구체적인 기술원조가 실시 능력의 강화를 위해 실시되어야 함.

5)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준비

-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고안, 협상, 그리고 실시는 다음을 요구함.
 - 주요개혁에의 효율적인 지원은 경제, 분야, 그리고 국가의 정책, 제도의 구조와 변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분석업무의 준비의 최종 책임은 개도국이지만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원조기관은 이의 분석과 가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본조사업무에 도움을 주어야 함.
 - 시간경과표는 정책활동의 긴급성과 실제로 프로그램의 준비, 협상 및

- 실시에 요구되는 현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함.
- 요구되는 개혁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국민들 특히 영향을 받는 계층에의 비용과 혜택에 관해 개도국이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조장해야 함.
- 개도국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위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 자원 그리고 노력상의 비용이 소요될지라도 행하여져야 함.

6) Tranching

- 합의된 정책개혁의 실시에 따라 효율적인 공여를 실시하는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Tranching 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실시를 보장하는 효율적인 수단임. 그러나 기대치 못한 발전 때문에 신축성이 필요함. 조건성에 대한 신뢰는 많은 횃수의 예외가 일어날 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이것은 매우 많은 세부적인 목표의 달성보다는 초기에 특히 핵심 정책 개혁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현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함. 약속한 원조의 공여에 대한 결정시 특히 공여국이 World Bank/IMF 가 조정한 구조조정프로그램에의 지원시 다자단 조정이 필요함.

7) 감시의 제공

- 현장에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감독의 제공과 실시상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한 정보 및 감독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프로그램 고안 단계에서 행해져야 함. 개도국의 감독 및 평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은 제도구축의 중요한 분야임.
-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의 가장 민감한 이슈의 하나는 프로그램의 결점, 정책성과를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책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임. 효율적인 감독과 계속되는 정책대화는 프로그램의 실패와 수정된 행동을 위해 필수적임. 공여국과 다자간 원조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이 수원국으로 부터의 일관된 반응을 보장하는데 중요함.

8) 조정된 접근법의 필요성

- 정책개혁, 구조조정 그리고 관련된 정책대화의 지지에 프로그램원조의 효율적인 사용은 일관성과 협의를 요구함. 거시경제이든지 혹은 분야별 원조이든지 간에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는 삼자 즉 수원국, 적정한 다자간 원조기구, 특히 World Bank 나 IMF, 그리고 양자간 원조기관과

- EEC 간의 계속되는 대화에 기초한 강력하게 조정된 접근법을 요구함.
- 개개의 개도국이 자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도국, 다자간 원조기구 및 공여국간의 효율적인 정책 및 정책개혁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국별 그리고 분야별 수준에서 프로그램 원조의 효율적이고 일관성있는 사용에 필수적임.
 -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의 필수적인 면과 가정에 관한 정책대화는 강력한 다자간 차원을 포함함. 양자간 정책대화는 국제원조조정회의에서 검토된 정책들과 우선순위의 정향과 일치할 필요성이 있음.
 - World Bank/IMF 와 공여국간에 경제적 평가 및 요구되는 정책과 프로그램고안에 관한 협의는 더욱 향상되어야 함. 프로그램 고안과정과 계속되는 대화를 위해서 공여국이 초기에 간여에 대한 계속되는 필요성이 있음. 이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위해 공여국은 그들 자신의 행정내에 적절한 전문가와 적합한 조정기구를 지원해야 함. 수원국의 자문기능과 조정기구의 활용은 효율적인 원조에 기여하고 수원국의 참여를 조장함. 이것은 사업초기에 시작되어야 함.

사. 개도국과 강화된 정책의 질 및 행정능력과 원조와의 관계. 발전(Evolution of Aid Relationships with Developing Countries with Strengthened Policy Quality and Administrative Capacity)

- 원조의 기본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개도국의 행정적, 궁극적으로 경제적,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는 것임. 개도국이 그들의 기본 정책환경과 행정능력의 강화에 진전을 보일 때, 실시해 있어서 공여국의 간섭을 줄이고, 또한 원조를 통한 가용자원의 분배를 위해서 자체 국가제도나 시장체제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됨. 프로그램원조는 이 점에 있어서 적절함. 약간의 공여국은 수원국과 광범위한 감시체계에서 합의한 세부분야의 목표,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의 지원에 있어서 분야별 접근법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있음.
-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분야별 투자지원을 포함한 정책관련 프로그램 및 분야원조, 그리고 일반 경제원조 간의 적절한 결합은 세부적인 국가의 상황에 의존해야 함. 강력한 행정능력과 효율적인 기초 정책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은 분야별 투자지원을 포함한 프로젝트원조나 프로그램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원조관계 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자원배분과 구체적인 고안이나 실시를 위한 자체의 제도 및 체계의 더욱 크게 의존하는만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원조간에 균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임.

아. 경제적 위급상황을 위한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for Economic Emergencies)

- 상당한 부분의 프로그램원조가 절박한 경제위기에 필수적인 수입요구물과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됨. 3 개의 서로 다른 유형의 긴급상황은 서로 다른 원조형태를 요구함. 첫째, 홍수, 가뭄, 지진, 그리고 전쟁과 같은 자연 및 인공적인 재난, 둘째, 무역량의 폭락과 같은 기대치 못한 외부적 요소로 부터 문제, 셋째, 정책상의 약점으로 인한 계속되는 국제수지의 적자 및 재정상의 불균형같은 문제등임.
- 위에서의 첫째상황에서의 재난구호나 그리고 심대한 인도적인 고통을 막기위해 제공되는 비슷한 인도적 원조는 이 원칙의 범위의 예외적 상황임. 경제적 긴급구조는 단기적으로 필수적이라도,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외부요소가 정책개혁 노력을 파괴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조가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구조조정이나 정책개혁 노력을 연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경험은 수원국의 정책 그리고 행정환경이 원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부적절할 상황에는 프로그램원조를 오랫동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계속 연장되는 프로그램원조는 정책개혁을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비지속적인 공적, 그리고 사적인 소비수준을 유지케하고, 그리고 구조조정문제들을 악화시키게 만듦.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제도구축 및 정책개혁 노력에 두어야함.
- 경제적 위급상황시의 프로그램원조는 상황이 허용하는 한 국제적으로 조정되어야함.

자. 프로그램 식량원조 (Programme Food Aid)

-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국내 수요와 국내생산과 상업적인 수입으로 인한 공급사이에 간격의 매꾸에 일조를 함. 이와 같은 식량원조는 상업적인 수입을 대치할 때, 수입을 위해선 사용되는 외환을 저축할 수있기 때문에 국제수지에도 지원을 제공함. 또한 이 식량이 수원국내에서 팔릴 때, 개발활동을 위한 여분의 재원을 창출하게 됨. 지금같이 정의된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프로그램원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원칙에 세워진 기준과 내용은 다른 프로그램원조처럼 프로그램 식량원조가 구조조정과

정책개혁과의 연계의 정도가 변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적용해야 함.

- 프로그램 식량원조는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국내 생산의 유인책, 소비 유형, 임금 배분등에의 가능한 영향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성격을 보여줌. 그리고 이 원조는 식량원조 회의(Food Aid Convention)에서 정한 식량원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일치되도록 고안되고 실시되어야 함. 그리고 이의 가용자원은 공급국가의 과다 생산의 해결의 방법이 되지 말아야 함. 공여국들은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하다면 식량원조 프로그램시, 개도국의 식량수출을 활용을 촉진해야 함.

차. 외채경감(Debt Relief)

- 외채경감은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임. 이는 심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도국의 부채상황을 개선시키고 또한 재정적인 갭을 메꾸는데 도움을 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채와 외채경감의 가동은 많은 공여국들과 World Bank/IMF로부터 지원을 받음. 공적인 외채경감은 일반적으로 파리클럽이라고 잘 알려진 다자간 약속에 의해 케이스별로 증여되고 있음. 이 원칙에서 세워진 기준과 내용은 이의 제공시 고려되어야 함.

카. 원조사업으로 인한 카운터파트 기금(Counterpart Funds)

- 프로그램원조로 인한 수입, 즉 상품이나 외환의 판매로 발생하는 기금은 특별계정의 창조와 같은 특별한 관리장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지함. 이 기금은 프로젝트의 틀에 따라 비용지출까지 수원국 화폐의 감독 및 소유권이 공여국에 있는 수원국 부담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원국 화폐와는 다름.
- 프로그램 원조에서 실질적인 재원이전은 프로그램원조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원조에 내포된 상품이나 재정적 자원의 흐름으로 간주해야함. 그래서 이 기금은 수원국의 여분자금이 될 수 없음. 대규모의 이와 같은 기금의 존재는 거시적 경제 관리상의 문제(잠재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공지출 관리(투명성, 공적예산에의 합침, 그리고 전체상의 지출우선순위와의 일치)문제점 같은 중요한 이슈를 불러 일으킴.
- 개도국의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지출의 효과적인 기획이나 실시는 핵심 목표임. 이와 같은 목표에 일치하여, 공여국은 카운터파트 기금을 포함하여 원조를 공여하는 장치나 실행이 정책대화로부터

수립된 개발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전반적인 지출 배분과 같은 공공지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그러므로 카운터파트 기금은 잘 기능하는 예산 형성, 회계 및 평가절차를 가지고 수원국의 국가예산에 통합되어야 함.

- 카운터파트 기금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양측의 실시는 어떤 경우에는 의회차원까지 가야할 정도로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어떤 공여국은 그들 자신의 법적인 요구사항에 기초하여 통제를 가함. 다자간 기구를 포함하는 다른 공여국은 이와 같은 통제를 하지 않음. 위에서 언급한 조항과 다음에 언급할 5 개의 조항에 규정된 목표는 발전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함. 과도기에는 수원국은 예산우선순위와 통제, 그리고 공공 지출의 배분 및 책임성을 향상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공여국은 이 기금이 양측의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수원국의 거시경제, 개발목표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 기금은 이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287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실제 운영측면에서 이 기금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함.
 - 이 기금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원조를 가지고 다년간 시행합의에 의해 다른 종류의 원조와 연결되어 기획하고 또한 각 사업의 적절한 정책성과를 제공함.
 - 가능하다면 합의된 시간내에 정부가 통제하는 단수의 이자포함 계정이 기록
 - 거시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기금의 계좌로부터 실현 가능한 빠르게 지함. 특히 이 기금의 재빠르고 과다한 지출로 인해 인플레이션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지출 해야 함.
 - 가능한 한 정해진 사업에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고 전반적인 예산에 사용됨.
- 상품과 식량원조는 수입동등가격에 기초하거나 혹은 기존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에 합의된 가격정책에 기초하여 값어치를 매김.
- 이 기금 관리에 대한 양자간 양측의 합의는 외부조정, 비인플레이션 성장, 275 조항에 일치하여 공여국들의 관점을 고려하면서, 수원국과 IMF/World Bank 사이에 합의된 공공지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의 목표에 일치해야 함.

-조정지원의 효율성은 공공지출과 관련된 실시된 정책 및 제도개혁에 의존함. 수원국은 공여국과 World Bank/IMF의 도움으로 이 기금이 투자와 경상비측면에서 공공지출프로그램과 일치됨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공공분야의 자원이 예산에 정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됨을 확인키 위해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 자세히 감시를 해야 함. 예산집행의 감시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는 적절하게 기술협력의 제공을 통해 갖추어져야 함.

- 이 기금이 오랜기간 적립된 경우, 이 기금의 사용시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개도국의 광범위한 예산지출 우선순위에 일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중요함. 회계연도말에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에 새로운 기금 계좌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수지(balance)에 대한 적절한 관심은 매년도 예산과 우선순위의 지출프로그램의 수립시 고려되어야 함. World Bank/IMF와 합의한 비인플레이션 성장과 외부조정이라는 목표에 일치하여 과거에 적립된 기금을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기금의 창조이 필요할지도 모름.

타. 조달(Procurement)

- 시장지향 조정과 정책개혁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외환형태로의 프로그램원조는 상업적이고 재정시장과 제도의 발전의 촉진을 도움. 제한적인 조달요구는 행정적인 과정을 통하기보다는 시장체도를 통해 자원배분을 하면서, 민간부문이 이끄는 성장과 능률성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장지향적, 외환 및 무역체제를 만드는데, 그리고 자유화라는 중.장기적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외환의 공급 없이는 경쟁적인 시장과정과 제도의 발전을 이루기가 힘들. 그러므로 구조조정이나 정책개혁을 지지하거나, 효율적인 정책틀안에 일반적인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원조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수입에 의한 구입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함. 분야별 프로그램원조와 특별한 수입구입이 연계되는 경우는 있지만 행정과정이 아닌 시장체제에 의존하는 중.장기적 목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 경쟁적인 시장과정, 정책, 제도가 특히 소비와 투자관계를 포함하는 외환자원을 효율적, 그리고 능률적으로 배분에 의존하는 점까지 진전되지 못했을 때에 공여국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또한 수원국의 제도적인 약점이 외환을 비생산적, 그리고 비적절한 사용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과 같은 것도 공여국이 가지는 기본적인 고민임. 그러므로 공여국은 원조의 통합의 측면에서 화폐가치와 책임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위한 필요성을 원조지출과 연계하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규칙을 적용해야함. 이와 같은 규칙과 요구의 수립은 가끔 시장과정, 민간분야, 그리고 선정을 조장하기위한 우선순위를 정함. 가장 기본적인 딜레마는 정부통제에 기초한 자세한 구매요구의 유지는 자유화정책의 실현과 경쟁시장과정의 출현을 방해할 수는 것임.

- 다음의 지침은 이와같은 딜레마에 막닥칠 때, 그리고 시장지향 경제 체제의 조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지원하는 공여국 실행규칙을 채택했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임.
- 프로그램원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비조건화되어야함.
- 조달절차는 수원국의 무역, 외환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수입허가를 제거하는 노력과 일치해야 함. 그리고 수원국의 경쟁적이고 신뢰성있는 상업적, 재정시장과 제도의 발전을 조장해야 함.
- 요구되는 상품의 목록은 시장결정 수입수요의 표현을 허용해야 함. 원조가 주어질 때, 이것은 분야별 요구에 잘 적응해야 함.
- 국제공개입찰과정의 표준은 가능한 한 적용에 있어서 단순해야 함.
- 공공분야 구매와 책임성을 위한 제도구축은 강화되어야 함.

파. 평가(Evaluation)

- 프로그램원조의 평가와 감시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 자원이동의 Fungibility 는 대개 매우 높음. 그리고 프로그램원조와 거시경제적 그리고 분야에의 효과간의 인과율을 설정하기가 쉽지않음. 정책의 변화, 범세계적, 그리고 국내의 시장조건, 다른 외부요소, 다른 공여국으로 부터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결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또한 정치, 재정담당국에게 프로그램원조는 아주 효율적인 원조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으로 체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계획은 프로그램고안시 포함되어야 함. 처음부터 평가시 목표, 표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Baseline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해야 함. 가능한 한 양측은 평가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평가과정에 첫째 즉시 실시 및 영향 목표, 둘째, 정책관련 프로그램 원조의 경우에 정책개혁의 실시의 경험, 셋째, 거시경제, 분야별 영향, 제도발전 그리고 정책개혁의 개념에서의 실제 달성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함. 이 원칙에서 채택된 좋은 실시와 표준은 평가시 고려

되어야 함.

- World Bank/IMF 는 정기적으로 그들이 지원하는 구조조정과 정책개혁 활동을 평가해야 함. 여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형태로 제공되는 양자간 프로그램의 상당한 양도 포함됨.
-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원조에 있어서 여러 공여국이 관여할 때, 합동 평가는 World Bank 의 참여하에 고려되어야 함.
- 프로그램원조의 운영은 가끔 주어진 수원국에의 공여국의 전체 원조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큼. 프로그램원조의 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발원조기관은 자세한 프로그램원조의 목표에 첨가하여 공여국의 수원국을 위한 일반 프로그램의 목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하. 원칙과 후속조치의 적용(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and Follow-up)

- 회원국들은 다음의 사항에 합의함.
 - 회원국들의 프로그램원조 정책과 절차에 이 원칙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 원칙들에 적응함.
 - 회원국의 원조검토와 다른 DAC 의 관련업무의 한분야로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원조기관간의 협조의 경험과 같은 프로그램 원조정책과 절차를 검토함.
 - 이와 같은 검토로부터 나타나는 수치로부터 필요시 프로그램원조의 원칙을 수정하고 update 시킴.

참고: 프로그램원조의 정의(Annex: Definition of Programme Assistance)

- DAC 에서 상당한 노력이 프로그램원조의 개념과 이의 여러 카테고리들 명확히 하기위해 행하여짐. 프로그램원조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것이 특별한 프로젝트 활동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1. 일반 프로그램원조(General Programme Assistance): 국제수지에의 재정지원, 일반 예산지원, 그리고 상품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개발의 목표로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의 배분없이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원조를 말함.

가. World Bank/IMF 에 의한 구조조정 원조: 이 프로그램원조는 World Bank/IMF 에 의해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원조를 말함.

그 예로는 World Bank 의 World Bank Special Programme for Africa(SFA)를 들 수 있음.

2. 분야별 프로그램원조(Sector Programme Assistance): 이는 농업, 교육, 공동체 발전 및 교통과 같은 특별 경제 및 사회분야에 주어지는 원조를 의미함.

가. Sectoral Adjustment Assistance with the World Bank:이의 예를 들어보면 World Bank Sectoral Adjustment Loans(SECALs)와 World Bank Structural Adjustment Loans 와 연계된 분야별 원조를 의미함.

3. 프로그램 식량원조(Programme Food Aid)

4. 부채경감(Debt Relief)

- 재난지원은 프로그램원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특별한 성격이며 프로그램원조로 보고되지는 않음.
- 위해서 언급한 개념들은 현재 진행중인 좀더 세부적인 통계보고의 방향의 수정을 위한 기초가 됨.

참고: 정책관련 프로그램원조와 다른 프로그램원조와의 통계적인 기술

- 수원국의 정책개혁을 촉진하기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원조와 같은 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와 회원국들이 World Bank/IMF 의 프로그램에 의해 지침을 삼는다 하더라도 정책개혁이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일반적 경제지원과 같은 원조간에는 중요한 개념 및 정책에 차이가 있음. 경험으로는 World Bank/IMF 의 구조조정프로그램과 명확히 연계가 되지않는 여러 형태의 양자간 정책 관련 프로그램원조의 비교 통계보고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음. 통계의 목적으로 단순히 위에 정의된 “World Bank/IMF 와의 구조조정 원조”만이 DAC 보고에서 정책관련사항으로 나타남.

참고: 프로그램원조와 프로그램접근의 통계적 기술

- 이 원칙에서 지적인 것 처럼 프로그램원조의 광범위한 정의는 상호 연관된 프로젝트원조, 기술원조 그리고 프로그램원조의 패키지, 특히

분야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도국의 잘 정의된 프로그램의 지원에 주어지는 모든 원조를 포함함. 그러나 이 개념은 너무 광범위함. 그리고 통계보고 목적으로 사용되며, 위에서 정의한 분야별 원조개념은 당분간 통계보고 과정에서 보류됨. 단 한번의 계약으로 기술원조와 투자프로젝트에의 재정적지원과 프로그램원조간을 합치는 증여나 연성차관은 “Sector Programme Assistance”로 기록됨.

5. 여성개발에의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Women in Development)

가. 도입과 목표(Introduction and Objectives)

- 지속적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는 단지 남성과 여성의 필요성과 이해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고안과 실시과정에 완전히 인지될 때 얻을수 있음. 이를 달성하기위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것은 자원, 서비스,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임.
- 이것은 83 년에 회원국들이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위한 원조기관의 지침” 을 채택했을 때임. 회원국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개발의 측면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고안이나 실시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여성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활약하는 역할과 그들의 사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85 년에 UN 의 여성의 해에 여성개발 관련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범세계적 회의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전략”(FLS)이 157 개국의 의견일치로 채택되었음. 회원국들의 FLS 에 대한 약속의 결과는 86 년 DAC 의 여성개발관련 전문가그룹에서 채택된 다음의 “From Nairobi to the Year 2000----Actions Proposed for DAC Members Countries to Fulfill their Commitment to the Nairobi Forward Looking Strategies”라는 보고서에 잘 반영됨.
- 다음의 수정된 지침은 맨 처음의 원칙에 기초하였지만, 이 지침의 범위는 다음에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확대됨.
 - FLS 에 수립된 새로운 우선순위
 - 83 년 이래 회원국에 의해 달성된 진행을 강조하기위해 회원국들이 DAC 의 원칙의 실시정도와 더욱 많은 노력에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기위해 85 년과 87 년에 발행된 2 개의 감시보고서에의 결론
-86 년 이래 여성개발을 범세계적이슈로 간주하는 회원국들에 의해
수행된 평가결과들

- 회원국들은 그들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여성개발에 관한 수정된
원칙을 실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수정된 원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관심이 개별 수원국의 우선
순위에 주어져야 함. 사실 많은 수원국들이 스스로 여성의 권리를 여성
차별에 반한 모든 형태의 제거를 위한 회의에 따라 개발과정에 여성을
참여자로서 여기고 있음. 공여국들은 수원국과의 정책대화시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주제를 참여시키도록 격려받고 있음.

나. 목표, 정책지침과 행동계획(**Mandate, Policy Guidelines and Plans of Action**)

- 모든 회원국들은 여성이 완전히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성개발을 모든 공적원조의 문서에 서술하고 있음.
- 이에 관한 정책과 목적은 좀더 자세하게 정의된 목표로 강화되어야 함.
이것은 활동지향적이어야 하고, 여성을 개발자원 그리고 특히 개발에
의한 모든 혜택의 동등한 접근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양자간, 다자간차원 모든 원조기관의 운영에 참여해야함. 개발원조의
다른 분야에서 여성의 주요한 역할이 이제 이해되고, 다른 분야와
원조형태에서 회원국들은 대규모의 인프라 사업, 프로그램원조 그리고
구조조정차관과 같은 원조에 남.여 평등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 여성개발과 관련된 지침과 절차에 관해 아직까지 이를 제도화 하지
않은 원조기관들은 이를 제도화해야함. 기존의 지침과 절차는 좀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계속하여 경제.사회환경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함.
- 구체적인 지침은 각 분야 특히 여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
사용되어야 함이 좋음.
- 공여국들은 여성개발에 관한 자신들의 정책들이 다자간 기구의 개발
활동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다자/양자간 프로젝트는 유용한 모델에 될 것임.
- 회원국들은 여성과 여성그룹과의 연계를 위해 NGOs 의 능력을 강화하고
격려해야 함.

다. 행정적조치 (Administrative Measures)

- 원조기관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개발에 관련된 공여국의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시, 감시 및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체제가 가동되어야 함.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그들의 행정속에 적응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여성개발에 관한 지침의 적용이 원조기관의 전체 그리고 개개 담당직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인 조치가 적용되어야 함. 여성개발을 개발과정에 강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약속함이 공여국의 고위급 관리자들에 의해 행하여져야함.
- 작업수단과 장치는 정의되어야 하고 그들의 적용은 특별 여성개발 단위, focal Points 나 자문그룹과 같은 수단의 지원으로 확인되어야 함. 여성 개발관련 책임은 기관의 운영담당 직원에 의해 전해지고 그리고 담당 직원의 능력이 개발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여성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전반적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제도화됨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의 감시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DAC의 원칙에 맞추어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여기에는 관련 사업의 승인, 계약 감시와 평가를 통한 운영 계획을 통한 초기 확인단계에서부터 여성에의 혜택, 참여, 장애물확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전략의 개발을 포함함.
- 개별 원조기관이 스스로 자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까지 충분한 자원이 행정조치를 실시하는데 배분되어야 함.
- 수원국내에 현장사무소의 직원을 임명할 때, 모든 프로젝트의 단계에서 여성개발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수원국 관련 기관과의 대화를 하고, 정책과 프로젝트의 목표에의 조정을 잘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정보의 환류를 하기위해서 여성개발 전문가가 활용가능 해야함.
- 사회.문화와 성과의 관계의 중요성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여성개발 정책을 실시하기위해 담당직원 특히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소양의 하나임. 그러므로 회원국들은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급에서 여성개발의 이슈와 활동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고위관계자나 특히 분야/기술담당자 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활용 가능해야함을 확신함.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특히 원조의 여성개발 책임자로 임명된 직원에게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훈련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은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야 함.

- 원조담당 직원들이 거시경제 조정정책에 있어서 성의 의미분석의 중요성을 이해해야하고 또한 가계를 포함한 미시경제에의 효과를 이해하기위해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DAC의 담당사무국이 그들의 일상업무에 성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한 이 주제가 DAC의 자문을 위한 문서준비에 포함되게 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능력강화를 지원해야 함.
-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성차별 자료의 개발임. 여성개발관련 DAC의 전문가그룹이 수립한 통계보고서의 제안된 방법은 적절한 시험절차를 거친 후에는 실현 가능할 것임.

라. 실시(Implementation)

- 여성개발의 장기적인 효과는 이를 실시하는 수단의 능률성에 의존함. 지금까지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조치나 절차는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함. 긍정적인 결과는 회원국이나 수원국에게 나누어져야함. 혁신적인 절차는 아직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훈련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시험하기위한 예비프로젝트는 여성개발관련 프로젝트의 준비로 추천됨.

1)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절차

- 여성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혜택대상은 남녀모두가 포함되어야 하고 자문시 그들의 한계점 그리고 개발 활동에의 참여능력 및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동등한 혜택을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 혜택대상으로 여성의 동등한 참여는 프로젝트고안시 그리고 감시체제에 반영되어야 함. 여기에는 여성의 다른 그룹이 혜택대상의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이 프로젝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의 목표를 포함함.
- 필요시 여성의 프로젝트의 전과정에의 참여를 달성하기위해 여성의 기술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이 가해져야 함. 프로젝트에 참여시 여성이 가지는 장애물과 기회는 알려져야 하고, 한계점을 경감하고 반면에 기회를 최대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2) 심사와 실시

- 여성의 상이한 그룹이 당면한 제약점과 기회는 설정된 목표에 그들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위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심사단계에서 아주 자세히 분석되어야 함.
- 프로그램사이클을 통하여 회원국들은 프로젝트관련 인구의 성별구성을 그들의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상황에 관련시켜 고려되어야 함. 가장 중점적인 이슈는 생선자원과 권리와 책무의 분담에의 상이한 소그룹의 접근임. 전문적인 능력이 이 주제와 관련된 대외가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위해 프로젝트의 계획과 예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 원조기관들은 그들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들이 사회.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참여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여성개발-능력배양문제를 포함시키는데 책임을 가져야함.

3) 감시활동

-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는 이로 인한 사회, 정치, 경제 및 가치체계에의 변화를 계속하여 평가하기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세워진 현지절차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감시되어야함. 이 감시활동은 프로젝트 실행시의 신축성과 결합하여 기대 혹은 기대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지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도저히 변경하지 힘들정도까지 가기 전에 부정적 결과를 피하게 만듦.
- 향상과 영향을 체크하는 적절한 지표는 이와 같은 감시활동이 가능케 하기 위해 수립되어야함.

4) 평가

- 대상그룹에의 영향에 관한 모든 평가는 가능한 성차이를 기록하고 분석해야 함. 이를 위해 팀의 여성개발관련 능력을 요구함.

5) 연구

- 성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좀더 많은 강조를 두어야 함. 사회에서 여성에 관한 과거의 연구는 여성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묘사적임. 향후 연구의 방향은 여성을 좀더 동적이고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성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는 개발협력의 적용시 매우 가치있는 시각을 제공함.

- 여성개발의 이슈가 개발과정과의 통합을 달성하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과 수원국이 같이하는 합동연구가 실시되어야함.
-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정보의 제공을 촉진할 목적으로 회원국들은 사무국에게 모든 회원국에게 분배하기위해 여성개발에 관한 주요한 매년 연구 활동을 제공해야함. 또한 다른 공여국, NGO 그리고 수원국이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나라에의 여성개발관련 연구자료를 상호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조정, 자문 그리고 개발교육(Coordination, Consultation and Development Education)

1) 조정과 자문

- FLS 문서에서 표현한 것 처럼 불필요한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자원배분을 달성할 목적으로 미리 기획과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위한 정기적인 자문이 제도화 되어야함.
- 여성개발의 정책, 지침, 체크리스트, 평가, 및 훈련노력에 관한 정보들은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다음에 열거한 조직간에 교환되어야 함. 그 기관으로는 다자간 원조기관, 양자간 원조기관, 수원국의 정부부처, 수원국과 공여국의 NGO, 그리고 다른 수원국의 프로젝트 담당자임. 이를 촉진하기위한 자원과 새로운 여성 NGO의 설립이 가능해야 함. 회원국들은 모든 회원국에게 알려주기 위해 여성개발에 관련된 새로운 분야별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사무국에게 제출해야 함.
- 현장에서 여성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활동을 조정하기위한 비공식 자문장치가 '86년에 제정된 DAC의 개도국과의 원조조정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이의 주제에 관한 경험의 정기적 교환을 위해 설치되어야 함.

2) 개발교육

- 회원국들은 제 3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회문화체제와 성별관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더욱 확장을 촉진해야 함. 여성들은 수동적인

수원국 사람, 또한 개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묘사되어야 함.

-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의 개발정보 자료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이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함.

바. 수정된 지침의 검토 및 감시활동(Review and Monitoring of Revised Guiding Principles)

- 회원국들은 DAC 에게 제출하는 각국의 연례보고서(Memoranda)에 수정된 지침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데, 그리고 각국의 정기적 심사과정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회원국들은 '90 년 상반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수정된 지침의 적용을 감시하는데 합의함.

참고: 관련분야(Annex: Areas of Concern)

1. 농업생산분야:

- 여성들은 개도국의 특히 시골지역에서 음식용 식품과 같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임. 회원국들은 아무 성이나 지식, 기술, 토지를 포함한 자원, 그리고 대부 및 시장과 같은 자원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를 요청 받음.
- 농업관련 서비스는 남.여 모두에게 향해야 하고, 접근법과 내용은 서비스나 여성들에게 유용하도록 적용되어야 함.
- 현금가능 생산물이 촉진될 때, 비옥한 땅에 여성들이 접근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여성들이 혜택도 없이 과중한 노동에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분석과 감시활동이 필요함.
- 회원국들은 토지개혁과 토지등록이 여성의 비옥한 땅에의 접근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해야 하고, 수원국과 함께 이에 대해 토의 해야함.
- 회원국들은 토지 생산의 장기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하며, 여성 소작농의 처지를 향상할 목적으로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다자간 원조기구의 노력을 지원해야함.

2. 수입과 고용

- 전통적으로 여성들 차지인 분야가 아닌 곳에 여성의 진출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되어야함. 예를 들면 서비스분야와 무역 분야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분야에 여성의 고용과 자체고용의 기회가 증대하고 있으며, 공여국들은 수원국과의 협조로 직장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관리직으로의 여성진출을 고양해야 함.

3. 비공식분야

- 대부분의 수원국에서는 공식적인 경제분야는 남성들이 지배하며, 반면에 여성은 서비스와 법적보호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공식분야에 많이 관여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성과 분야간의 차이와 여성으로 하여금 분야별 활동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설득해야 함.

4. 시간배분

- 많은 연구보고서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개발사업에의 여성참여는 그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과중한 일상 때문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프로젝트 기획은 이와 같은 제약점을 반영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경감하기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야함. 또한 프로젝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성에의 요구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의 증대없이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함.

5. 훈련과 교육

- 대부분의 수원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음. 이의 원인으로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물질적인 제약때문임. 회원국들은 다음의 분야에 잘 인지해야함.
 - 양측이 수원국에서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녀, 여성들의 기초,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과 훈련을 향상시키는 필요성을 인지해야함.
 - 교과과정과 교과서의 수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다원적인 역할을 묘사케하고
 - 적절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시,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여성의 훈련양식에 제공함

- 필요시 여성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문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구조를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
- 위에서 언급한 관여사항에 대해 장기적인 지원과 감시활동을 유지하는 것

-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동등한 접근 및 참여의 목표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을 증대해야함. 적절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본국이나 지역에서 훈련이 실시되어야함.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여성들이 참여를 증대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장학금에 이 과정을 취해야함.

6. 대부와 은행시설에의 접근

-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위한 은행용자나 대부의 시작, 유지, 또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담보가 부족함. 회원국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법적, 사회적체제를 변경하는데 적극적이어야함. 또한 회원국들은 여성개발 특별프로그램이나 여성개발 통합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제도에의 지원에의 협조를 증대해야함.

7. 환경

- 여성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자원의 첫번째 사용자이자 환경의 관리자임. 지속성은 여성의 지식과 기여에 의해 이룩됨. 그러므로 여성의 참여가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형성시 고려되어야함. 이들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을 고양하고 환경지속성에 기여함과 자원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함. 환경적에의 관심은 분야 및 공간을 초월함. 지방과 도시상의 프로젝트는 여성의 관심과 필요성을 환경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함.

8. 보건

- 개도국의 여성의 상황에 관한 연구는 다음에 언급한 사항간에 명백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 자녀수와 자녀의 학교에서의 성적
 - 여성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보건

-여성의 업무량, 가계와 가족의 건강

-여성의 건강, 자녀의 수와 공간넓이, 그리고 처음 그리고 마지막 임신시의 나이

-남과 여성의 서비스에의 접근 태도와 역할, 그리고 보건관련 지식의 적용능력

- 기초보건서비스는 여성에게 재임신의 기회를 주기위해 임신시 그리고 출산시의 여성의 높은 사망률을 고려시 가족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대상 남.여의 협조로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 문화적인 기회와 제약성을 고려해야 함.
- 회원국들은 영양, 보건 그리고 가족계획에 관한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지식과 실제 경험을 향상하기위한 계획을 지원하고 촉진해야함. 여기에는 남녀의 두 요소가 같이 고려되어야함.
- 개도국의 정부가 건강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재정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를 내놓는 단계에는, 돈의 부족 때문에 여성의 이의 접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계속되는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함. 여성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공동체의 재정지원, 사용자 비용부담이나 상호기금과 같은 새로운 재정지원수단이 고안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함. 기존의 프로그램은 자세히 감시되고 평가되어야함.
- 회원국들은 보건분야에 특별한 목적을 가진 NGO 나 국제기구의 노력에 지원해야 하고, 이들로 하여금 보건서비스의 수혜자로서 그리고 가족 건강 향상의 책임자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함.
- 회원국들은 여성들에게 건강상의 위협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실재와 성폭력을 막고 그리고 해결하는 노력을 지원해야 함.

6.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유익한 참고사항

가. 배경(Introduction)

- 회원국들은 개발 원조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그들의 특성, 규모 및 장소 때문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 '85 년에 OECD 에서 채택한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서”에 나와 있는 환경측면에서의 적절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초기에 이에 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회원국들은 또한 그들의 개발 원조에 있어서 환경평가정책의 공식적인 채택, 기획, 실시 그리고 관리레벨에서 책임을 부여하는 효율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그리고 적절한 인적자원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적시로 그리고 비용-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이는 '86 년에 채택된 개발원조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조치에의 권고사항임)
-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원조시 환경적인 측면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확인, 기획, 실시 및 평가시 고려되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그리고 DAC 이 프로젝트심사를 위한 제원칙을 개발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OECD 심사위는 '89 년에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개발원조기관의 고위급의 정책결정자가 사용가능한 환경 점검표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함. 3 개의 권고안의 핵심은 이 장에 포함됨.
- 회원국들은 개발원조의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다음의 유익한 참고사항을 수립함.
 - 환경측면은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실시시 완전히 통합되어야 하고, 개발프로젝트의 행정적인 책임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함.
 - EIA 는 85 년 OECD 권고안에 의해 확인된 프로젝트에 있어서 확인 작업과 규모확인시 함께 사용되어야 함.
 - EIA 는 인간보건, 자연환경 및 재산 그리고 특별한 성 및 특별그룹의 필요성, 그리고 환경변화로 기인하는 토착민에의 재정착과 영향등 사회적인 효과등과 같은 기대되는 모든 효과를 지적해야 함.
 - EIA 는 비활동대안을 포함하는 다른 대안의 프로젝트 디자인과 요구되는 이전 및 감시조치를 고려해야 함.
 - 프로젝트의 EIA 활동시 공여국들은 용인할 수 있는 비이전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위한 기준을 사용해야함.

- EIA의 유용성과 적절성은 해당국의 환경조사와 전략의 활용에 크게 의존함. 이들은 가능한 지역 어디에서나 고려되어야함.
- 정보접근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영향을 받는 토착민의 관점을 얻기위해 가능한 한 마련되어야함.
- EIA는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관련 사회영향에 대한 명확히 언급해야함.
- 이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의, 후속영향 및 수집효과를 포함한 현장효과는 알려져야 함.
- 개도국 정부는 그들 국가에 있어서 환경상태에 그리고 개발프로젝트의 고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님. 그러나 초국가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가 관련 개도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때, 이에 영향을 끼친 정부가 피해를 본 국가의 환경문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목적(Basic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제안된 개발프로젝트의 환경에의 영향에 관해 순기능적, 그리고 역기능적인 양면에서 검토하는 절차이고, 이와 같은 영향이 프로젝트 고안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IA는 인간 보건, 자연환경 및 재산에 관한 기대되는 결과를 평가하고, 성별관련 특별그룹의 필요성, 토착민의 재정착과 영향과 같은 사회적인 영향을 포함함. EIA는 비활동 대안을 포함한 프로젝트고안의 가능한 대안 및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해서 프로젝트 고안시 고려되는 환경 안전막이나 영향 완화조치 같은 것을 고려함. 이 평가는 원조 프로젝트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하기위해 프로젝트의 고안시 초기에 활용되면 가장 유용함.

1) 정책결정과 실시과정과의 통합

- 회원국의 공식적인 EIA 과정과 규칙은 환경적인 측면이 프로젝트 고안과 실시에 간여하는 수원국, 원조기관 그리고 타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속에 통합된 것을 확인하기위해 의도됨. 환경평가는 프로젝트 선택, 고안 및 실시과정의 통합된 부분이라는 것이 중요함. 이것은 프로젝트 선택과정에 잘 수립되어야하고, 원조 프로젝트의 환경적인 측면에 관한 행정책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함.

2)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요구되는 프로젝트

- EIA 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머리말로 '85 년도에 채택된 OECD 권고안에 열거되어있음.
 - 재활용자원의 사용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
 - 농업과 어업의 실시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
 - 수력발전의 이용
 - 인프라
 - 산업활동
 - 광업
 - 쓰레기 관리 및 처리
- 심층적인 환경평가가 공기 및 수자원의 공해 때문에 인간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원조 프로젝트에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노출된 식물, 동물군, 그들의 서식지,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도 실시되어야함. 또한 특별한 관심이 열대림, 습지, 늪, 산호초, 반불모지와 같은 환경에의 프로젝트에 관한 평가의 필요성에도 주어져야 함.

3) 환경영향의 범위

- 환경영향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인간보건과 복지, 환경적인 미디아, 환경체제 및 농업과 건물에의 영향
 - 날씨 및 분위기에의 영향
 - 자연자원의 이용(재활용 자원 및 광물자원)
 - 쓰레기의 활용과 처리
 - 재정착, 인류학상의 장소, 경치, 기념물과 사회환경 및 적당한 상류, 하류 그리고 초경계 영향

4)프로젝트 기획시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시간

- EIA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일어나는 최초의 EIA 절차는 일반적으로 믿는 것보다 프로젝트의 기획의 시간연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 경험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상의 연거나 실시상의 비용상의 큰 차이는 적시의 EIA 를 통해 피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시간과 비용 감축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기획단계동안 최초의 EIA 에 요구되는 시간은 이것이 기획절차, 프로젝트의 종류, 수원국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움. 또한 기초자료의 활용여부도 영향을 미침. EIA 를 실시하는 규모로부터 완성때까지 소요되는 평균시간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에 달려있지만 보통 3 개월에서 2 년까지 소요됨. EIA 가 통합되어 다른 기획활동(예: 공학, 타당성조사, 비용, 효과분석)과 동시에 진행되기를 권고함. 이것은 공사연기를 피하고 EIA 과정이 공동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좀더 능률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함.

5) 환경평가분석의 비용

- EIA 에 소요되는 비용은 문제의 복잡성, 의미성, 그리고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도에 의존함. 이 비용은 전체 예산의 투자에서 보면 미미한데 보통 전체 예산의 0.1%~0.2%수준임. 해로운 환경효과 회피와 긍정적인 최대효과 EIA 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가 크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투자로 유도함. 최초의 EIA 는 환경과 사회조건이 알려지지 아니한 지역에 실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절차나 기술이 정착되고 평가담당 인력이 그들의 직무에 익숙해지면 줄어들게됨. 특히 회원국사이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술의 정보교환은 이에 필요한 비용의 추가 감축으로 유도됨.

6) 회원국 경험

- 대부분의 그들의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의 실시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지니지 못함. 어떤 회원국들은 공식적이고, 법적으로 구속하는 개발원조를 위한 절차를 지니고 있으며, 또 다른 회원국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비공식적, 그리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다. 원조영향평가를 위한 좋은 실시(Good Practic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일반적 실시

- 이상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EIA 절차는 공여국의 합당한 실천을

기초로 다음에 언급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수원국은 모든 회원국과 다자간 원조기관이 개발프로젝트에 EIA 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함.
-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자문관에게 EIA 에 대한 요구가 공여국사이에 의견일치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함.
- EIA 는 충분히 비교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른 공여국에게도 공유되고 활용됨.
- 환경체제의 방해가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정도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는 개념에 기초하여 비슷한 표준이 비교시 사용됨.

2) 기초 요구사항

- EIA 는 프로젝트의 종류, 이의 기술적인 면, 수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련의 좋은 실시는 이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의 접근을 조화하기위해 수립될 수 있음. 아래의 EIA 를 위한 좋은 실시는 특히 3 개의 소스인 OECD 권고안, 최근의 기술관련 연구물, 그리고 오랫동안 EIA 를 적용해온 원조기관들의 경험을 함께 종합하였음.
- EIA 는 프로젝트 기획과정의 통합된 분야로 보아야 함. 이것은 초기에 프로젝트이 대안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와 연결된 잠재적인 환경에의 영향으로 출발해야함. 이 평가는 가능한 장소에서 개도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기획과정을 통하여 계속 실시되어야함. 이상적으로 감시와 후회계평가로 이어져야함.

3) 환경영향평가의 책임

- 개도국 정부는 자체국가의 환경상태와 개발프로젝트의 고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함. 그러나 원조로 행해지는 프로젝트에의 EIA 는 수원국의 환경법과 규제, 그리고 공여국의 개발 협력 표준을 고려하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단지 수원국이 아직까지 환경보호에 대한 법적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했을 경우, 프로젝트를 책임자가 EIA 를 책임져야함.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련 지역 담당부처의 기술적인 능력에 가능한 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함. 개도국의 담당상대기관이 자신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과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환경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 과정에 참여되어야함. 가능한 한 지역 환경자문가들이 이 평가팀에 합류되어야함. 수원국은 요구되는 변화와 수정의 의사와 함께 이를 승인해야함.

4) 절차 원칙

- 적어도 위에 열거된 프로젝트에는 EIA 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EIA 는 가능한한 초기에 시작되어야하고, 프로젝트이 첫검토에서 함께 실시되어야함.
- 만약 EIA 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심사를 뛰어 넘는 경우에는 특별히 EIA 를 실시하는 지역이 결정되어야함.
- 통합시 최초의 EIA 는 타당성조사에 비슷하게 시작되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획전에 완결되어야함.
- EIA 는 가능하다면 수원국에 있어서 관련 프로젝트와 다른 분야의 측면의 관점에서 그 국가의 환경조사 및 전략에서 나온 사항들을 고려해야함. 다량의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합쳐져 환경영향을 가져오는 경우, 흐름도가 유용할 수 있음.
- 모든 타당성조사는 적어도 환경과 여기에 관련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개별적인 장을 만들어야 하며, 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환경관련 비기술적인 개요가 마련되어야함.

5) 심사(Screening)

- EIA 절차는 먼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심사단계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함. 심사과정은 환경검토가 자연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허용함. 확실한 형태의 지원활동이 자동적으로 환경검토로 부터 제외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활동으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영양 및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함. 어떤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지 심대한 환경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모두 제외시키는 지 말아야함.
- 잠재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장착되었을 때, 보건 및 안전에의 가능한 위험이 심사과정에 고려되어야함. 양자 및 다자간 원조기관은 새롭고 확장된 조치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전에 잠재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함. 다음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음.
 - 어떤 대안 프로젝트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가
 - 위험성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공공 안전의 적절한 정도는 어디인가
 - 상당한 환경가치를 지닌 지역에 어떤 수준의 환경보호가 보장되는가?

- 심사는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프로젝트 및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큰 프로젝트를 초기에 채택 못하도록함.
- EIA 의 질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약하기위해 EIA 가 요구하는 종류에 따라 초기에 프로젝트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함.

6) 범위

- 결정이 EIA 로 가기로 되었을 때, 범위과정이 프로젝트의 심사후 즉시 시작 되어야함. 이 과정은 프로젝트에 의해 제기된 심대한 환경이슈, 요구되는 분석의 시기와 정도, 적절한 전문성의 소스 및 완화조치에 대한 제안들을 확인케 만듦. 이 시점에서 EIA 를 위한 책임과 계획표가 확인될 수 있음. 철저한 EIA 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범위는 수원국의 적절한 중앙, 지방, 지역기관으로부터, NGO 단체 및 영향을 받는 집단 으로부터, 그리고 EIA 를 책임지는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인 자료, 관심 및 경험을 포함함.
- 세심한 심사와 범위는 프로젝트의 후기 단계에서의 연거나 부가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심대한 환경이슈나 가장 중요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EIA 에 도움을 줌.

7) 지역기관과 대상그룹의 참여 및 동기부여

- 양측은 관련 국가의 상황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원조로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고안과 실시를 위해 관련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지식을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함께 협조해야함.
- 개도국의 환경관련기관은 가능한 한 큰 범위내에서 포함되어야 함. 이상적으로는 유능한 기관과 적절한 규제는 프로젝트의 맨처음 검토시 확인되거나 프로젝트의 제안서에 기록되어야함. 타당성조사의 환경관련 분야에의 목적이나 개별적인 환경평가는 가능한 한 수원국의 환경 당국의 조연이나 동의로써 행하여져야함. 프로젝트 관련 EIA 가 환경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능력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초기에 확인되어야함.
- 영향을 받는 인구의 남.여의 공동참여는 추구되어야 함. 그 결과,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원조프로젝트의 고안, 비관료적인 새로운 개발 협력자의 선택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게 만듦.
- 수원국 NGO 의 참여는 수원국의 공적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촉진되어야함. 이 점에서 수원국의 가치나 절차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주어져야함.

- 수원국 실시기관이 프로젝트의 선택, 고안 및 실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들의 약속을 확인하는데 좀더 많은 강조가 있어야함. 수많은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 이용자 및 수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관련 프로젝트가 그 지역의 활력을 동원케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환경에 맞게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임.

8)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 EIA 보고서에 열거될 특별한 이슈는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범위과정에서 확인되어야함. 일반적으로 철저한 EIA 를 위한 목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야함.
 - 프로젝트가 환경과 환경의 기초조건을 이 프로젝트로 인한 향후 효과와 견주어 묘사되어야함.
 - 프로젝트가 수질, 에너지, 자연자원에 주는 환경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여성을 포함하는 관련지역 주민에게 프로젝트가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
 - 쓰레기 수자원, 일반 쓰레기 및 방류물에 처리에 관한 평가
 - 가능하면 비용측면에서 긍정적인 또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 환경정제를 위한 기회 분석
 - 수원국의 적절한 환경표준, 이 표준의 필요한 licensing 절차를 포함한 법적 그리고 정책들의 제공
 - 환경적으로 적절한 가격정책, 세금 및 보조금에의 영향에 관한 평가
 -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표준을 세분화하여, 결과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결과 혹은 대안에 대한 고려
 - 운영 및 감시를 위한 제안을 포함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제한하는 완화조치나 대안의 고안을 위한 제안
 - 프로젝트 대안 및 완화조치를 부정적인 영향의 제거에 대한 가능성, Associated Capital, 경상비, 관련 지역특성에의 적합성, 제도 및 훈련 그리고 감시요구사항의 관점에서 비교
 - 영향을 받는 그룹들의 이 제안에 대한 반응과 함께 이들에 대한 보호나 재정착을 위한 조치의 열거
 - EIA 에 포함 되지 않았던 관련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주요한 권고를 포함하는 비 기술적인 개요

9) 외부 검토회의

- 활용이 가능시 외부의 환경영향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회의는 비교적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절차의 성공으로 인도함. 이 검토회의의 의도는 여러 참여자들의 대립되는 이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또한 불필요한 비용과 연기를 피하는데 있음. 최후의 EIA 보고서가 원조기관과 상대기관의 고려를 위해 제출되기 전 검토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이 요청됨.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하기위해 이 검토회의는 환경에 정향된 사람이나 기관뿐만 아니라 유능한 라이선스 권한을 가진 혹은 공여국에서 유능한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되어야함. 외부검토회의에 관한 결정은 수원국에게 맡겨 두어야함.

10) 내부검토회의

- 공여기관은 환경평가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그리고 최종 EIA 보고서의 적시성과 품질을 확인하는 것을 책임지는 중심 부서를 설립해야함. 주요한 EIA 가 실시될 때 마다 관련 부서는 과학의 여러 방면의 전문가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자체 책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함. 이 직원들은 반드시 이 기관의 영구적인 직원일 필요는 없음.

11) 정책결정 과정

- EIA 결과는 개발원조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인지 혹은 아닌지를 결정하는 때에 완전히 그리고 적절히 고려되어야함. 위에 언급한 중심부서는 적절한 관심이 모두 경우마다 EIA 결과에 주어졌는지 확인해야함.

12) 감시와 회계

- 참여하는 공여국이 그들의 공동 책임과 영향을 포기할 때 프로젝트의 실시후 EIA 는 계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미래 적응의 기초를 제공하거나, 평가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거나 혹은 요구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기위해 EIA 는 운영하는 동안 감시와 회계를 위한 권고를 포함해야함. 이 권고는 EIA 를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재정소스를 지적해야함. 환경영향과 환경회계의 감시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있는 수정 및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환경 감시는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의 업무임. 감시와 회계의 질적이 측면은 EIA 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도국의 환경담당 행정기관이나 이 부서의 능력에 달려있음. 그러므로 EIA 는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EIA 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수원국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검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대신에 양측은 다음에 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해야 함.
 - 프로젝트 계획은 검사와 감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 기관, 및 준비물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감시활동을 위한 조직은 명시되어야 함.
 - 요구되는 감시에 관한 것은 프로젝트 실행자 와 유능한 부서의 책임을 명시하여 약속되어야 함.
 - 특별한 관심이 감시도구의 신뢰성에 주어져야 함.
 - 검사와 감시가 운영요원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함.
 - 외부검사와 감시는 수원국의 관련 지역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이 좋음.

7. 공적원조를 위한 효율적인 조달 실시 방안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가. 투명성(Transparency)

1) 조달 규칙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수원국, 공급자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공적원조를 위한 일반적인 조달 규칙을 수립함.

2) 개별적인 공급계약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원조제공 시 적용하는 조달규칙과 구매 가능한 소스에 관해서 관련 수원국에게 알림.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격이 있는 국.내외 공급업자에게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적용하는 구매 규칙에 관한 정보에 공평하고 적시의 접근이 허용되어야함.

- 환경 감시는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의 업무임. 감시와 회계의 질적이 측면은 EIA 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개도국의 환경담당 행정기관이나 이 부서의 능력에 달려있음. 그러므로 EIA 는 공여국이 프로젝트의 EIA 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수원국에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검사를 위한 장기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제공할 필요는 없음. 대신에 양측은 다음에 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해야 함.
 - 프로젝트 계획은 검사와 감시를 위한 필요한 조치, 기관, 및 준비물에 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함.
 - 감시활동을 위한 조직은 명시되어야 함.
 - 요구되는 감시에 관한 것은 프로젝트 실행자 와 유능한 부서의 책임을 명시하여 약속되어야 함.
 - 특별한 관심이 감시도구의 신뢰성에 주어져야 함.
 - 검사와 감시가 운영요원의 훈련에 포함되어야 함.
 - 외부검사와 감시는 수원국의 관련 지역부처에서 실시되는 것이 좋음.

7. 공적원조를 위한 효율적인 조달 실시 방안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가. 투명성(Transparency)

1) 조달 규칙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수원국, 공급자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공적원조를 위한 일반적인 조달 규칙을 수립함.

2) 개별적인 공급계약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 원칙: 회원국들은 원조제공 시 적용하는 조달규칙과 구매 가능한 소스에 관해서 관련 수원국에게 알림. 개별계약의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자격이 있는 국.내외 공급업자에게 구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적용하는 구매 규칙에 관한 정보에 공평하고 적시의 접근이 허용되어야함.

나. 국제 경쟁입찰(Int'l Competitive Bidding: ICB)

- 원칙: 회원국들은 그들의 조달정책과 양립되는 수준까지 국제 경쟁입찰의 확대된 활용 범위를 고려해야 함. 특히 회원국들은 국제경쟁입찰에 제공되는 협조용자나 다른 협조 재정계획을 수원국, 다른 공여국 혹은 국제재정기구가 개발하는데 고려해야하고, 또한 이와 같은 제안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함.

다.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

- 원칙: 국제경쟁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조건부원조 조건하에서 국내경쟁입찰의 사용을 격려함. 회원국들은 NCB가 요구되고 적용되는 조건하에서 좀더 엄격한 조달절차를 수립하거나 혹은 좀더 자유로운 조달절차를 만들 수 있음. NCB의 입찰절차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잠재 공급업자, 내용, 입찰서류의 출판, 입찰심사 및 계약체결등에 관한 정보와 같은 최소한의 국제표준을 따라야함. 조달 명세서에는 가능한 많이 참여를 유도키위해 비제한적인 형태로 기술되어야 함. 적어도 3사람이상의 공급자가 참여해야함. 그러나 이보다 적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적절시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주어져야 함.

라. 기타 입찰 방법(Other Procurement Methods)

1) 비공식적인 경쟁

- 원칙: 공식적인 경쟁입찰이 규모가 적은 경우, 계속 혹은 아주 긴급한 경우에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경쟁이 가격, 질, 양도시기, 아파트 서비스와 다른 계약 관련특징이 적어도 국내 표준비교시 경쟁성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가격제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을 극대화하기위해 회원국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함. 첫째 가격이 위에 언급한 모든 다른 요소를 고려시 적절함을 확인하여 돈의 가치를 보장함. 둘째, 잠재적인 유능한 공급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상업적인 실시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정지원함. 셋째, 공급기회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제약, 또한 충분한 수의 공급업자에 의한 의미있는 경쟁을 허용하도록 널리 알려야함.

2) 직접협상

- 원칙: 공여국이나 수원국이 몇 명의 공급업자나 단 한명의 공급업자와의 직접적인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회원국들은 인정함. 이것은 상업적인 수입업자가 등록된 상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래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된 제품 공급이 계속되거나, 보충시 필요한 금액이 원 공급에 비해서 적을 경우, 원 공급이 끝난 후 즉시 재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구매품이나 예비품의 표준, 단지 한 개의 소스로부터 취득될 수 있는 특허품의 경우에 해당됨. 이때 좋은 상업적인 실시가 수반되어야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계약 요소인 질, 양도 시기 및 애프트 서비스와 같은 모든 사항을 고려시 가격이 적절하도록 조치가 마련되어야함.

마. 제품심사(Inspection of Goods)

- 원칙: 회원국들은 구매절차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과 적시의 양도가 되는지 그리고 계약자에게 지불이 심사의 결과에 의존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함. 그와 같은 심사를 위한 적절한 계약조치가 본 공급 계약틀에 만들어져 있어야함.

바. 자국 내용규칙과 조건부 혹은 부분 비조건부 규칙의 신축적인 적용 (Flexible Application of National Content Rules and of Rules of Origin Under Tied and Partially Untied Aid)

- 원칙:원산지 규칙이나 최소한 국가 내용 규칙(National Content Rules)을 가진 회원국들은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예외사항을 고려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함.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공여국에서 조달 할 수 없다거나, 조달가능하더라도 같은 제품을 다른 장소에서 구입시 필요한 가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일 경우,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이 허용됨. 회원국들은 그들 원조의 수원국, 자격을 갖춘 공급자 및 다른 DAC 회원에게 그들의 원산지 규정과 최소 국내 내용 규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예외적인 것을 적용하는 기준에 관해 알게 하여야함. 회원국들은 또한 공급자들이 어떤 국별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함.

사. 구매 능력과 수원국의 실행을 향상시킴(Improving Procurement and Practices of Recipients)

1) 구매표준의 최소치의 적용

- 원칙: 회원국들은 원조 수원국들이 경쟁입찰 절차의 최소 표준치를 적용하고 그리고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차에 관한 검토권한이 수원국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함. 구매절차의 행정관련 사항에는, 회원국들은 적절하다면 구매자가 입찰 서류의 준비, 입찰 평가, 계약의 준비, 협상 그리고 계약체결에서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는 독립적인 자질있는 자문가나 구매담당자를 고용하기를 요청함.

2) 행정능력의 강화

- 원칙: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개도국에게 그들의 구매 실행과 제도를 향상시키는 범위를 찾아야함. 그리고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여야함.

참고: 효율적인 국제 경쟁입찰을 위한 최소의 조건(Minimum Conditions for Effectiv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 ICB의 주요한 목적은 수원국이 돈에 대한 가치를 획득하고, 수입업자가 객관적으로 수출업자들과 비교하는 방법처를 잠재적인 수출업자에게 입찰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구매절차가 효율적인 국제경쟁 입찰로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최소 조건이 지켜져야 함.

1. 공고

- 입찰에의 참여는 가능한 한 적시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공고되어야 함. 최소한 자격을 갖춘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들에게 제안된 조달에 관한 묘사와 자격있는 다른 국가의 명단을 알려주어야함. 또한 입찰서류를 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함. 이와 같은 정보는 국제무역상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몇 개의 언어로 제공되어야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수원국에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출판물에도 홍보

되어야함.

2. 계약자 규모

- 광범위한 경쟁을 유도하기위해는 입찰에 초대받은 개별 계약자 규모는 국제기준에서 입찰에 흥미를 끌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함. 반면에 프로젝트가 특별한 성격을 지닌 계약자별로 차별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차별이 수원국에게 유리하고 광범위한 국제경쟁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프로젝트는 차별되어야함. 그러나 조달은 ICB 를 피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의도적으로 분할되어서는 안됨. 엔지니어링, 제품별, 그리고 건설별로 단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수원국에게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이점을 제공하면 바람직함.

3. 입찰자의 기자격

- 입찰에의 참여가 능력있는 공급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확신하기위해 양측은 입찰자의 기자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함. 이것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작업이나 특별한 제품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야함. 기자격은 동일한 업무, 인적자원, 제품 및 공장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상황 및 능력에 대한 과거의 실적 및 경험을 고려하여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에 전적으로 기초함.

4. 입찰서류

- 입찰서류는 국제무역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한 개 이상의 언어로 준비되어야 하며, 해야 할 업무, 공급할 제품과 서비스, 양도장소 및 서리에 관한 직무를 명확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함. 입찰서류를 구입하기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넘어서는 안됨. 기술적인 명세서를 포함하는 입찰 서류는 자유롭고 완전한 국제입찰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입찰 서류는 다음에 열거한 과정이 필요함.
 - 계약의 제안서를 마련함.
 - 제품준비물과 재료를 결정하는 국.내외 표준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 표준범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준비물과 재료에 대한 다른 표준의 수용범위에 관해 상세히 서술해야 함.

- 입찰이 명세서에 부응하지 않을 때, 그리고 충분치 못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의 입찰이 이를 증명하는 금액보다 더욱 예상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
- 입찰을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명시함. 여기에는 가격 뿐만 아니라 양도시기, 건설, 준비품의 능률성, 입찰자의 경험과 신뢰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됨. 이와 같은 요소들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야 하고, 입찰서류의 평가조항에 상대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화폐가치로 표현되어야 함.
- 입찰시의 통화를 명시하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 및 국.내외 통화 모두를 포함함. 그리고 비교를 위해 화폐의 기초단위로의 전환을 위한 절차도 명시함.
- 성과능력에 기초한 명세서를 포함. 상표명도 상과나 디자인의 특징을 나타내기위한 기술적인 명세서의 한 분야로써 사용될 수 있음. 만약 사용되는 경우에는, “or equal”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어야 함.
- 자격이 있는 국가들을 명시함.
- 재정소스를 명시함.
- 입찰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입찰검토일도 명시함.

5. 입찰

- 입찰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모든 입찰 응찰자들이 그들의 입찰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위해 계약의 규모 그리고 복잡성을 고려하여 정해야함.
- 모든 입찰은 입찰서류에 명시된 시간에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함. 이 시간이후에 접수한 입찰은 비공개로 다시 돌려 보내야함. 입찰자의 명단과 각 입찰에 명시된 가격은 크게 공표되고 기록되어야함. 입찰서가 공개된 후 어떤 입찰자도 입찰가격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야함. 입찰서의 내용이나 가격의 변경이 없는 설명은 수원국에서 요청되고 수용될 수 있음.

6. 입찰서의 평가와 비교

- 입찰의 평가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용어와 조건과 일치되어야 함.

평가는 기술적인 명세서에의 일치를 결정하기위한, 그리고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요소들에 따른 화폐가치를 부여하기위한 기술적인 분석과, 입찰서류에 명시된 계약용어와의 일치를 결정하는 분석을 포함해야함. 산술적 또는 문자상의 실수와 같은 본 내용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실수는 허용될 수 있음.

- 입찰에 적혀있는 가격은 입찰서류에 명시된 상이한 화폐를 비교시 사용되는 공식을 통하여 비교되어야함. 재료와 준비물을 공급하는 입찰의 비교는 수입에 따르는 일반적인 관세나 세금을 제외한 가격 이어야함. 입찰 평가 및 비교에 대한 보고서는 수원국이나 컨설턴트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최저 평가입찰의 결정 기준과 입찰자가 부적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함.

7. 계약체결

- 계약은 이전에 조항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평가입찰로 결정된 입찰자와 체결되어야 함. 이것은 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입찰에 성공한 입찰자는 체결의 조건으로 입찰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찰서류에 명시되지 않는 업무에의 책임을 받아 들일 필요는 없음.

8. 독립적인 컨설턴트의 고용

- 구매절차의 행정사항으로,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계약 협상과 계약안 뿐만 아니라 계약시 구매자에게 도움을 주고, 입찰서를 준비하고 입찰을 평가하기위한 유능한 독립적인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를 요청할 수 있음

8. 조건부 원조시의 새로운 조치 (New Measures in the Field of Tied Aid)

가. OECD 회원국들은 다음의 일반 원칙에 합의함.

- 수출신용차관 과 원조신용차관을 위한 정책은 상호 보완 되어야 함.
수출신용차관의 정책은 공개 경쟁과 시장의 자율기능에 기초해야 함.
원조신용차관은 시장 접근이 거의 되지 못하는 국가, 분야,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외부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야 하고, 재정의 가치를 최대화하며,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며, 그리고 이 자원의 개발사의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해야함.
- 회원국들은 공적원조가 '87 년에 제정된 “DAC 연합융자(Associated Financing)와 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공적원조에 관한 원칙”과 '88 년에 제정된 “DAC 프로젝트심사 원칙”을 재확인함.
- 비조건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무역왜곡을 최소화 하며, 또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같은 원조를 격려하게끔 만드는 것과 같은 귀중한 역할에 대한 인정과,
- 원조액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얻고, 반면에 무역왜곡을 최소한 보장 하기위한 방향으로 조건부원조를 관리함의 중요성을 인지함.
- 국제경쟁입찰이 원조액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역할상 이점을 강조함

나. 회원국들은 다음의 조치를 실시함

1) 큰 규모의 프로젝트 (Large Projects)

-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수출신용차관을 위한 지침에의 규칙, 정의 및 절차에 따라 80% 혹은 그 이상의 양허성을 가진 신용차관이나, 또는 SDR 50 million 보다 높은 액수의 프로젝트의 경우 강제적인 자문을 위한 절차를 위한 규칙에 일치하는 신용차관을 제외하고는 SDR 50 million 보다 큰 액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DAC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2) 상호심사

- 아래에 명시된 상호심사의 원칙은 모든 큰 규모에 대한 좋은 실습을

제공함. 그러나 이것은 원조와 무역 왜곡의 위험이 존재하는 조건부 원조성 신용차관에 특히 중요함.

- 회원국들은 큰 규모의 준비나 재정에 있어서 세계은행의 참여의 의미를 인지해야 함.
- 세계은행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흥미가 있는 공여국은 수원국 수준에서 적절한 접촉을 통하여 프로젝트가 세계은행과 수원국이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정책이나 자원의 배분에 관한 대화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조정작업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함.
- 회원국들은 원조금액을 최종적으로 약속하기 전 프로젝트의 합동검토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준비와 심사작업에 대해 수원국과 다른 회원국과 조정하는 것에 합의함. 여기에는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 원칙과 이 원칙에 기초한 원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품질 점검표에 맞추어져야 함.
- 회원국들은 현장을 포함하여 세계은행과 수원국 그리고 회원국 사이에 협조를 촉진하는 절차를 개발해야함. 이 절차는 비조건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자금과의 조정을 보장해야함.

3) 적절한 재정 조건

- 흥미있는 공여국은 수원국 관련부처와 함께 관련 수원국의 경제 사정과 일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절한 재정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서로 상의 해야함. 그러나 공여국들은 관련 국가에게 주어지는 원조에 대해 조건을 엄격하지 않도록 기대됨.

4) 국제 경쟁 입찰

-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증여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실행에 따라 국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수원국에 달려있음.
- 조건부 원조로 지원되는 계약은 재정조건을 고려하기 전에 가격과 기술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낮게 평가된 입찰자와 체결해야 함. 그러나 재원이 아주 부족한 빈국은 계약체결에 있어서 양허성 조건으로 재정을 고려해야함. 이때 체결은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2 번째 혹은 3 번째인 공급자에게 혹은 가격 마진이 합리적인 곳에 줄 수 있음.

다. 조건부 원조 차관 제공시 한계점(Limitation on use of tied aid credits)

- 회원국들은 생산분야와 경제인프라 및 적절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러나 이 분야에의 프로젝트로는 시장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끔씩 적절하고 또한 중진국이상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원조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좋음.
-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그리고 절차의 규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조건부 원조차관의 다음의 경우에 사용되는 것에 제약이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SDR 2 million 이하거나 절차 규칙 및 정의에 따라 80% 이상의 양허율을 가진 프로젝트이거나 혹은 절차상 상호 합의된 경우는 제외됨.
- 조건부 원조차관은 LLDC에의 차관을 제외하곤 시장이나 절차 조건으로 지원될 경우 상업적으로 조달 가능한 공적 혹은 사적 프로젝트에게 주어지지 말아야 함.

이와 같은 원조자격의 주요한 관점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는 재원이 가능하게 조달될 수 있는지?
- 다른 참여자와의 의사전달에 기초하여 프로젝트는 시장이나 Arrangement terms 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결론짓는 것이 합리적인지?
- 위의 문답은 프로젝트가 원조 혹은 수출 신용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지에 관해 평가 받는 방법에 대해 묘사하고자 의도됨. 협의과정을 통해 수출 신용과 원조기관을 위해 두가지 부류의 프로젝트 사이에 선에 관한 사업 전 지침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개발되기를 기대함.
-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및 20년 차관 융자의 자격이 없는 GNP 소득 국가에는 조건부 원조차관이 제공되지 말아야 함. Arrangement rule and definitions 에 따라 80% 이상의 양허성을 가진 차관이 이들 국가에 허용된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국제수지지원이나 사회분야, 환경, 좋은 정치 및 긴급성원조와 같은 프로젝트의 재원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
- DAC 은 arrangement 의 모든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함. 그리고 협의시 회원국들은 참가국과 협조할 것임.

라. 향후 과제(Further Work)

- 회원국들은 다음의 분야에 업무를 추구하는데 합의함.
- Associated Financing 과 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원조에 관한 DAC 지침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새로운 조치에 대해 회원국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 조건부 원조에 좀더 상세한 정의에 대한 작업실시 및 조건부 원조의 사용시 회원국의 실행을 감시
- 비조건부 및 부분 비조건부 원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정의 및 구매결과를 포함한 회원국의 실행을 감시하고 비조건부 원조의 좀더 많은 사용에 관해 연구함.
- 공적원조의 좋은 구매관행에 포함된 정의와 절차를 조화하고 향상시킴
- Associated Financing 을 포함하여 조건부원조를 위한 조건들에 많은 강조와 함께 회원국의 원조 조건 성과를 감시함.
- DAC 은 '93 년 말까지 위에 언급한 분야에서 행하여진 진행에 관한 것을 축적함.

참고: 원조 프로젝트의 개발지향성에 대한 점검표(Check-List Developmental Quality of Aid-financed Projects)

- 공적원조로 전체 혹은 부분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젝트의 개발 지향적인 품질을 보장하기위해 OECD/DAC 에 의해 점검표가 개발되었음. 이는 다음의 원칙이나 지침에 포함된 것임.
-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 원칙('88)
- Associated Financing 과 비조건부 공적원조를 위한 DAC 지침('87)
- 공적원조를 위한 좋은 구매 관행('86)

1. 수원국의 종합적인 투자 우선순위에의 프로젝트의 일관성

- 관련 프로젝트는 수원국의 중앙재무 및 기획담당 부처에서 이미 승인된 투자 및 공공지출프로그램의 일부분인가?
- 관련 프로젝트는 국제 개발 재정담당 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 지는가?
- 관련 프로젝트가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국제 개발 재정담당 기관이나 DAC 회원국에 의해 거부당한 근거가 있는지?
- 사적 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우 수원국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것인지?
- 관련 프로젝트가 수원국에서 공여국에 진행되는 광범위한 원조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간 합의로 진행되는지?

2. 프로젝트 준비와 심사

- 관련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심사를 위한 DAC 원칙과 일치하는 광범위한 표준이나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고, 고안되고 그리고 심사되었는지?

3. 프로젝트 심사의 적절한 원칙.

- 경제적 측면(조항 120 에서 128 까지)
- 기술적 측면(조항 112)
- 재정적 측면(조항 113 에서 119 까지)
- 제도적 평가(조항 130 에서 134 까지)
- 사회적 및 분배적 분석(조항 137 에서 147 까지)
- 환경적 평가(조항 145 에서 147 까지)

4. 구매 절차

- 다음 사항중에 어떤 구매형식이 사용되었는지?
 - 국제경쟁 입찰(조항 411 과 419-429: 효율적인 국제경쟁 입찰의 최소 조건)
 - 국내경쟁 입찰(조항 412)
 - 비공식적 경쟁이나 직접 협상(조항 413-414)
- 공급업자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했는지?

9. 개발원조의 평가를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가. 도입(Introduction)

1) 공여국/수원국 파트너쉽

- 개발원조는 양측의 협조파트너쉽의 실천임. 개도국은 그들 자신의 개발에 책임지며 개발원조는 개도국 자체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음. 원조는 개도국이 최종적으로 책임과 소유의식을 지닌 활동을 지원함. 프로젝트의 성과는 양측에 의존함. 양측은 회소성의 공적자금의 최선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책임도 소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양측은 경험으로부터 배운 개발을 위한 자원사용의 향상과 정치권과 일반 국민에게 책임성을 위한 평가에 관심을 두어야 함.
- 다음에 열거한 원칙은 원조기관들이 원조로 진행되는 활동을 평가할 위해 준비됨. 그러나 이 원칙들은 개도국 자신들이 원조관련 프로젝트의 자체 평가나 그리고 다른 공공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데 유용함.

나. 기타 원조관리 원칙의 결론과 보완성

- 이 원칙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완료된 활동의 평가에 초점을 맞춤.
이것은 특히 DAC의 관리 원칙인 “프로젝트 심사 원칙(’88)이나 “기술 협력의 새로운 정향을 위한 원칙”을 보완함. 이의 각각의 원칙은 사용되는 여러 구체적인 원조수단의 평가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다음에 열거한 원칙들은 원조관리 과정에서 원조평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다음에 있는 몇 가지 요점으로써 정리하여 제공됨.
- 원조기관들은 명확히 확립된 지침과 방법을 지닌, 그리고 명확한 역할정립, 책임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원조 조직내의 위치를 지닌 상황에서 평가 정책을 지녀야 함.
- 평가 과정은 정책결정이나 원조의 제공 및 관리와는 독립되고 공정해야 함.
- 평가과정은 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함.
- 평가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되어야 함. 정책결정자나 사업실행자에게 결과가 환원되는 것은 필수적임.
- 원조평가에 있어서 양측의 파트너쉽은 필수적임. 이는 개도국의 제도 구축과 원조조정의 중요한 측면이고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케 할 수 있음.
- 원조평가와 필수사항은 원조시작시 전체의 한부분이어야 함. 원조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실체확인이 객관적인 평가의 필수적 부분임.

1) 정의

- 원조는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혹은 정책, 고안,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말함. 이의 목적은 목표의 적절성과 달성, 개발능력, 효율성 및 영향, 그리고 지속성을 결정하기 위함. 평가는 신뢰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체득한 교훈이 양측의 정책결정 과정에 합쳐져야 함.

2) 평가의 목적(Purpose of Evaluation)

○ 평가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체득한 교훈의 환류를 통해 미래의 원조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향상시킴
- 대중들에게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책임성의 기초를 제공함.

- 실패와 성공의 평가를 통하여 미래의 원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가 생산됨. 개발목표를 위한 자금은 필요성에 비교하여 너무 작고, 양측의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함.
- 여기에 언급된 평가의 책임성의 개념은 개발결과와 개발원조의 영향에 관계됨. 이것은 법적으로 회계시 공적자금의 사용을 위한 책임성, 감시기관에 부여된 책임성과는 다른 것임. 개발원조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양측의 지도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함.
-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정책의 결점이나 양측의 정책의 엄격성, 부적절한 조정 및 구매와 같은 다른 관행사항의 효율성으로부터 결과되는 개발원조의 성공에의 제약요소를 인지시켜주는 것임.
- 평가는 대화를 촉진하고 모든 레벨에서 상호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향상시킴.

3) 공정성과 객관성(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 평가과정은 개발원조의 관리나 공여, 그리고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과정과는 기능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함.
-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과 자료, 분석 및 결론유도에 있어서 편견을 회피함에 기여함. 독립성은 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책결정자와 관리자가 그들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축소함.
- 객관성과 독립성은 평가 프로그램의 기획, 목표조건의 구성, 평가팀의 선택과 승인을 포함한 평가의 전 단계에서 존재함. 평가의 독립성은 보고서가 저자의 이름으로 출판될 경우에는 더욱 이를 높일 수 있음.

4) 평가를 관리하는 제도적 조직

- 평가를 관리하는 제도적 조직은 효율적인 평가과정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조직측면은 이와 같은 필수사항을 나타내야함. 즉 정책, 평가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평가물을 향후

원조활동과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임.

- 가끔 어떤 조직들은 위에서 언급된 필수사항을 희생하여 다른 필수사항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면 과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평가 사항과 정책결정사의 강한 연계를 약화시킴. 그러므로 모든 필수사항을 조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추구되어야 함.
- 공정성과 객관성은 개발원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부서내 관리레벨에서 평가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 질 수 있음. 이것은 평가 보고를 책임지는 중앙부서가 직접 원조담당기관장이나 그 조직의 이사회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 어떤 평가기능이 부서내 관리에 속해있는 정도에 따라 그들은 프로그램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중앙부서나 이를 책임지는 고위층에게 보고해야 함. 이와 같은 경우에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주어져야 함. 어떤 접근법이 결정되는지 상관없이 조직의 구성이나 절차는 평가자료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형성과 연결되는 것이 촉진 되도록 행해져야함.
- 원조기관은 위에서 제기된 이슈를 감안하고, 결과의 배포를 포함한 평가과정의 공개를 강조하는 평가에 관한 정책을 필요로함.

5) 신뢰성(Credibility)

- 평가의 신뢰성은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평가과정의 투명성 정도에 의존함. 신뢰성은 평가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함. 수원국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약속을 조장하기 위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함.
 - 원조기관은 활동의 여러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평가의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과정의 투명성은 이의 신뢰성과 합법성에 절대적인 요소임. 이를 보장하기위해
- 전체 평가과정은 그 결과가 널리 알려지고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함.
- 평가보고서는 결과와 권고를 분리해야 함. 평가결과를 지원하기위한 적절한 정보는 sources 를 타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포함되어야 함.

6) 유용성(Usefulness)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는 적절하고 유용하게 인지되어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나타나야함. 또한 그 결과는 개발과정에 포함된 많은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와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함. 용이한 접근은 유용성에 필수적임. 평가과정 자체는 목표의 더 많은 명확성을 조장하고, 의사전달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증가하고 그리고 후속조치활동의 기반을 구축함.

- 평가는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한 시간에 활용가능토록 적시성이 있어야 함. 이것은 평가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실시동안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평가는 사후평가(ex-post exercise)만 해서는 안됨. 진행중인 활동이 감시는 운영직원의 책임임. 운영계획에서 독립적인 평가담당 직원에 의한 평가의 제공은 정기적인 감시의 중요한 보완기능을 수행함.

7) 양측의 참여(Participation of Donors and Recipients)

- 위에 언급한 파트너십 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하다면 양측은 평가과정에 참여해야함. 평가시 발견사항은 양측에 모두 적절하기 때문에 평가목적은 양측의 주요쟁점을 취급해야하며, 평가는 관련 활동의 효과나 영향에 관한 서로의 관점을 반영해야함. 평가 하는 동안 공정성과 독립성의 원칙은 양측에 동등히 적용해야함. 참여와 공정성은 수원국이 사업 완료후 공여국이 철수한 이후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속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등 평가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킴.
- 관련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의 관점과 전문성은 평가의 통합된 부분을 형성해야함.
- 사업 관여 당사자의 모든 참여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원국의 기술 및 능력의 강화를 달성하며, 제도적이고 관리상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나 훈련을 통해 조장될 수 있는 중요한 목표를 강화함.

8) 공여국간 협력(Donor Cooperation)

- 공여국 사이에 협력은 상호간 배우고 중복성을 피하는데 필수적임. 공여국간 협력은 또한 평가방법의 개발하고, 보고서나 정보를 공유하며, 평가 발견사항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해 촉진되어야함. 합동 공여국 평가는 서로간의 절차 및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고, 수원국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촉진되어야함. 합동평가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여국들은 체계적으로 실제로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평가계획을 교환해야함.

9) 평가 프로그램(Evaluation Programming)

- 전반적인 계획은 개발원조사업이 평가를 위해 원조기관에 의해 개발되어야 함. 이와 같은 계획의 수립시 평가받는 많은 활동이 적절한 범주로 나누어져야함. 우선순위는 이 범주의 평가나 시간표를 위해 확정되어야함.
- 이 범주는 개발원조의 여러 분야를 대변함. 평가의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유형은 아마 프로젝트 혹은 제도적인 레벨임.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가 자체적으로 평가 발견사항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함. 필요한 것은 좀더 종합적인 범위에서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집합임. 평가프로그램은 고위관리층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주문을 고려해야 하며 습득한 교훈을 종합해야함.
- 평가능력은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활동 그리고 분야별, 주제별 및 범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광범위한 평가를 위해 필요함. 평가는 원조기관의 절차 및 관리등과 같은 이슈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평가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관리상 그리고 재정적인 이유로 필요함. 시간표는 평가계획시 포함되어야 함. 평가활동과 시간표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결정에 평가물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함. 이를 통해 그들의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음. 평가계획은 또한 고위층의 지원과 추인을 요구함.
- 이와 같이 하지않은 원조기관들은 평가과정을 위한 지침이나 표준을 만들어야함. 이를 통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실시나 보고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이 정의 될 수 있음.

10) 평가의 고안 및 실시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aluations)

- 각각의 평가는 기획되어야 하며 다음을 위하여 목적이 세워져야함.
 - 발견사항의 접수자를 포함한 평가의 목적이나 범위를 정의
 - 평가시 사용된 방법을 묘사함.
 - 어떤 프로젝트/프로그램 성과가 평가되는 기준을 확립함
 - 평가를 완결하는데 소요되는 재원과 시간을 결정함.
- 평가의 목적은 설명되어야 함. 즉 원조정책, 절차 및 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거나, 특정 진행 활동의 계속여부를 고려하는데 필요함.
- 평가는 평가되는 활동을 정의해야 함. 즉 프로젝트, 제도, 분야 및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의 배경, 목표, 활동, 비용. 기대되는 영향 및 효과와

같은 것을 포함함.

- 평가시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를 평가의 이슈라고 언급됨. 이 이슈는 평가과정을 위한 관리틀을 제공하고 결론과 권고사항을 명확한 세트의 기초를 제공함. 다음은 평가이슈의 기본 집단임.
 - 정당성: 이의 실시는 적절한가? 목표는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대안의 목표는 고려해야 하는가?
 - 목표 달성: 달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거나 적절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방안이나 프로젝트 합의 및 적용계획이 만들어 지지 않는 한 평가는 매우 어려움. 본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혹은 달성가능성이 있는가?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는 명확히 정의 되었는가? 혹은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계속 시도되어야 하는지?
 - 영향 및 효과: 프로젝트/프로그램의 결과 무엇이 발생했는가? 이것은 직접적인 산출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이 활동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다른 발전 지표에의 기본적인 영향과 효과를 포함함. 이 조사는 의도된 혹은 의도되지않는 결과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기초 정책환경이나 일반적인 경제 및 재정조건과 같은 외부요소에의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해야 함.
-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는 목적은 평가자들이 정보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의 결론과 권고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함.
 - 전반적인 결과: 이 사업은 성공여부? 이 사업의 영향이나 효과는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목표는 주어진 예산과 시간내에 달성될 수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가? 주요한 성과가 있는가?
 - 지속성: 이 사업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가에 대한 질의는 매우 중요함.
 - 대안: 이 결과를 달성하는 더 좋은 길이 없는가?
 - 제득한 교훈: 일반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미래 프로그램을 실시시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 이 단계는 확인된 이슈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나 기술을 정의해야 함. 개발원조의 습성은 대부분의 경우에 평가는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기술의 조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활동의 평가시 사용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후 평가에도 활용되어야함.
- 많은 경우에 외부원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가 혹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산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결정하기가 힘들. 평가과정의 복잡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인과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는 행하여져야함.

11) 보고, 배포 및 환류(Reporting, Dissemination and Feedback)

- 평가 보고는 가능한 한 기술용어를 배제하면서 명확해야 함. 그리고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함. 개요, 평가된 활동의 소개, 사용된 평가 방법의 묘사, 주요 발견사항, 체득한 교훈, 결론과 권고임.
- 평가의 발견사항과 결론은 평가를 위해 채택되고 또한 제기된 질문에 대한 해답임. 체득한 교훈과 권고는 평가결과와 향후 정책 및 프로그램 발전사이의 연계를 제공함.
- 체계적인 배포는 개발 원조 활동의 향상된 기획이나 실시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임.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외에 여러 방법으로 배포될 수 있음. 즉 발견사항의 종합적인 면을 제공하는 연간보고서, 발견사항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개요 같은 것임.
- 환류는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활동간의 연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임. 평가 결과가 미래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발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모두가 참여하는 환류장치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 세미나 혹은 워크샵, 자동체제, 보고 및 후속 절차와 같은 조치를 의미함. 네트워킹이나 내부의사전달과 같은 비공식적인 수단은 아이디어나 정보의 배포를 허용함.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환류과정에 담당직원과 예산 그리고 고위층이나 다른 참여자로부터 지원이 요구됨.
- 배포와 환류는 평가과정의 계속적이고 동적인 부분을 형성해야함.

12) 다른 원칙이나 후속조치의 적용(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and Follow-up)

-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
 - 위에 언급한 원칙과 비교하여 자신들의 평가 정책이나 절차를 검토함. 또한 가능하다면 이 원칙들을 적용함.
 - DAC 원조심사 및 다른 관련된 DAC 업무의 부분으로 평가정책과 과정을 검토함.
 - 가능하다면 좋은 평가 지침서로서 관련 수원국의 협조하에 평가에 관한 원칙들을 제정함.

부록: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심사 절차 및 기준

부록: OECD/DAC 회원국의 원조 심사 절차 및 기준

1. 원조심사 절차

가. 목표

- DAC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의 효율성, 사업실시에 있어서 투입, 산출,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
-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원조성과의 고양
- DAC 회원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원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원조에 대한 경험의 공유 및 조정역할 수행

나. 회원국의 원조심사방법

- DAC가 설정한 광범위한 전략과 원칙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이 실제로 준수하는지 여부
- 원조정책중 중요한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자료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함
- 타원조정책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의 능률성과 효과성 분석
-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출판

다. 심사의 3대 기본 **Guideline**

-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89)
- "Development Partnership in the New Global Context"('95 High Level Meeting)
- "Shaping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96 HLM)

라. 비망록(Memorandum) 작성시기

- 통계관련 설문지를 OECD에 송부하는 시기: 매년 4/15 까지
- 원조심사를 하기위한 비망록작성시기: 매년 7/15 까지
- 각종 통계 지표
 - 공적 분야: 7/15 까지
 - 민간 분야: 9/15 까지

라. 원조심사 실시관련사항

- 원조심사대상국은 일년에 7 개국으로 제한. 한 국가의 원조심사는 3 년에 한번씩 실시
- DAC 사무국은 심사대상국과 상의하여 원조심사를 위해 다른 2 개 회원국을 심사위원국으로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사무국은 매년 심사시 대상심사위원국을 다른나라로 교체함

마. 심사를 위한 기본자료

- DAC 회원국의 비망록(심사대상국이 DCD 에 제출하는 Annual Report 로 대치가능)
- DAC 회원국의 원조관련 각종 통계자료
- 사무국의 심사대상국의 원조심사관련 보고서(Draft)
- 주요이슈에 대한 사무국의 의견서

바. 자료제출 방법

- 위에서 언급된 보고서 및 각종통계자료는 심사실시 30 일전에 제출 되어야함
- 심사 담당국가의 담당자들은 Main Issue Paper 를 포함하여 심사자료를 준비하기위해 DCD 사무국과 밀접한 접촉과 협조를 실시
- 심사담당자들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자는 심사대상국을 방문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심사대상국이 원조를 수행하는 수원국을 방문하여 조사

아. 원조심사 본회의 절차

- DAC 의 의장이 회의개최를 선언
- 심사대상국의 대표단장이 자국의 원조관련 중요사항 및 진전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언급한 내용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견해 표명
- 심사담당자들이 주요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시작
- 심사담당자, 사무국 그리고 심사대상국은 상호 의견교환 및 질의실시
- 심사 결론을 도출시에는 의장은 심사과정을 통해 선택된 주요쟁점들을 Summary 하고 언론에 공개할 자료를 작성

- 심사대상국, 심사담당국 그리고 사무국관련자들은 회의 직후에 개요와 결론을 도출하기위해 그리고 내용에 대한 수정시간을 가짐
- 수정된 개요와 결론은 DAC 에서 의결을 받기위해 회원국에 배포됨
- 최종결과 보고서는 DAC 의 최종결론, 개요 그리고 사무국의 보고서 그리고 언론배포서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출판함
- DAC 의장은 이 보고사가 출판된후 6개월내에 심사대상국을 방문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해 조사함

2. 심사 기준

가.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 기본정책들과 새로운 정책방향
 - 주요지침
 - 새로운 진행사항이나 접근
 -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의 주요한 변화사항
 - 정책심사, 백서 혹은 전략적변화
 - 주요한 정책논의사항
- DAC 의 guideline 준수여부
 - DAC “Shaping 21st Century”(’96)
 - “Development Partnership”(95)
 - “Principle for Effective Aid”(92)
 - “Guideline on Aid and En’vt”(92-96)의 준수여부와 이들이 심사대상국의 원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파악

나. 수원국의 능력배양과 관련된 주요한 의제

- 민간섹터의 발전과 적절한 재정정책을 가진 경제정책의 채택여부
- 2015 년까지 세계 빈민층의 반을 경감하고자 노력하는 자세
- 기초교육, 기초보건, 그리고 건강출산등을 포함한 사회 개발분야
- 사회불균형을 제거하기위한 여성의 개발참여정도
- 인권과 법치를 포함한 선한 통치여부
- 2005 년과 2015 년으로 설정한 지속적 환경 목표준수
- 군사비지출을 제한하고 잠재적분쟁의 원인규명 및 평화유지를 위한 지역협력여부

다. 원조조정, 개발전략과 국별원조계획실시

- 원조조정관련 계획이나 자료교환실시
- 수원국과의 원조정책대화
- 원조조정이나 프로그램의 기본절차의 준수여부
- 국별원조계획 실시여부
- 국별원조계획과 광범위한 원조조정노력과의 연계
- 원조조정시 수원국에 파견된 직원의 능력

라. 원조능률, 효과 및 결과

- 원조평가지 DAC의 원칙 준수여부
- 평가실시를 위한 정책틀
- 평가내용의 활용정도
- 평가담당부서의 예산 및 직원수
- 원조실시기관자체의 평가실시능력보유
- 평가지 그 결과의 공개여부와 평가지 독립성, 투명성 및 신뢰성여부
- 평가지 또는 평가결과에 대한 수원국의 역할
- 원조관련 결과보고서 및 국별, 분야별 평가

마. 원조관리분야

- 원조관리, 제도, 조직, 예산 그리고 직원에 관한 사항
- 원조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제도치들(절차, 지침, 신축성, 직원의 전문성)
- 국제긴급재난발생시 조치사항
- 예산사용시 신축성과 재원의 이동사항
- 현장중심의 원조실시(권한위임)
- 원조의 일치성(coherence)을 고양하기위한 원조담당부처간의 조정능력

바.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정책의 적합성과 일치성

- 일치성을 분석하기위한 제도, 절차, 과정의 설치여부
- 무역, 부채, 투자정책에 있어서 수원국에게 긍정적, 부정적요소의 규명, 또한 국방, 이민, 환경, 은행의 비밀유지, 돈세탁여부를 포함하는 외교정책
- 부채, 무역, 국방, GSP에의 적용여부, 농업정책,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일치성과 관련된 제안이나 조치

사. 여론, 정보 그리고 원조에 관한 국민교육

- 개발원조에 관한 여론조사 및 이에 대한 공여국의 국민여론 및 의회의 의견
- 구소련공화국 및 동구유럽원조에 대한 국민여론
- 원조목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고양을 위한 제조치
- 원조관련 정보체계 및 이에 관련된 재원, 직원
- 개발원조에 관한 교육, 원조규모 및 개발우선순위 사이의 연계여부

3. 기본자료(Basic Profile)

가. ODA 규모와 현황

- ODA 에 관한 약속과 실제공여에 관한 경향
- 양자간/다자간 비율
- ODA 공여전망, GNP 대비 ODA 규모, 그리고 ODA 목표
- 예산실행계획
- ODA 규모에 있어서 CEECs/NIS 에 대한 비중

나. Aid Reporting(원조보고 및 재정관련)

- 원조통계 지침 준수여부
- 원조규모의 제공조건과 개념정의에 관한 DAC 의 권고에 기초한 재정수준

다. 원조의 구성 및 원조의 분야별

- 원조구성(양자간, 다자간, 기술 및 현금공여, 분야별원조, 국제수지원조, 상업원조, 식량원조, 재난구호원조, 지역협력, 그리고 분야별 경향)의 발전
- 특정이슈(WID,환경, 인구)에의 원조
- 전략적 목표와 원조의 분야별 배분과의 일치성

라. 다자간 원조

- 전략적 협력목표에 관한 다자간 원조관련
-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 다자간 개발은행(MDBs), UN Programme 에 대한 정부내의 다자간 원조 부처사이의 구성
- 제도적 비교우위분야에의 평가절차
- 다자간원조기관에 대한 기여, 현금공여, 또한 연성자금에의 replendishment

,혹은 다른 절차

마. 부채탕감

- 부채탕감에 대한 정책
- 최근의 ODA 부채탕감에 관한 적용
- 수원국의 부채를 경감하기위한 다른조치들

바. 국별원조배분

- 지역별원조의 배분에 관한 정책
- 원조집중공여지역
- 지역별 배분을 위한 기획과정

사. 기술협력

- 기술협력실시에 있어서 DAC 의 새로운 정향
- 기술협력에 있어서 정책 및 실시
-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직원, 범주와 지역별 관련 숫자
- 제도구축 및 능력배양에의 전환
- 공여국내 혹은 제 3 국의 전문가 활용여부
- 기술협력에 있어서 민간 분야에의 참여여부
- 조건부정도

아. 조건부원조와 Associated Finance

- 조건부와 비조건부원조실시에 있어서 정책, 실시지침, 그리고 경향
- Associated Finance 를 위한 제도적 구성
- 조건부원조와 Associated Finance 의 지리적 배분

자. 조달정책

- DAC 의 “적절한 조달지침”에의 적용여부를 포함한 조달정책, 실시 그리고 경향
- 조달이 공여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차. NGO

- NGO 와의 협조재정(Co-financing)을 위한 양태, 정책 그리고 기준
- 수원국 NGO 와의 협조
- NGO 를 ODA 의 원조실시수단으로 활용정도